

第1・2代

# 議政白書

(1995. 3. 1~1998. 6. 30)



서울特別市 廣津區議會



##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부푼 기대 속에서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분구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던 광진구의회의 초대 개원부터 2대까지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간 최선을 다한 구의원들의 활동상을 정리한『제1대·제2대 의정백서』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에서 분구될 당시 광진구에는 도시기반 시설 및 문화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제1·2대 의원들은 풀뿌리민주주의 싹을 틔우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이성전 전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발간된『제1대·제2대 의정백서』는 의정발자취를 진솔하게 담은 광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광진구민과 대외기관들로부터 사랑받는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광진구의회는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 12.

광진구의회 의장 이창비 

## 발간사

##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플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간 광진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정백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1·2대 광진구의회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제1·2대 의원들은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 될 때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면서 지방자치의 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에 발간된 『의정백서』에는 지나온 제1대, 제2대 의회의 발전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지나간 의정 활동을 되돌아 보는 훌륭한 역사 기록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진구 의정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지방자치의 기틀을 더욱 다지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자료수집 및 편집에 수고를 해주신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출범한 제5대 광진구의회가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40만 광진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 12.

광진구의회 제1·2대 의장 이 성 전



## 축 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 리 광진구의원은 지방자치 정착이 진정한 민주주의 초석이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며,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광진구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구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인격의 도야와 지식을 함양하고 도덕성을 양양하여 구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구정에 반영한다.
-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익을 지양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구민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하여 실천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통하여 구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의회상을 정착시키는데 진력한다.
-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서 행한 행위와 발언에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옹분의 책임을 진다.



• 광진마크

30°각도로 기운 타원형은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화합을 의미하고 녹색의 삼각형 형태는 광진구의 대표적 명소인 “아차산”을 상징하며, 그와 대칭을 이루는 역삼각형은 한강에 비친 아차산의 음영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돛단배 형태는 “광진”이라는 구명의 어원이 되는 광진나루를 상징합니다. 마크의 청색은 한강의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녹색은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여유와 문화를 상징하고 돛단배 형태의 백색은 광진구의 유구한 역사와 미래를 상징합니다.



• 캐릭터-광이 진이

신라군과 전투중 아차산에서 전사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캐릭터화하여 광진구의 단결과 화합, 사랑, 진취적 기상을 형상화함.



• 구나무-느티나무

우리구 화양동 소재 느티나무는 수령700년 가량의 노거수로 서울특별시 지방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그 상징성이 높으며 우리구의 무궁한 역사와 넘실한 기상을 상징한다.



• 구꽃-진달래

진달래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이른 봄 화사하게 피어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아차산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친근한 꽃으로 우리구의 번영과 구민의 단결을 상징한다.



• 구새-까치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알려져 있고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에 많이 서식하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텃새로 우리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 제1대 의장단

('95. 3. 1 ~ '95. 6. 30)

## ■ 의장



이 성 전

## ■ 부의장



이 금 장

## ■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복수



총무·재무위원장  
백남식



시민·건설위원장  
권승현

## 제1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박원식

#### 중곡 제1동



생년월일 : 1951.7.15  
전화번호 : (사) 498-6270 / (자) 467-7597  
의원약력 :  
- 시립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 수료  
- 민자당(병)지구당 중곡 제1동 지역협의회장  
- 서울 태권도협회 감사  
- 건대 태권도 지도사범  
- 학원경영

### 신인용

#### 중곡 제2동



생년월일 : 1949.1.10  
전화번호 : (사) 446-5725 / (자) 456-2444  
의원약력 :  
- 명지실업전문대 새마을금고과 수료  
- 건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중곡2,4동 새마을금고 감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동구의회 초대의원

### 김춘기

#### 중곡 제2동



생년월일 : 1955.3.16  
전화번호 : (사) - / 전화번호 (자) 457-6389  
의원약력 :  
- 명지대 경영학과 졸업  
- 중곡동 청년회장  
- 히말라야인클럽 이사  
- 서유여행사 이사  
-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 91히말라야, 시사팍마, 초오유 등반  
- 성동지역발전연구회 운영위원  
- 조경사업

### 오효무

#### 중곡 제3동



생년월일 : 1942.1.21  
전화번호 : (사) 466-8808 / (자) 466-4441  
의원약력 :  
- 경남진주고등학교  
- 한양대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 수료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의원연수과정 수료  
- 삼양통상(주)근무  
- 국제상사(주)근무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겸  
광진갑지구당부위원장

### 임동식

#### 중곡 제3동



생년월일 : 1959.12.10  
전화번호 : (사) 205-0777 / (자) 468-4365  
의원약력 :  
- 군산실업대 회계학과 졸업  
- 학도호국단회장단 전북지부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중곡 1,2,3,4동 지역발전연구소장(현)  
- 성동구의회 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역임  
- 광진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현)

### 이석봉

#### 중곡 제4동



생년월일 : 1940.10.19  
전화번호 : (사) 447-4089 / (자) 446-5049  
의원약력 :  
- 서울동도고교 졸업  
- 한양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발전과정 수료  
- 동사회정회추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중곡2,4동청년회교문  
- 성원물산 대표(제조업)

# 제1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김세환 중곡 제4동



생년월일: 1947.4.10  
 전화번호: (사) 454-6226 / (자) 452-4846  
**의원약력:**  
 - 건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 자유총연맹전국청년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 지부장  
 - 동부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  
 - 광진구 지방토지평가위원

## 이재선 능동



생년월일: 1941.7.11  
 전화번호: (사) 275-2929 / (자) 457-1370  
**의원약력:**  
 - 대전상고 졸업  
 - 성균관대 문리과 영문학과 졸업  
 -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서울대학교 A.M.P 수료  
 - 동부지청 청소년 선도위원회 간사장  
 - 대전상고 총동창회장

## 백남식 구의 제1·3동



생년월일: 1940.5.25  
 전화번호: (사) 458-0014 / (자) 455-0372  
**의원약력:**  
 - 성균관대 영문학과 졸업  
 - 동 방법위원장  
 - 마을금고 감사 이사  
 - 성동농협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권승현 구의 제2동



생년월일: 1925.5.1  
 전화번호: (사) 444-3400 / (자) 452-4435  
**의원약력:**  
 - 국민대학교 법학부 졸업  
 - 중앙대 사회대학원 수료  
 - 대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 동부지청 조정위원  
 - 동부지청 청소년 선도협의회 위원  
 - 동 지역협의회장

## 박영태 구의 제2동



생년월일: 1957.3.11  
 전화번호: (사) 446-5056 / (자) 455-7951  
**의원약력:**  
 - 숭실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신일고교 교사  
 - 학원강사  
 - 성동교회 전도사  
 - 비영리탁아소 운영(구의선교보육원장)

## 최순칠 광장동



생년월일: 1929.3.9  
 전화번호: (사) 456-2567 / (자) 446-7428  
**의원약력:**  
 - 동아대 법정대 졸업  
 - 한양대 행정대학원  
 - 총동문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현)  
 - 민주평화통일 성동협의회 부회장(현)  
 - 광나루주택조합 위원장(현)

## 최복수 광장동



생년월일: 1949.8.1  
 전화번호: (사) 447-4829 / (자) 444-7598  
**의원약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광장 구의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광진구감사)  
 - 광장사회복지회관 자문회의 부위원장

## 이금장 자양 제1동



생년월일: 1941.11.18  
 전화번호: (사) 444-8967 / (자) 447-8966  
**의원약력:**  
 - 건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동 단위농협 이사  
 - 동부경찰서 방범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강남시멘트판매(주)대표  
 - 한라 시멘트 전국대리점 회장

**문홍열**      **자양 제1동**



생년월일 : 1945.3.20  
 전화번호 : (사) 454-1472 / (자) 456-5164  
**의원약력 :**  
 - 연세대 의회발전과정 수료  
 - 중앙대 사회발전대학원 수료  
 - 아남산업(주)근무  
 - 바르게살기위원회 부위원장  
 - 자양지구호남향우회 회장  
 - 민주당 성동병지구당 교육분과위원장

**김세호**      **자양 제2동**



생년월일 : 1942.1.10  
 전화번호 : (사) 457-8878 / (자) 446-0304  
**의원약력 :**  
 - 서울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서울대의대 임상교수  
 - 전문의 국가고시 출제위원  
 - 국립의료원 외과근무  
 - 자양성모병원장

**김영용**      **자양 제2동**



생년월일 : 1956.1.6  
 전화번호 : (사) 456-5163 / (자) 457-0484  
**의원약력 :**  
 - 경희대 행정대학원 수료  
 - 신민당 성동병지구당 지방자치 대책위원  
 - 동부청년회의소 사무국장  
 -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성동구 지회장  
 - 한빛국회문제연구소 부이사장  
 - 건축업

**이중학**      **자양 제3동**



생년월일 : 1935.6.3  
 전화번호 : (사) 457-5473 / (자) 456-9907  
**의원약력 :**  
 - 경신고교 졸업  
 - 중앙대 문리과 졸업  
 - 청구상고 교감  
 - 동 방위협의회 회장  
 - 충청향우회 고문  
 - 동 방범위원회 고문

**최태순**      **자양 제3동**



생년월일 : 1937.7.22  
 전화번호 : (사) 456-2880 / (자) 455-4758  
**의원약력 :**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 연수교육 수료  
 - 한양대학교 지방의회 발전과정 수료  
 - 자양지구 호남향우회 회장  
 - 국제 라이온스크립 309A지구 삼평라이온스 이사  
 - 구 청년지도위원

**김태식**      **노유 제1동**



생년월일 : 1932.2.28  
 전화번호 : (사) / (자) 464-1771  
**의원약력 :**  
 - 청주사범대 졸업  
 - 관성초등학교 교사  
 - 새마을 금고 감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결산감사 대표위원  
 - 광진구 민원심사위원

**노승균**      **노유 제2동**



생년월일 : 1943.2.28  
 전화번호 : (사) 3431-2001 / (자) 3409-2002  
**의원약력 :**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지회장  
 - 동부경찰서 방범연합회장  
 -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회장  
 - 전국경찰차지문위원장

**강인식**      **화양동**



생년월일 : 1932.8.22  
 전화번호 : (사) 468-4333 / (자) 463-5219  
**의원약력 :**  
 -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당 성동(을)고문  
 - 삼보실업 대표

# 제1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허운회 화양동



**생년월일:** 1938.10.5  
**전화번호:** (사) 468-2007 / (자) 499-2232  
**의원약력:**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원 선도보호위원  
 - 민주평화통일 광진구협의회 감사  
 - 광진구 중소기업 자금대출심사위원  
 -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나라당광진(을)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이성전 군자동



**생년월일:** 1937.2.25  
**전화번호:** (사) 499-4542 / (자) 466-1858  
**의원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국전자연합회 고문(10대회장)  
 - 아세아전자상가상우회 고문(17대 회장)  
 - 용산전자상가전자부품상우회 고문(초대회장)  
 - 삼화전자부품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 김중환 군자동



**생년월일:** 1955.2.14  
**전화번호:** (사) 462-8655 / (자) 467-3424  
**의원약력:**  
 - 국민대 정치대학원 재학  
 - 교통문제개선위원회 위원  
 - 도시건설심의위원회 위원  
 - 세민정책연구소 이사  
 - 건축업





## 제2대 전반기 의장단

( '95. 7. 1 ~ '96. 12. 31 )

### ■ 의장



이성전

### ■ 부의장



추윤구

### ■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허은희



총무·재무위원장  
김영용



시민·건설위원장  
이석봉



## 제2대 후반기 의장단

('97. 1. 1 ~ '98. 6. 30)

### ■ 의장



이성전

### ■ 부의장



오효무

('97. 1. 1 ~ '98. 4. 4)

### ■ 부의장



허은희

('98. 4. 5 ~ '98. 6. 30)

### ■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창비



총무·재무위원장  
김종환



시민·건설위원장  
최금손

## 제2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김광일

### 중곡 제1동



생년월일 : 1941.11.26  
전화번호 : (사) 466-6551 / (자) 466-8319  
의원약력 :  
- 건국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중곡1동 유관단체협의회 고문  
- 한양대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  
- 제2대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신인용

### 중곡 제2동



생년월일 : 1949.1.10  
전화번호 : (사) 446-5725 / (자) 456-2444  
의원약력 :  
- 명지실업전문대 새마을금고과 수료  
- 건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중곡2,4동 새마을금고 감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동구의회 초대의원

### 이효영

### 중곡 제2동



생년월일 : 1945.1.13  
전화번호 : (사) 452-3451 / (자) 458-8671  
의원약력 :  
-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 중곡(1,2,3,4)동 중앙체육회장  
- 중곡2동 민방위협의회장  
- 광진구 생활체육 조기축구회 고문  
- 광진구 방위협의회 위원  
- 광주 이씨 중앙화수회 부회장

### 오효무

### 중곡 제3동



생년월일 : 1942.1.21  
전화번호 : (사) 466-8808 / (자) 466-4441  
의원약력 :  
- 경남진주고등학교  
- 한양대 지방의회정책발전과정 수료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의원연수과정 수료  
- 삼양통상(주)근무  
- 국제상사(주)근무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겸  
광진갑지구당부위원장

### 설성환

### 중곡 제3동



생년월일 : 1947.6.10  
전화번호 : (사) 466-4652 / (자) 436-3516  
의원약력 :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14대 대통령 선거 성동병자구 대책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대의원(현)  
- 새정치국민회의 광진구지구당부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중곡3동 협의회 부회장(현)  
- (주)전창종합건설 전무이사겸 지사장(현)

### 이석봉

### 중곡 제4동



생년월일 : 1940.10.19  
전화번호 : (사) 447-4089 / (자) 446-5049  
의원약력 :  
- 서울동도고교 졸업  
- 한양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발전과정 수료  
- 동사회정회추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중곡2,4동청년회고문  
- 성원물산 대표(제조업)

## 제2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추윤구 중곡 제4동



생년월일: 1942.6.5  
 전화번호: (사) 454-7747 / (현) 011-326-7160  
**의원약력:**  
 -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세종전기건설(주) 회장  
 - 제2대 광진구의회 부의장

### 박유관 능동



생년월일: 1937.4.17  
 전화번호: (사) 457-1155 / (자) 446-4443  
**의원약력:**  
 - 조선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 수료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MBC 문화방송선정 문화시민상 수상  
 - 법무부강생보호회 성동구운영위원  
 - 민족통일 성동구협의회 운영위원  
 - 동부경찰서 대공원파출소 선진질서위원장

### 최근식 구의 제1동



생년월일: 1942.7.2  
 전화번호: (사) 456-9285 / (자) 444-6033  
**의원약력:**  
 - 건축기사  
 - 경희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태평양건설(주)근무  
 - 정우개발(주)근무  
 - 사회체육육상연합회 성동구 협의회장  
 - 생활체육육상연합회 성동구 협의회장

### 최금손 구의 제1동



생년월일: 1953.7.15  
 전화번호: (사) 456-2323 / (자) 458-2323  
**의원약력:**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지방자치 최고지도자과정 수료  
 - 건국대 행정대학원 최고부동산관리자과정 수료 및 학생회장역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광진구 비르개살기협의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영환 구의 제2동



생년월일: 1944.1.20  
 전화번호: (사) 446-2991 / (자) 444-1385  
**의원약력:**  
 - 동대문상고 졸업  
 - 세미율지도자  
 - 청소년지도위원  
 - 구의2동 통친회장  
 - 영희주거장 대표(현)

### 유승주 구의 제2동



생년월일: 1957.12.26  
 전화번호: (사) 453-8288 / (자) 453-1083  
**의원약력:**  
 -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장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역임  
 - (주)동덕 호텔트 이사 역임  
 - 광진구 탁구연합회 회장  
 - 서울시 탁구연합회 수석 부회장  
 - 재한 몽골초등학교 장학 후원회장(현)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아동분과위원장  
 - 제2대 광진구의회 96회계년도 결산감사 대표위원  
 -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광진(갑)지구당 부위원장

### 김선갑 구의 제3동



생년월일: 1960.6.25  
 전화번호: (사) 446-4260 / (자) 447-0966  
**의원약력:**  
 - 수원대 경성대학 무역학과 졸업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민주당 중앙위원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위원  
 - 제2대 광진구의회 96회계년도 결산감사 대표위원  
 - 21세기미래 연구소 연구위원

### 이동철 구의 제3동



생년월일: 1941.3.12  
 전화번호: (사) 444-0450 / (자) 444-0451  
**의원약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수료  
 - 서울시 공무원  
 - 구의3동 방위협의회 위원  
 - 구의3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고문  
 - 광진구 환경봉사단 고문

**고명곤**                      **광장동**



**생년월일:** 1956. 2. 6  
**전화번호:**  
**의원약력:**  
 - 현대전자산업근무(현)  
 - 제5대 서울시의원  
 - 정통부 윤리위원회 전문위원  
 - 문광부 아시아 산업교류재단 자문위원  
 - KT 하이텔 상임간사(현)

**이상철**                      **광장동**



**생년월일:** 1938. 3. 12  
**전화번호:**  
**의원약력:**  
 - 광진구 의정회 회장  
 - 바르게살기 운동 광진구협의회 회장  
 - 세계일보 조사위원, 인천일보 운영위원  
 - 자유총연맹 광진지회 운영위원  
 - 한국발전연구원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이금장**                      **자양 제1동**



**생년월일:** 1941.11.18  
**전화번호:** (사)444-8967 / (자)447-8966  
**의원약력:**  
 - 건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동 단위농협 이사  
 - 동부경찰서 방범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강남시멘트판매(주)대표  
 - 한라 시멘트 전국대리점 회장

**이창비**                      **자양 제1동**



**생년월일:** 1942.3.15  
**전화번호:** (사) 499-0136 / (핸) 011-226-5640  
**의원약력:**  
 - 고려대학원 자연자원정책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장  
 - 새마을 훈장 수상(1976)  
 - 서울시 한강관리 자문위원  
 - 성동구청 자문위원

**김영용**                      **자양 제2동**



**생년월일:** 1956.1.6  
**전화번호:** (사)456-5163 / (자)457-0484  
**의원약력:**  
 - 경희대 행정대학원 수료  
 - 신민당 성동병지구당 지방자치 대책위원  
 - 동부청년회의소 사무국장  
 - 민주연합 청년동지회 성동구 지회장  
 - 한빛국회문제연구소 부이사장  
 - 건축업

**전영동**                      **자양 제2동**



**생년월일:** 1956.7.23  
**전화번호:** (사) 3437-0044 / (자) 455-4436  
**의원약력:**  
 - 동국대학원 재학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삼진상가(주) 감사  
 - 성동백화점 대표이사

**김기섭**                      **자양 제3동**



**생년월일:** 1936.12.8  
**전화번호:** (사) 457-4422 / (자) 457-5577  
**의원약력:**  
 - 상주농장고등학교 졸업  
 - 국립체신대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과과정 수료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저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

**한중석**                      **자양 제3동**



**생년월일:** 1932.6.15  
**전화번호:** (사) 3436-1222 / (자) 457-4260  
**의원약력:**  
 - 경희대 법학과 졸업  
 - 문공부 종교실 증무담당관  
 - 문공부 방송심의관실 심의담당관  
 - 문공부 신문노조 분석관  
 - 문공부 창경궁 사무소장  
 - 문화부 국립중앙극장 서무과장

## 제2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총람

### 김태식 노유 제1동



생년월일: 1932.2.28  
 전화번호: (사) / (자) 464-1771  
**의원약력:**  
 - 청주사범대 졸업  
 - 관성초등학교 교사  
 - 새마을 금고 감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결산검사 대표위원  
 - 광진구 민원심사위원

### 노승균 노유 제2동



생년월일: 1943.2.28  
 전화번호: (사) 3431-2001 / (자) 3409-2002  
**의원약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지회장  
 - 동부경찰서 방범연합회장  
 -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회장  
 - 전국검찰자문위원장

### 박래학 노유 제2동



생년월일: 1954.1.21  
 전화번호: (사) 450-7777 / (자) 463-6661  
**의원약력:**  
 - 광운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금성대학전자(주) 대표이사  
 - 노유산파출소 청소년선도위원장  
 - 광운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처장  
 - 미시시피주립 상과대학 한국 총동문회 사무처장  
 - 재경 호남향우회 명예회장

### 이형태 화양동



생년월일: 1930.8.8  
 전화번호: (사) 453-3972 / (자) 465-7744  
**의원약력:**  
 - 보성초등학교 고등과 수료  
 - 화양무공훈장 수훈(62년)  
 - 화양동 민방위 협의회 초대 회장 역임  
 - (주)장화주택 대표 역임  
 - 대한무공수훈자회 중앙위원 역임  
 - 동부경찰서 명예파출소 연합회 부회장 역임

### 허운희 화양동



생년월일: 1938.10.5  
 전화번호: (사) 468-2007 / (자) 499-2232  
**의원약력:**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수료  
 - 서울지방감찰청 동부지원 선도보호위원  
 - 민주평화통일 광진구협의회 감사  
 - 광진구 중소기업 자금대출심사위원  
 -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나라당광진(을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김종환 군자동



생년월일: 1955.2.14  
 전화번호: (사) 462-8655 / (자) 467-3424  
**의원약력:**  
 - 국민대 정치대학원 재학  
 - 교통문제개선위원회 위원  
 - 도시건설심의회 위원회 위원  
 - 세민정책연구소 이사  
 - 건축업

### 이성전 군자동



생년월일: 1937.2.25  
 전화번호: (사) 499-4542 / (자) 466-1858  
**의원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국전자연합회 고문(10대회장)  
 - 아시아전자상가상우회 고문(17대 회장)  
 - 용산전자상가전자부품상우회 고문(초대회장)  
 - 삼화전자부품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진으로 보는 제1대 의정활동

광진구의회

G·w·a·n·g·j·i·n·g·u *Council*



❶ 총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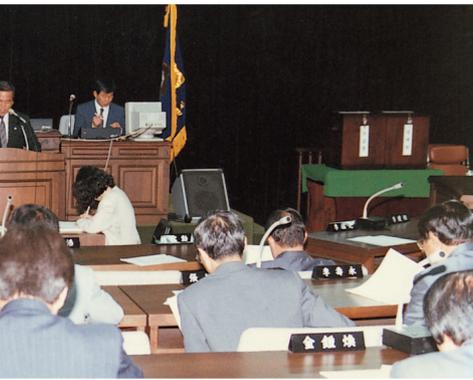
❷ 해외비교시찰

❸ 비교시찰

❹ 시민건설위원회

# 사진으로 보는 제1대 의정활동

## 광진구의회



- ⑤ 개정전반에 대한 개정질문
- ⑥ 개정질의(신인용의원)

- ⑦ 본회의를 마치며

- ⑧ 의회의원 세미나에서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중곡4동 김세환)



⑨ 비영리단체 구의선교보육원 설립(구의2동 박영태)

- ⑩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자양2동 김영용)
- ⑪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반공강연(구의2동 권승현)

- ⑫ 구청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구의 1·3동 백남식)
- ⑬ 21세기의 주인공들에게 장학금 전달식(광장동 최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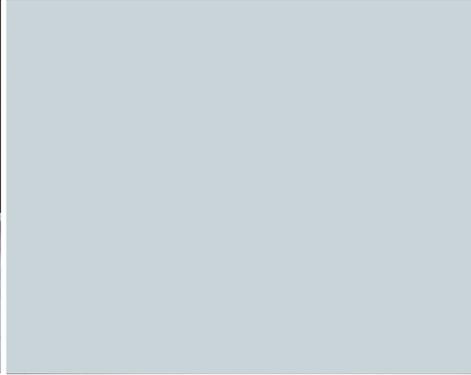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제1대 의정활동

## 광진구의회

## G·w·a·n·g·j·i·n·g·u Council



14



17



16



18

- 14 행정의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자양1동 이금장)
- 15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화양동 허은익)

- 16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개관식(자양3동 최태순)

- 17 행정의 집행실태 및 비효율성 예방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자양3동 김태식)
- 18 본회의 녹화현장 방문(군자동 이성진)

# 사진으로 보는 제2대 의정활동

광진구의회

G · w · a · n · g · j · i · n · g · u *Council*



1



3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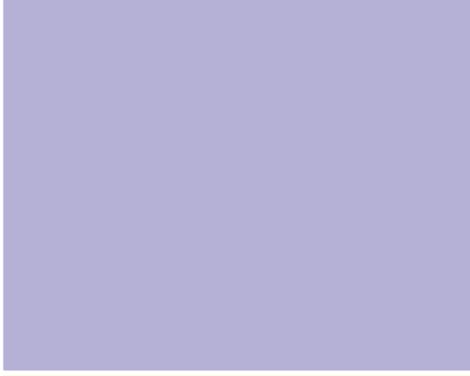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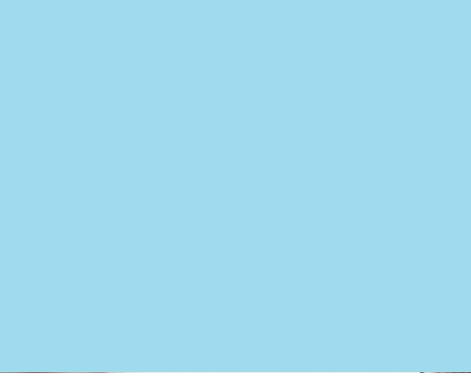
- 1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예방 대책제시(중곡1동 김광일)
- 2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생활의정 활동(중곡4동 주윤구)

- 3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회의진행

- 4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활동(중곡2동 이효영)
- 5 중곡동 212번지 상하수도공사 현장감독(중곡3동 설성환)

# 사진으로 보는 제2대 의정활동

## 광진구의회



- ⑥ 재해없는 안전한 광진구를 위한 공사현장방문(능동 박유관)
- ⑦ 주민불편 사항을 직접 발로 체험하는 현장의정활동(구의2동 유승주)

- ⑧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편성여부를 심사하는 예결위원장(구의2동 김영환)
- ⑨ 구의동 일대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내부현장점검(구의2동 최금손)

- ⑩ 발로 뛰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의정활동(광장동 고명근)
- ⑪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암거 현장점검(구의3동 김선갑)



12 구청에서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구의3동 이동철)

13 하수시설 공사현장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점검(자양1동 이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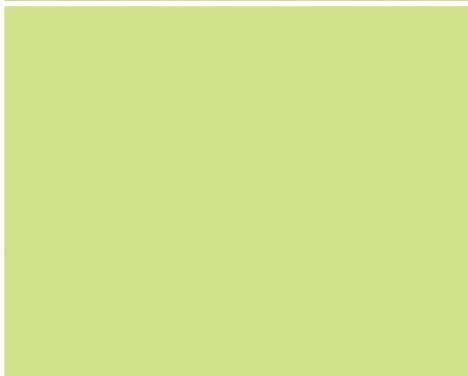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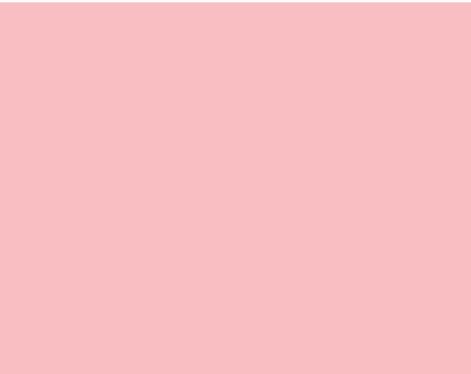
14 구립어린이장 체육대회에서 미래의 세쌍들과 함께...(화양동 여운희)

15 초대 부의장 선출되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저리(자양1동 이금장)

# 사진으로 보는 제2대 의정활동

광진구의회

G·w·a·n·g·j·i·n·g·u Council



16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의정활동 보고회(구의3동 한중석)

17 구민과 직결되는 조례심사 진행하는 위원장(자양2동 김영용)

18 부산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주자로 의원의 위상을 높였다(노유1동 김태식)

19 행정사무 2반장으로 구정에 대한 예리한 감사 및 대안제시(화양동 이형태)

20 합리적의회운영을 위한 본회의 진행하는 의장(군자동 이성진)

## 제1장 일반현황 29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31
1. 지방의회의 의의	31
2. 지방의회의 지위	31
3. 지방의회의 권한	33
제2절 의회 연혁	36
제3절 의회 현황	37
1. 초대 의회 (95. 3. 1 ~ 95. 6. 30)	37
2. 제2대 전반기 (95. 7. 1 ~ 96. 12. 31)	38
3. 제2대 후반기 (97. 1. 1 ~ 98. 6. 30)	39

## 제2장 본회의 운영 41

제1절 본회의 운영개요	43
1. 본회의 소집과 운영	43
2. 본회의 운영실적	44
제2절 회기별 본회의 운영	48
1. 제1대 회기별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48
2. 제2대 회기별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74

<b>제3장</b>	<b>위원회 활동</b>	<b>91</b>
제1절	상임위원회 .....	93
1. 의의	.....	93
2. 제1대 상임위원회	.....	93
3. 제2대 상임위원회	.....	121
제2절	특별위원회 .....	140
1. 제1대 특별위원회	.....	140
2. 제2대 특별위원회	.....	146
<b>제4장</b>	<b>행정사무감사</b>	<b>159</b>
제1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	161
1. 감사목적	.....	161
2. 관련법규	.....	161
3. 감사방법 및 절차	.....	161
4.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	162
제2절	행정사무감사 주요실적 .....	163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163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165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216

## 제5장 구정질문 241

제1절 제1대 의원 구정질문 .....	243
1. 총괄 .....	243
2. 질문내용 (요약발취) .....	244
제2절 제2대 의원 구정질문 .....	258
1. 총괄 .....	258
2. 질문내용 요약발취 .....	259

## 제6장 기타 주요 의정활동 305

제1절 결산검사 .....	307
1. 개요 .....	307
2. 회계연도별 결산검사 결과 .....	308
제2절 건의·결의안 .....	364
1. 건의안 .....	364
2. 결의안 .....	364
3. 제1대·제2대 건의안 및 결의안 현황 .....	364

## 제7장 부록 제1·2대 의원명단 383



# 제1장

## 일반현황



-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제2절 의회 연혁
- 제3절 의회 현황



# 제1장 일반현황

##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에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2.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양 기관간의 조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속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1) 헌법상의 기관

현행 헌법 제118조는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 2) 주민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 3) 의결기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다.

### 4) 입법기관

의회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폐된다. 지방의회는 법령유보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제정을 위하여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 5) 감시통제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기관대립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과 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지방자치법 제35조2),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권(지방자치법 제37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는 재정과 일반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통하여 폭넓은 감시·비판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 3.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결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 1) 의결권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지 의결사항, ②지방자치법령이나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③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 2) 감시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3) 자율권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회의규칙 제정권, ②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질서유지권, ④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4)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임권을 행하는 경우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 5) 청원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6)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7) 보고 및 자료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8)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 제2절 의회 연혁

### 연 역

- 1988. 5. 1      법률제40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행정구에서 자치단체로 승격
- 1991. 3.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초대의원 선거(의원 50명 선출)
- 1995. 3. 1      법률제4802호에 의거 성동구에서 분구(광진구 탄생 : 16개동)  
초대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초대의원 25명)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 1995. 6. 27    지방의회선거(제2대 의원 29명 선출)
- 1995. 7. 18    제2대 전반기 의장단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1996. 12. 28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1998. 6. 4      지방의회 선거(제3대의원 16명 선출)
- 1998. 7. 15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1998. 7. 18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 2000. 7. 11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 2002. 7. 1      제4대전반기의장단선출
- 2004. 7. 1      제4대 후반기의장단선출
- 2006. 5. 30    제4회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4개 선거구 12명,비례대표 2명)
- 2006. 7. 1      제5대전반기의장단선출

## 제3절 의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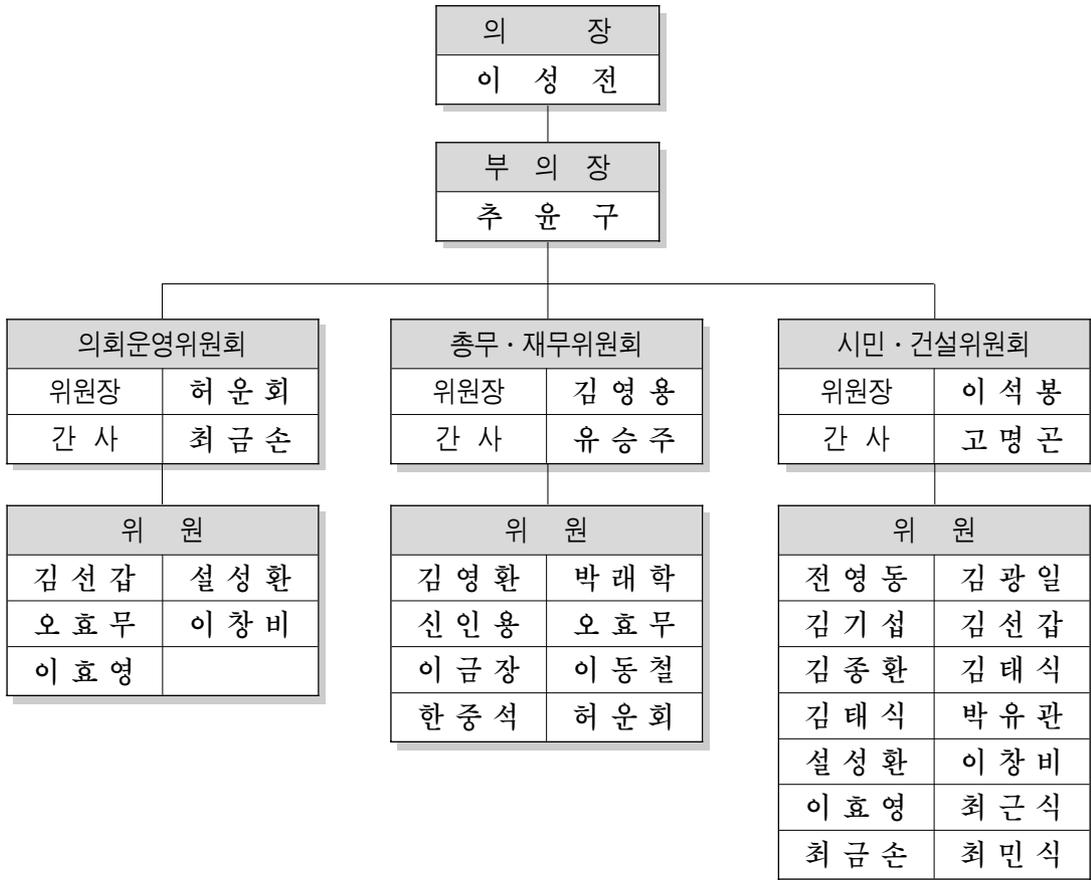
### 1. 초대 의회 (95. 3. 1 ~ 95. 6. 30)

#### 의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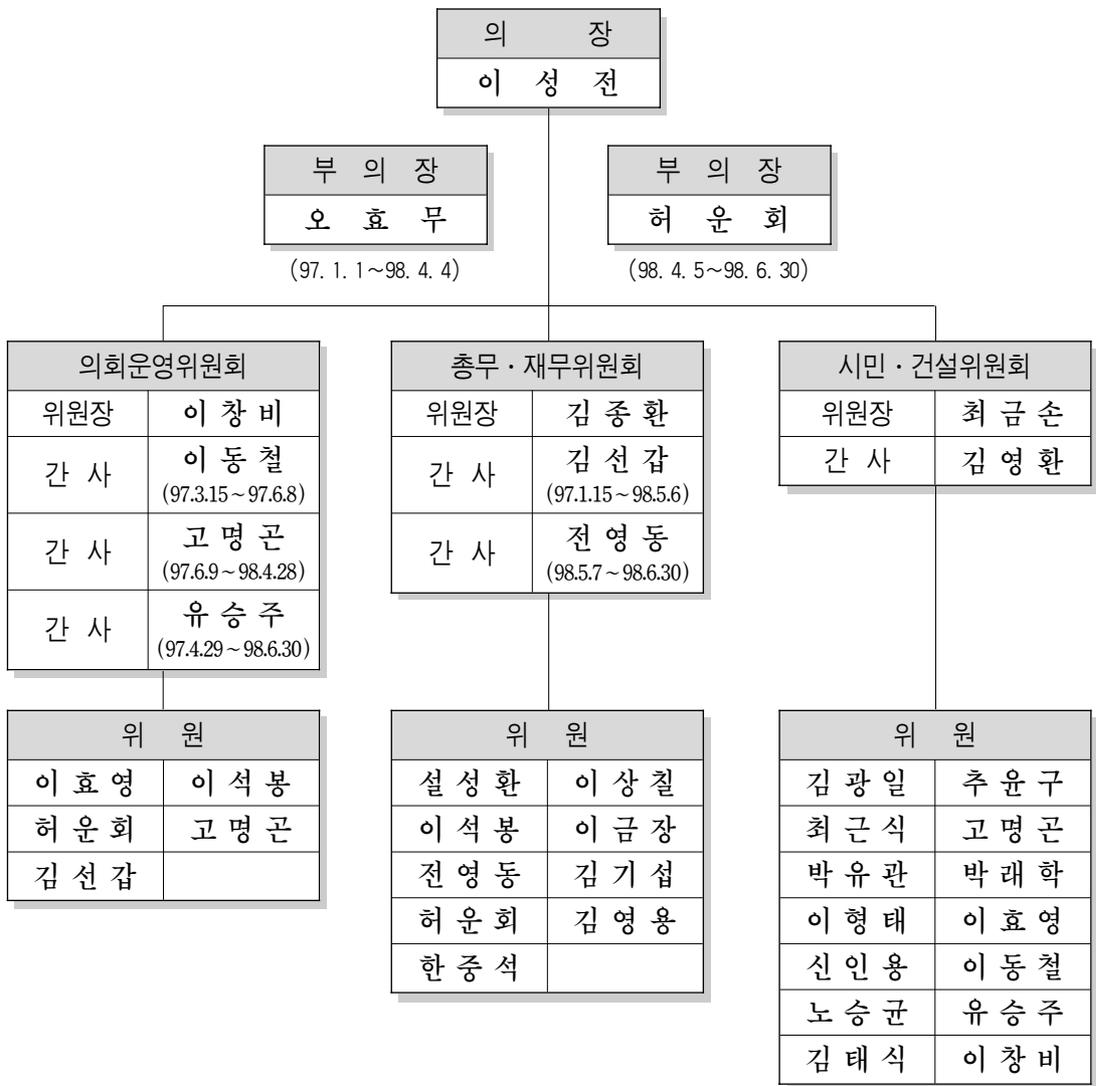
## 2. 제2대 전반기 (95. 7. 1 ~ 96. 12. 31)

### 의회현황



### 3. 제2대 후반기 (97. 1. 1 ~ 98. 6. 30)

**의회현황**





## 제2장

### 본회의 운영



- 제1절 본회의 운영개요
- 제2절 회기별 본회의 운영

gwangjin



## 제2장 본회의 운영

### 제1절 본회의 운영개요

#### 1. 본회의 소집과 운영

##### 가. 구성원

본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에서 또는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 모든 지방의원을 말한다. 그러나 결원, 즉 사망·사직·자격상실·제명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에서 제외되게 된다. 다시 말하여 구성원이란 재적의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본회의 소집과 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의원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를 『집회』라 한다.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이 회의는 적법한 회의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집은 유효한 의회활동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다.

## 다. 본회의 운영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의 시작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관계 의안자료 등을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라. 표결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할 대상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 무슨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가를 의원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키며, 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①이의유무,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 2. 본회의 운영실적

광진구의회는 성동구의회에서는 95. 3. 1 분구를 하였다.

분구 이전 제1대 성동구의회(95. 2. 28까지)에서는 정기회 4회, 임시회 36회 총 40회 회기가 운영되었다.

광진구 분구이후 1대 광진구의회(95. 3. 1~95. 6. 30)에서는 임시회 3회 회기가 운영되었다.

이후 제2대 광진구의회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구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제2대는 (95. 7. 1~98. 6. 30)에서는 정기회 3회, 임시회 23회 총 26회 회기가 운영되었다.

## 가. 제1·2대별 본회의 운영현황

### 1) 제1대 본회의 운영-분구전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소 계	본회의	위원회(휴회중)
제 1회임시회	91. 4. 15~ 4. 16	2	2	-
제 2회임시회	91. 6. 25	1	1	-
제 3회임시회	91. 7. 20~ 7. 25	6	3	3
제 4회임시회	91. 9. 7~ 9. 10	4	3	1
제 5회임시회	91. 10. 25~10. 28	4	2	2
제 6회임시회	91. 11. 23~11. 30	8	4	4
제 7회정기회	91. 12. 2 ~12. 31	30	9	21
제 8회임시회	92. 3. 27~ 3. 28	2	2	-
제 9회임시회	92. 4. 15~4. 16	2	2	-
제10회임시회	92. 5. 15	1	1	-
제11회임시회	92. 5. 28~ 5. 29	2	2	-
제12회임시회	92. 6. 23~ 6. 24	2	2	-
제13회임시회	92. 6. 29	1	1	-
제14회임시회	92. 7. 20~7. 27	8	2	6
제15회임시회	92. 8. 20~ 8. 22	3	2	1
제16회임시회	92. 9. 26~ 9. 30	5	2	3
제17회임시회	92. 10. 27~10. 30	4	2	2
제18회정기회	92. 11. 25~12. 24	30	6	24
제19회임시회	93. 1. 29	1	1	-
제20회임시회	93. 3. 25~ 3. 26	2	2	-
제21회임시회	93. 4. 7	1	1	-
제22회임시회	93. 5. 31	1	1	-
제23회임시회	93. 6. 1	1	1	-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소 계	본회의	위원회(휴회중)
제24회임시회	93. 7. 5~ 7. 12	8	2	6
제25회임시회	93. 8. 13~ 8. 17	5	2	3
제26회임시회	93. 9. 3	1	1	
제27회임시회	93. 10. 29~11. 5	8	3	5
제28회임시회	93. 11. 25~12. 24	30	6	24
제29회임시회	94. 1. 25~ 1. 27	3	2	1
제30회임시회	94. 3. 3~ 3. 4	2	2	
제31회임시회	94. 3. 30	1	1	
제32회임시회	94. 5. 25~ 5. 26	2	2	
제33회정기회	94. 7. 1~ 7. 15	15	2	13
제34회임시회	94. 8. 18~ 8. 24	7	2	5
제35회임시회	94. 9. 30~10. 10	11	2	9
제36회임시회	94. 11. 5~11. 8	4	2	2
제37회정기회	94. 11. 25~12. 29	35	5	30
제38회임시회	95. 1. 25	1	1	
제39회임시회	95. 2. 21~ 2. 24	4	2	2
제40회임시회	95. 2. 28	1	1	

## 1) 초대 광진구 본회의 운영-분구 이후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소 계	본회의	위원회(휴회중)
제1회임시회	95. 3. 1~ 3. 7	8	3	5
제2회임시회	95. 5. 2~ 5. 10	9	2	7
제3회임시회	95. 5. 25~ 5. 27	3	2	1

## 3) 제2대 본회의 운영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소 계	본회의	위원회(휴회중)
제 4회임시회	95. 7. 10	2	1	1
제 5회임시회	95. 8. 7~ 8. 9	4	2	2
제 6회임시회	95. 9. 20~ 9. 28	9	3	6
제 7회임시회	95. 11. 11~11. 16	6	3	3
제 8회정기회	95. 11. 25~12. 29	35	6	29
제 9회임시회	96. 3. 7~ 3. 13	7	2	5
제10회임시회	96. 4. 18~ 4. 22	5	2	3
제11회임시회	96. 6. 17~ 6. 26	10	4	6
제12회임시회	96. 8. 30~ 9. 9	11	2	9
제13회임시회	96. 11. 2~11. 11	10	2	8
제14회정기회	96. 11. 25~12. 28	34	6	28
제15회임시회	97. 1. 10	1	1	-
제16회임시회	97. 2. 1	1	1	-
제17회임시회	97. 3. 13~ 3. 18	6	2	4
제18회임시회	97. 5. 9~ 5. 13	5	2	3
제19회임시회	97. 7. 11~ 7. 18	8	2	6
제20회임시회	97. 9. 26~10. 10	15	4	11
제21회임시회	97. 11. 3~11. 11	9	2	7
제22회정기회	97. 11. 25~12. 26	32	4	28
제23회임시회	98. 3. 6~ 3. 19	14	2	12
제24회임시회	98. 4. 9~13	5	2	3
제25회임시회	98. 5. 6~ 5. 11	6	2	4
제26회임시회	98. 6. 18~ 6. 24	7	2	5

## 제2절 회기별 본회의 운영

### 1. 제1대 회기별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 가) 제1대 본회의 (분구전)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1. 4. 15)	1. 의장·부의장 선거 2. 제1회성동구의회회기결정의건	· 문길호, 이성전 · 4. 15~4. 16
	제2차 본회의 (91. 4. 16)	1. 구정업무보고 2. 성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 조례제정의건 3. 성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실비변상조례제정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최태순, 조용훈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1. 6. 25)	1. 회기결정의건 2.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3.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 6. 25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김재인, 정기운, 이재선 · 김동천, 전이곤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1. 7. 20)	1. 회기결정의건 2. 성동구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7. 20~7. 25 · 원안가결
	제2회 본회의 (91. 7. 22)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선출의건 2. 성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의건	· 김보구, 허필수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3차 본회의 (91. 7. 25)	1. 성동구제1차추가경정예산안 2. 성동구제1차추가경정심사보고 3. 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 김태식, 김종산
제4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1. 9. 7)	1. 회기결정의견 2. 성동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 대한중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계류
	제2차 본회의 (91. 9. 9)	1. 성동구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 토지에 대한중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91. 9. 10)	1. 서울특별시성동구별정직공무원인 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원안가결 · 계류  · 이복구, 김영용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1. 10. 25)	1. 회기결정의견 2. 성동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10. 25~10. 28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1. 10. 28)	1. 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정기운, 문홍렬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1. 11. 23)	1. 회기결정의견 2. 성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11. 23~11. 30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계획안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1. 11. 25)	1. 성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91. 11. 26)	1.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계획안 2. 92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4. 한강교량관리전환건의안	· 원안가결 · 특위구성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91. 11. 30)	1. 92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이견상, 이금장
제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1. 12. 2)	1. 제7회성동구의회회기결정의건 2. 성동구청장구정연설	· 12. 2~12. 31
	제2차 본회의 (91. 12. 3)	1.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 설명의건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 설명의건 3.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제3차 본회의 (91. 12. 4)	1. 예산결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91. 12. 6)	1.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회기결정 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12, 13, 14, 16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91. 12. 24)	1.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 보고의건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채택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91. 12. 26)	1. 성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민대상조례안 3. 성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개정안 4. 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개정안	· 원안가결  · 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91. 12. 27)	1. 서울특별시성동구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 세불균 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구세 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 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6. 92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 확안2차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8차 본회의 (91. 12. 30)	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에 대한구 세과세면제 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중개정조 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정비 정돈에 따른구세 과세면제 에 관한조례 중개정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임대주택에 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동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동구세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9차 본회의 (91. 12. 31)	1. 92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2차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인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일상, 이종학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3. 27)	1. 회기결정의견 2. 92구정업무보고 3. 성동구민대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동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27~3. 28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회 본회의 (92. 3. 28)	1. 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3. 구선공원지하주차장설치계획동의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가조례중 개정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이명재, 최복수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4. 15)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 4. 15~4. 16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2. 4. 16)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회의규칙중정 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 이경운, 김세호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5. 15)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공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15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 서승린, 최순철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5. 28)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 선임안	· 5. 28~5. 29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2. 5. 29)	1. 결산감사위원선임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상임위원장	· 이일상, 김성균, 박영태 · 이재선, 이금장,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선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용훈, 오효무, 최태순 · 민병은, 박영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6. 23)	1. 회기결정의건 2. 성동구수문관리에 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3.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23 · 노승균외 22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2. 6. 24)	1. 성동구수문관리에 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4. 구선공원지하주차장건설계획동의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김중배, 백남식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6. 29)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29 · 원안가결 · 정광일, 권승현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7. 20)	1. 회기결정의건 2. 성동구수문관리및수방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 20~7. 27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2. 7. 27)	1. 92년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동의안 2.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정광일, 이재선
제15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2. 8. 20)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에출석하여답 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 중개정규정안 5. 수해지역수방대책및피해주민복구 지원건의안	· 8. 20~8. 22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2. 8. 22)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 례안 4. 군자소규모공원지하주차장건설계획 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방효영, 김세환
	제1차 본회의 (92. 9. 26)	1. 회기결정의건 2. 92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9. 26~9. 30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2. 9. 30)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 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레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 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복우, 이석봉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2. 10. 27)	1. 회기결정의견 2. 199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1992년도제3,4,5차간주처리보고의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견 5.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에관한건의안	· 10. 27~10. 30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2. 10. 30)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 회조례안 4.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계획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장기만, 임동식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2. 11. 25)	1. 회기결정의견 2. 19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3. 구정질문	· 11. 25~12. 24
	제2차 본회의 (92. 11. 30)	1. 91년도결산검사보고의견 2. 19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3. 구정질문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3차 본회의 (92. 11. 30)	1.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와기간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 12. 8~12. 10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92. 12. 21)	1. 92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2. 19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92. 12. 23)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동구도시기본계획설명의건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93. 1. 29)	1. 93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수영, 오효무
제19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3. 1. 29)	1. 회기결정의건 2. 93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3. 92년제6차간주처리보고의건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1. 19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표종수, 김춘기
제20회 임사회	1차 본회의 (93. 3. 25)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3. 25~3. 26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3. 3. 26)	1.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경계에 관한 의견청취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	· 원안가결  · 김재인, 신인용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4. 7)	1. 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선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7 · 문길호, 노승균 · 김화목, 박원식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5. 31)	1. 회기결정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성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 추천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증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31 · 김태식, 최복수, 임동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 허운희, 김종환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6. 1)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1 · 원안가결 · 이일상, 김성균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7. 5)	1. 회기결정의건 2. 9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93년1~3차간주처리내역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성동구의회상임위원선임의건 6. 성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증개정조 례안 7. 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 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3. 7. 12)	1. 9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5. 93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건설, 최태원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8. 13)	1. 회기결정의건 2. 93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8. 13~8. 17
	제2차 본회의 (93. 8. 17)	1.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3. 2차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옥수제1동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강인식, 이종학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9. 3)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 3 · 장기만  · 이복구, 김영용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3. 10. 29)	1. 회기결정의건	· 10. 29~11. 5
	제2차 본회의 (93. 11. 4)	1.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93. 3차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례안	
	제3차 본회의 (93. 11. 5)	1.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가스사업및가스사 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조용훈, 문홍열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3. 11. 25)	1. 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구정질문	· 11. 25~12. 24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3. 11. 26)	1. 구정질문	
	제3차 본회의 (93. 12. 1)	1.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와기간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4차 본회의 (93. 12. 17)	1. 93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2. 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93. 12. 20)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국립서울정신병원이전건의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93. 12. 24)	1. 워커힐개발관련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의안 2. 성동구상징물제정동의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 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명재, 이금장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 1. 25)	1. 회기결정의건 2. 성동구상징물제정에관한행정사무조 사발의안 3. 성동구상징물제정에관한행정사무조 사특별위원회구성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행사의전지침시정 건의안	· 1. 25~1. 27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4. 1. 27)	1. 성동구상징물제정에관한행정사무조 사계획승인안 2. 지방자치법및이에 관련된법률중개정 건의안 3. 성동구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서승린, 최순철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 3. 3)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성동구상징물제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 3. 3~3. 4 · 원안가결

구분	일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5. 서울특별시성동구상징물(6종)중구 기도형폐기안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4. 3. 4)	1.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 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 료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 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경운, 최복수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 3. 30)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 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사등에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안 6. 회의록서명의의원선출의건	· 3. 30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정기운, 박영태
제32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4. 5. 25)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안	· 5. 25~5. 26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4.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2회 본회의 (94. 5. 26)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성동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석봉, 문홍렬, 방효영</li> <li>· 장기만, 표중수, 이건상, 허운희, 김화목</li> <li>· 민병은, 권승현</li> </ul>
제33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4. 7. 1)	1. 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소속변경의건 3.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촉진협의회조례안 4. 1994년도제1,2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5.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1~7. 15</li> <li>· 원안가결</li> </ul>
	제2차 본회의 (94. 7. 15)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김중배, 백남식</li> </ul>
제34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4. 8. 18)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8. 18~8. 24

구분	일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4. 8. 2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안</li> <li>3. 동대문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대상조정지역의견수렴안</li> <li>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li> <li>5.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li> <li>6. 서울특별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7. 서울특별시성동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li> <li>8. 94성동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li> <li>9.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li> <li>10.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li> <li>1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li> <li>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li>· 정광일, 전이곤</li> </ul>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 9. 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기결정의견</li> <li>2. 서울특별시성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30~10. 10</li> <li>· 원안가결</li> </ul>
	제2차 본회의 (94. 10.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li> <li>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임남규, 김종산</li> </ul>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 11. 5)	1. 회기결정의건	· 11. 5~11. 8
	제2차 본회의 (94. 11. 8)	1. 서울특별시성동구이동도서관위탁 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 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에따른의견청 취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복우, 이재선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4. 11. 25)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결산검사보고의건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구정질문	· 11. 25~12. 29
	제2차 본회의 (94. 11. 28)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와기 간결정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94. 12. 15)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제4차 본회의 (94. 12. 21)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4. 94년도제3차~5차간주처리내역보고 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5.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성동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94. 12. 29)	1.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세감면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4성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방효영, 김세환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5. 1. 25)	1. 회기결정의견 2. 분구에따른법정동설치를위한의견 취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1. 25  · 장기만, 이석봉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5. 2. 21)	1. 회기결정의견 2.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 2. 21~2. 24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5. 2. 24)		
제40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5. 2. 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기결정의건</li> <li>2.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판매대금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li> <li>3.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li> <li>4.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5.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 조례중개정조례안</li> <li>6.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7.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 례안</li> <li>8.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li> <li>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28</li> <li>• 원안가결</li> <li>• 이수영, 오효무</li> </ul>





구분	일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14.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안	· 원안가결
		15.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16.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17. 서울특별시광진구유재산관리조례 안	· 원안가결
		18.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안	· 원안가결
		19.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20. 서울특별시광진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21.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안	· 원안가결
		2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토지평가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23.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24.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안	· 원안가결
		25.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민원조정위원 회조례안	· 원안가결
		26. 서울특별시광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 수조례안	· 원안가결
		2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안	· 원안가결
		2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29.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30.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안	· 원안가결
		3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32. 서울특별시광진구여비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33.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안	· 원안가결
		34. 서울특별시광진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35. 서울특별시광진구지명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36.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37.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38.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안	· 원안가결
		39. 서울특별시광진구구민대상조례안	· 원안가결
		40.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비용 변상조례안	· 원안가결
		41. 서울특별시광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 원안가결
		4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43.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위한조례안	· 원안가결
		44. 서울특별시광진구구립사회복지시설 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45. 서울특별시광진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	· 원안가결
		46.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이용시설과태 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47. 서울특별시광진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48. 서울특별시광진구가스사업자및가스 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9. 서울특별시광진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50.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51.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52. 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설 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3.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54.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5.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56.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57.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58. 서울특별시광진구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59.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조례안	· 원안가결
		60.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 례안	· 원안가결
		61. 서울특별시광진구교통안전대책위원 회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62.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6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64.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안	· 원안가결
		65.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안	· 원안가결
		66.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7. 서울특별시광진구수방단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68.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안 69. 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	· 원안가결 · 박원식, 김종환
제2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5. 5. 2)	1. 회기결정의건	· 95. 5. 2~5. 10
	제2차 본회의 (95. 5. 10)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방대책및방시설 관리실태점검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점검의건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증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증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증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신인용, 허운희
제3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5. 5. 25)	1. 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관광사업에 관한 징수금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민원조정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증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 95. 5. 25~5. 27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5. 5. 27)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2. 의회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오효무, 강인식

## 2. 제2대 회기별 의사일정 및 안건처리 현황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6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5. 9.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li> <li>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li> <li>3. 95년도제1·3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li> <li>4.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직원의일비와 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li> <li>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9. 20~9. 28</li> <li>· 원안가결</li> </ul>
	제2차 본회의 (95. 9. 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에 대한결의안</li> <li>2.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에 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li> <li>3.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li> <li>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li> <li>5.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li> <li>6.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li> <li>7.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제3차 본회의 (95. 9. 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을 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li> <li>2. 9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li> <li>3. 광진구문화축제준비사항보고의건</li> <li>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이상철</li> <li>· 간 사 : 유승주</li> <li>· 수정가결</li> <li>· 오효무, 이석봉</li> </ul>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5. 11. 11)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95. 11. 11~11. 16
	제2차 본회의 (95. 11. 1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선임건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95. 11. 16)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민의날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증개 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 증개정조례안 5. 5.18관계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 결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 박유관, 최금손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5. 11. 25)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95. 11. 25~12. 29 · 95. 12. 1~12. 7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95. 11. 27)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설명 2. 95년도제4차간주처리내역보고건의건 3. 구정질문	· 오효무, 고명곤, 김광일
	제3차 본회의 (95. 11. 28)	1. 구정질문	· 유승주, 이동철 이창비, 이효영
	제4차 본회의 (95. 12. 13)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건의건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5차 본회의 (95. 12. 20)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 수정가결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 3. 7)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구정보고의건	· 96. 3. 7~3. 13
	제2차 본회의 (96. 3. 13)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 동비·의회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 회조례안 7. 광진구조형물제정보고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제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발의자 : 유승주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유승주, 김선갑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 4. 18)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96. 4. 18~4. 22
	제2차 본회의 (96. 4. 22)	1. 서울특별시광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여비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 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7.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이동철, 고명곤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 6. 17)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출설명 3. 96년도제1,2차일 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6. 한강오염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 96. 6. 17~6. 26  · 위원장 : 김선갑  · 원안가결 · 발의자 : 김기섭외 6인 · 부결
	제2차 본회의 (96. 6. 21)	1. 회기연장의건 2. 구정질문의건	· 96. 6. 17~6. 28 · 이동철, 한중석, 최민식, 이상철, 이효영, 이창비 고명곤, 신인용
	제3차 본회의 (96. 6. 22)	1. 광진구민의노래제작경위보고및시안 청취의건 2. 환경모범도시광진21작성및광진환경 선언선포경과보고의건 3. 구정질문의건	· 유승주
	제4차 본회의 (96. 6. 28)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법정동조정및불합리한동경계조정 승인신청안 3. 한강오수배출실태조사활동보고및 결의문채택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채택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상칠, 이금장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 8. 30)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96년도제3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 96. 8. 30~9. 9  · 원안가결
	제2차본회의 (96. 9. 9)	1. 서울특별시신청사뚝섬유치촉구결의 안 2.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변경결정 에따른건의안 3. 96중기재정계획보고 4. 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1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 이창비, 김영용



구분	일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결산승인의건 15. 95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 의건 1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전영동, 김기섭
제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6. 11. 25)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6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의건 3. 96년도제4~9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11. 25~12. 28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한중석, 김태식
	제2차 본회의 (96. 11. 27)	1.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96. 12. 2~12. 7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96. 11. 28)	1. 구정질문의건	· 이창비, 최금손, 전영동, 이형태, 노승균, 한중석, 김광일, 박유관, 김기섭,
	제4차 본회의 (96. 11. 29)	1. 구정질문의건	· 설성환, 박래학, 유승주, 김선갑
	제5차 본회의 (96. 12. 20)	1.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 97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96. 12. 21)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7차 본회의 (96. 12. 26)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제10~13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운영상황의공 개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토지평가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제8차 본회의 (96. 12. 27)	1. 의장 · 부의장선출의건	· 의 장 : 이성전 · 부의장 : 오효무
제15회 임사회	제1회 본회의 (97. 1. 10)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7. 1. 10 · 원안가결 · 운영위원장 : 이창비 · 총무재무위원장 : 김중환 · 시민건설위원장 : 최금손 · 노승균, 박래학
제16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7. 2. 1)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7. 2. 1 · 이형태, 허운희
제17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7. 3. 13)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유승주의원의외 9인발의	· 97. 3. 13~3. 18 · 김중환, 김광일 · 부결

구분	일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차 본회의 (97. 3. 18)	1. 회기연장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원안가결 · 97. 3. 13~3. 21
	제3차 본회의 (97. 3. 21)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요구에관한청원(이기회 외71인 허운회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승인건 5. 서울특별시광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의견채택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차 본회의 (97. 5. 9)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5. 5. 9~5. 13 · 위원장 : 유승주 · 신인용, 이효영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7. 5. 13)	1. 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군자동374-4호외2필지토지건물취득승인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5.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제19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7. 7. 11)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해외자원회수시설시찰경과보고의건 4. 자양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사업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7. 7. 11~7. 18 · 한중석의원 외 9인 · 허운희  · 설성환, 이석봉
	제2차 본회의 (97. 7. 18)	1.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해외자원회수시설시찰경과보고의건	· 위원장 : 한중석 · 간 사 : 고명곤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고명곤
제20회 임사회	제1차 본회의 (97. 9. 26)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4.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안설명 5. 97년도제1차~16차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6.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제안설명	· 97. 9. 26~10. 10 · 위원장 : 유승주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11. 서울특별시광진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 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13.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 획동의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추윤구, 박유관</li> </ul>
제21회 임사회	제1회 본회의 (97. 11. 3)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11. 3~11. 11</li> <li>· 원안가결</li> </ul>
	제2회 본회의 (97. 11. 11)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이효영</li> <li>· 최근식, 최금손</li> </ul>
제22회 정기회	제1회 본회의 (97. 11. 25)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97년도제17차~19차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 11. 25~12. 26</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ul>
	제2회 본회의 (97. 12. 8)	1. 구정질문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석, 노승균, 이효영, 설성환, 유승주</li> </ul>
	제3회 본회의 (97. 12. 13)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 획안 3. 의사일정변경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이효영</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ul>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4회 본회의 (97. 12. 16)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수정예산안 2. 98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제5회 본회의 (97. 12. 26)	1.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을 위한특별위원회명칭변경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립사회복지시설등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원안가결  · 김영환, 유승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3. 6)	1. 회기및회의일정결정의견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견	· 98. 3. 6~3. 19  · 김선갑, 이동철
	제2차 본회의 (98. 3. 19)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 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원안가결
		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방단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18. 서울특별시광진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 20. 아차산홍련봉사적지정건의문	- 발의 : 조례정비특위 · 원안가결 · 위원장 : 한중석  · 발의 : 유승주
제24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8. 4. 9)	1. 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집행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2.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발의 : 김기섭의원 외 12인  · 보류 · 98. 4. 9~4. 14 · 노승균, 박래학
	제2회 본회의 (98. 4. 13)	1. 구정질문의 건 2. 부의장선출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한중석 · 부의장 : 허운희 · 박래학, 박유관, 김기섭 유승주, 신인용
제25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8. 5. 6)	1. 회기및회의일정결정의건 2.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출안설명 4. 98년도제1차~3차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8. 5. 6~5. 11 · 위원장:전영동  · 원안가결 · 이창비, 전영동
	제2회 본회의 (98. 5. 11)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6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98. 6. 18)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8. 6. 18~6. 24 · 김기섭, 한중석

구 분	일 자	부의안건	처리결과
제26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 (98. 6. 2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여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li> <li>3.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li> <li>4.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의 : 유승주의원외6인</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ul>



# 제3장

## 위원회 활동



■ 제1절 상임위원회  
■ 제2절 특별위원회



# 제3장 위원회활동

## 제1절 상임위원회

### 1. 의의

위원회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안전을 먼저 심사토록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2. 제1대 상임위원회

제1대 성동구의회는 1992년 5월 28일부터 1995년 2월 2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의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 분구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일수	심사안건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26	64	
총무위원회	17	48	
재무위원회	19	58	
시민생활위원회	19	53	
도시건설위원회	20	46	

### 분구이후

상임위원회	회의개최일수	심사안건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3	11	
총무·재무위원회	3	43	
시민·건설위원회	3	33	

### 가. 분구전(95. 2. 28까지) 위원회 현황

#### ▶ 제1대 전반기(92. 5. 28~94. 5. 24)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위 원	위원수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선	최복수	노승균, 김중배, 방효영, 장기만, 서승린, 이종학, 박영태	9
총무위원회	오효무	김성균	김춘기, 백남식, 김중배, 표종수, 김화목, 장기만, 이경운, 이종학, 전이곤	11
재무위원회	최태순	임동식	민병은, 박원식, 이수영, 이재선, 이명재, 권승현, 이건설	9
시민생활위원회	조용훈	정기운	이복우, 방효영, 김태식, 이복구, 강인식, 김세호, 이일상, 서승린, 허운희, 문홍열	12
도시건설위원회	이금장	김종환	임남규, 김동천, 노승균, 김종산, 최복수, 신인용, 정광일, 이석봉, 최순철, 김세환, 이영한, 김재인, 김영용, 박용태	16

## ▶ 제1대 후반기(94. 5. 25~95. 2. 28)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위 원	위원수
의회운영위원회	장기만	최복수	문홍열, 방효영, 오효무, 이금장, 이재선 최태순	8
총무위원회	표종수	김세환	김중배, 김춘기, 문홍열, 박원식, 백암식, 이명재, 이재선, 이종학, 정광일	11
재무위원회	이건상	김성균	김재인, 김영용, 김종산, 김태식, 장기만, 최복수	8
시민생활위원회	허운회	이석봉	김동천, 김세호, 박영태, 신인용, 정기운, 오효무, 이수영, 이성전, 이일상	11
도시건설위원회	김화목	임동식	강인식, 권승현, 김종환, 민병은, 방효영, 서승린, 이경운, 이금장, 이복구, 이복우, 임남규, 전이곤, 최순칠, 최태순	16

## 나. 분구이후 위원회 현황

## ▶ 제1대 (95. 3. 1~95. 6. 30)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위 원	위원수
의회운영위원회	최복수	신인용	신인용, 오효무, 이석봉, 박영태, 최태순, 허운회	7
총무·재무위원회	백남식	김성균	박원식, 김세환, 이재선, 문홍열, 이종학, 최태순, 강인식, 김세호	9
시민건설위원회	권승현	정기운	김춘기, 오효무, 임동식, 이석봉, 신인용, 권승현, 박영태, 최순칠, 최복수, 김영용, 김태식, 노승균, 허운회, 김종환	14

## 다. 위원회별 안전처리 내용 (분구전-95. 2. 28까지)

### ▣ 의회운영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1회 임사회	92. 6. 9	제1차	1. 간사선임	· 간사:최복수
	92. 6. 15	제2차	1.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사일정협의건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제13회 임사회	92. 7. 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및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에출석하여답 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제14회 임사회	92. 7. 22	제1차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92. 8. 14	제2차	1. 의사일정협의건	· 원안가결
제15회 임사회	92. 8. 2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2. 9. 17	제2차	2. 의사일정협의건의건	· 원안가결
	92. 9. 23	제3차	1. 의회시설추진에 관한질문의건	· 의견청취
제16회 임사회	92. 10. 22	제1차	1. 의사일정협의건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원의일비와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7회 임사회	92. 11. 9	제1차	1. 의정활동계획토론의건	· 원안채택
	92. 11. 19	제2차	1. 위원회회의실설치에 관한구청장답변 청취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2. 의사일정협의의견 3. 성동구의회회장규정중개정규정안 4. 특별위원회구성건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8회 정기회	92. 12. 3	제1차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92. 12. 14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	· 계류
	93. 1. 15	제3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19회 임사회	93. 3. 17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20회 임사회	93. 3. 31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21회 임사회	93. 5. 6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23회 임사회	93. 6. 10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24회 임사회	93. 7. 5	제1차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93. 8. 6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수정안가결
제25회 임사회	93. 9. 2	제1차	1.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견	· 운영위원장추천
제26회 임사회	93. 9. 3	제1차	1.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추천의견(재론)	· 계류
	93. 10. 20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27회 정기회	93. 11. 17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수정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2. 2	제1차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폐회중)	94. 1. 18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2. 1994년도기본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4. 1. 25	제3차	1. 서울특별시행사의전지침시정건의안	· 원안가결
제29회 임사회	94. 2. 23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30회 임사회	94. 3. 23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수정안가결
제31회 임사회	94. 5. 14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32회 임사회	94. 6. 3	제1차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최복수
	94. 6. 10	제2차	1. 의회운영공로자공로패수여안 2. 중국심양시소가둔구자치단체교류방문의견	· 원안채택 · 원안가결
	94. 6. 22	제3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2. 의원수련회개최의견 3. 집행부의구의원응대자세시정요구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제33회 임사회	94. 7. 4	제1차	1.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94. 7. 15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의회비교시찰의견	· 원안가결 · 원안채택
	94. 8. 11	제3차	1. 1994년도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	· 원안채택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해외연수안	
	94. 8. 11	제4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34회 임사회	94. 8. 1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94. 9. 24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2.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 계류 · 원안가결
	94. 9. 30	제3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계류
제35회 임사회	94. 10. 6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94. 10. 21	제2차	1. 1994년도의회정활동보고회개최의견	· 원안가결
	94. 11. 4	제3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36회 임사회	94. 11. 22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94. 12. 9	제1차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	· 원안가결
			2.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폐회중)	95. 1. 21	제2차	휴회	
제38회	95. 2. 14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 총무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1회 임사회	92. 6. 9	제1차	1. 간사선임	· 간사:김성균
	92. 6. 16	제2차	1. 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성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6회 임사회	92. 9. 28	제1차	휴회	
	92. 9. 29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에 관한건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7회 임사회	92. 10. 28	제1차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92. 11. 10	제2차	2. 92년도구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보 고청취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92. 11. 16	제3차	1. 92년도구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보 고청취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채택
제18회 정기회	92. 11. 30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 급조례개정조례안 2. 199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과1991회계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2. 12. 1	제2차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8회 정기회 (폐회중)	92. 1. 15	제3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9회 임사회	93. 3. 12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2.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경계에 관한의 견청취의안	· 원안가결
제21회 임사회	93. 5. 1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4회 임사회	93. 7. 6	제1차	1. 1993년도제1차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 원안가결
제25회 임사회	93. 8. 13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2. 2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상징물제정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 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3. 12. 3	제2차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제29회 임사회	94. 1. 25	제1차	1. 지방자치법및이에관련된법률중개정 건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안	· 원안가결 · 계류
	94. 2. 25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상징물중구기도형 폐기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안(계속)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0회 임사회	94. 3. 25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비용변 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31회 임사회	94. 3. 30	제1차	1. 구민생활체육시설실태점검안	· 원안채택
	94. 4. 8	제2차	1. 구민생활체육시설실태점검안(계속)	· 원안채택
	94. 4. 21	제3차	1. 구민생활체육시설실태점검결과보고 채택의견	· 원안가결
	94. 5. 23	제4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2회 임사회	94. 6. 3	제1차	1. 간사선임의견	· 간사:김세환
제33회 임사회	94. 7. 5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4회 임사회	94. 8. 19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민의날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대문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대상조 정지역의견수렴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5회 임사회	94. 10. 7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체육도장과인접한 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94. 11. 3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분구에따른의견청 취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7회 정사회	94. 12. 12	제1차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4. 12. 21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동명칭및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1. 23	제3차	1. 분구에따른법정동설치를위한의견청 취안	· 원안가결

### ▣ 재무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11회	92. 6. 10	제1차	1. 간사선임	· 간사:임동식
정기회	92. 6. 17	제2차	1.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안	· 계류
	92. 6. 18	제3차	1.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안	· 계류
	92. 6. 19	제4차	1. 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 계획안	· 부결
제15회 임시회	92. 8. 2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6회 임시회	92. 9. 2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사회교육시설에대 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부결
	92. 9. 30	제2차	1. 92세수현황및전망에관한보고청취의 건	· 원안채택
	92. 10. 22	제3차	1. 92세수현황및전망에관한보고청취및 질문의건	· 원안채택
제17회 임시회	92. 10. 2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 회조례안 2.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계획안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8회 정기회	92. 12. 3	제1차	1. 1993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 의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92. 12. 4	제2차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2.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제23회 임사회	93. 6. 5	제1차	1. 93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4회 임사회	93. 7. 7	제1차	1. 93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계획 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3. 93제1회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5회 임사회	93. 8. 16	제1차	1. 93년도2차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제27회 임사회	93. 11. 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3. 93년도3차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 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2. 1	제1차	1. 1992년도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4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 의안 4. 성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 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 계류 · 계류 · 계류 · 계류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93. 12. 3	제2차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성동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성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9회 임사회	94. 1. 31	제1차	1. 세수확충연구활동의건	· 원안채택
	94. 2. 16	제2차	1. 세수확충연구활동의건	· 원안채택
	94. 2. 17	제3차	1. 세수확충연구활동의건	· 원안채택
	94. 2. 28	제4차	1. 세수확충연구활동보고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0회 임사회	94. 3. 24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사등에대항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31회 임사회 (폐회중)	94. 5. 23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부결
제32회 임사회	94. 6. 9	제1차	1. 간사선임의건	· 간사:김성균
제34회 임사회	94. 8. 19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 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94. 12. 9	제1차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 3. 1995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 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4. 12. 13	제2차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94. 12. 21	제3차	1. 지방세법중개정건의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세감면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8회 임시회	95. 2. 15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시민생활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1회 임사회	92. 6. 10	제1차	1. 간사선임	· 간사:정기운
	92. 6. 19	제2차	1. 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안 2. 성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4회 임사회	92. 7. 20	제1차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계류
	92. 7. 21	제2차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6회 임사회	92. 9. 29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분만개조비지급조 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7회 임사회	92. 10. 27	제1차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2. 11. 3	제2차	1. 시민국소관92년도행정사무처리에관 한보고의건	· 원안채택
	92. 11. 12	제3차	1. 92년도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 한보고청취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원안채택
	92. 11. 16	제4차	1. 9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보고 청취의건	· 원안채택
제18회 정기회	92. 12. 5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유소허가에따른청원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 계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92. 12. 7	제2차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93. 1. 12	제3차	1.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2. 주유소허가에따른청원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계류 · 원안가결
	93. 1. 19	제4차	휴회	
제19회 임사회	93. 1. 28	제1차	1. 주유소허가에따른청원의건	· 계류
	93. 3. 9	제2차	1. 주유소허가에따른청원의건	· 부결
제21회 임사회	93. 5. 1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24회 임사회	93. 7. 8	제1차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7회 임사회	93. 11. 2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가스업자및가스사 용자에대한과태료천분기준에관한조 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2. 6	제1차	1. 국립서울병원이전건의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3. 12. 7	제2차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원안가결
제29회 임사회	94. 2. 22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 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 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0회 임사회	94. 3. 17	제1차	1. 쓰레기분뇨수거및폐수처리실태점검 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94. 3. 23	제2차	1. 쓰레기분뇨수거및폐수처리실태현황 보고청취의견 2.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1회 임사회	94. 4. 6	제1차	1. 쓰레기분뇨수거및우성농역폐수처리 실태점검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견	· 원안가결
제32회 임사회	94. 6. 10	제1차	1. 간사선임의견	· 간사:이석봉
제33회 임사회	94. 7. 7	제1차	1.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34회 임사회	94. 8. 22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가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5회 임사회	94. 11. 5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 례안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94. 12. 9	제1차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견 2.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계류
	94. 12. 13	제2차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가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5.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9회 임시회	95. 2. 2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 도시건설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1회 임시회	92. 6. 11	제1차	1. 간사선임	· 간사 : 김종환
	92. 6. 18	제2차	1. 구의공원지하주차장건설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제14회 임시회	92. 7. 22	제1차	1. 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2. 7. 23	제2차	1. 9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원안가결
	92. 8. 18	제3차	1. 수해지역수방대책및피해주민복구지원의견 2.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3. 군자소규모공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7회 임시회	92. 10. 28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2. 11. 12	제2차	1. 92년도구행정사무처리사항에대한보고청취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	· 원안가결
	92. 11. 17	제3차	1. 92년도행정사무처리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견	· 원안채택
제18회 정기회	92. 11. 30	제1차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도시정비국의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9회 임시회	93. 3. 23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21회 임시회	93. 5. 26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안	· 계류
	93. 5. 27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안 2. 93년성동구수방대책보고청취의견	· 수정안가결 · 원안채택
제22회 임시회	93. 6. 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안	· 원안가결
제23회 임시회	93. 6. 4	제1차	1. 93년도수방대책보고청취의견	· 의견청취
제24회 임시회	93. 7. 6	제1차	1. 19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5회 임시회	93. 8. 16	제1차	1. 옥수제1동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 원안가결
제27회 임시회	93. 10. 29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일부 항개정에관한청원의견(계속)	· 계류
	93. 11. 1	제2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일부조 항개정에관한청원의견 2.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 례안	· 부결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2. 4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개정조례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3. 12. 6	제2차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93. 12. 13	제3차	1. 워커히개발관련도시계획변경에관한 건의안	· 원안가결
	93. 12. 20	제4차	1. 성수권역(삼표골재)개발관련도시계획 변경안에대한건의안	· 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30회 임시회	94. 3. 21	제1차	1. 도시교통및수방대책연구활동의건	· 원안채택
	94. 3. 29	제2차	1. 교통소통및수방대책현황보고청취의 건	· 원안채택
제31회 임시회	94. 4. 9	제1차	1. 교통소통및수방대책연구활동결과보 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제32회 임시회	94. 6. 1	제1차	1. 간사선임의건	· 간사:임동식
제33회 임시회	94. 7. 6	제1차	1. 19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34회 임시회	94. 8. 19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94. 12. 9	제1차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 1994년도성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 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4. 12. 12	제2차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	· 수정안가결
제38회 임시회	95. 2. 16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9회 임시회	95. 2. 21	제1차	1. 서울특별시성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 례안	· 원안가결

## 라. 위원회별 안전처리 내용 (분구후-96. 6. 30까지)

## ■ 의회운영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회 임시회	95. 3. 2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위원장:최복수 · 간 사:신인용
	95. 3. 3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서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에출석하여답 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회 임시회 (폐회중)	95. 4. 26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2회 임시회 (폐회중)	95. 5. 18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3회 임시회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35. 서울특별시광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 원안가결
제2회 임사회	95. 5. 2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5. 3~5. 9	제1차	1. 광진구동네체육시설점검계획의건  - 체육시설전반에 대한 관리상태 - 체육시설 유지보수상태 점검	· 보고 : 박원식 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5. 5. 2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5. 19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관광사업에관한과 징금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민원조정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 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세입징수포상금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14. 서울특별시광진구쓰레기줄이기와자 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16.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5. 3. 6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무허가건물정비사 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 업시행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 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교통안전대책위원 회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 치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수방단운영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회	95. 5. 3~5. 9		1. 광진구수방대책및수방시설관리실태 점검 - 제1조 : 중곡지역 - 제2조 : 구의, 노유, 군자	· 보고자:임동식
	95. 5. 4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5. 18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제2대 상임위원회

#### 가. 활동개요

제2대 광진구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위원회별 활동내역을 요약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51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는 총 19회에 걸쳐 91건의 안건을 시민건설위원회는 총17회에 걸쳐 8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나. 위원회 구성

##### ▶ 제2대 전반기(95. 7. 1~96. 12. 31)

위원회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위원수
의회운영위원회	허운회	최금순	김선갑, 설성환, 오효무, 이창비, 이효영	7
총무·재무위원회	김영용	유승주	김영환, 박래학, 신인용, 오효무, 이금장 이동철, 이상철, 한중석, 허운회	11
시민·건설위원회	이석봉	고명곤	전영동, 김광일, 김기섭, 김선갑, 김종환, 김태식, 노승균, 박유관, 설성환, 이창비 이효영, 최근식, 최금순, 최민식	16

## ▶ 제2대 후반기(97. 1. 1~98. 6. 30)

위원회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위원수
의회운영위원회	이창비	이동철 (97. 3. 15~97. 6. 8) 고명곤 (97. 6. 9~98. 4. 28) 유승주 (98. 4. 29~98. 6. 30)	이효영, 이석봉, 허운희, 고명곤, 김선갑	7
총무·재무위원회	김종환	김선갑 (97. 1. 15~98. 5. 6) 전영동 (98. 5. 7~98. 6. 30)	설성환, 이상철, 이석봉, 이금장, 전영동, 김기섭, 허운희, 김영용, 한중석,	11
시민·건설위원회	최금손	김영환	김광일, 추윤구, 최근식, 고명곤, 박유관, 박래학, 이형태, 이효영, 신인용, 이동철, 노승균, 유승주, 김태식, 이창비	16

## 다. 안전처리 내용

### ▣ 의회운영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4회 임시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허운희 · 간 사:최금손 · 원안가결
제5회 임시회	95. 9. 13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일비와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6회 임시회	95. 9. 20	제1차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6회 임시회 (폐회중)	95. 11. 4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95년도정기회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8회 정기회	95. 12. 8	제1차	1. 96년도의회사무국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95. 12. 23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9회 임시회	96. 3. 8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 동비및회의수당과여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6. 4. 13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10회 임시회	96. 6. 12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11회 임시회	96. 6. 20	제1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96. 8. 20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2회 임시회	96. 10. 24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13회 임시회	96. 11. 4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윤리실천 준칙제정안  3. 북한의무력도발과보복협박에대한규 탄결의안  4.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 발의 : 김선갑 의원 외15인 · 원안가결  · 발의 : 유승주 의원 외10인 · 원안가결  · 발의 : 이효영의원 외 25인 · 원안가결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96. 11. 19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14회 정기회	96. 12. 9	제1차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15회 임시회	97. 1. 25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위원장:이창비
	97. 1. 29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제출: 고명근의원 외9인 · 부결
제16회 임시회	97. 3. 7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7회 임사회	97. 3. 1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연장의건	· 원안가결 · 간사:이동철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3. 25	제2차	1. 97의정활동계획의건	· 원안가결
제17회 임사회 (폐회중)	97. 5. 2	제1차	1. 의정활동토의자료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8회 임사회 (폐회중)	97. 6. 9	제1차	1. 간사사임동의의건 2. 간사선임의건	· 원안가결 · 간사:고명곤
	97. 7. 4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19회 임사회 (폐회중)	97. 9. 19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20회 임사회	97. 9. 27	제1차	1.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산승인의건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제20회 임사회 (폐회중)	97. 10. 27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제21회 임사회	97. 11. 4	제1차	1. 중국방산구방문의건	· 원안가결
제22회 정기회 (폐회중)	97. 12. 6	제1차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98. 2. 27	제1차	1. 의사일정협의의건	· 수정안가결
제23회 임사회	98. 3. 9	제1차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98. 4. 3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2. 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집행에관한공 무원출석요구의견	· 수정안가결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98. 4. 29	제1차	1. 간사선출의견 2. 의사일정협의의견	· 간사 : 유승주의원 · 수정안가결
제25회 임시회	98. 5. 6	제1차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98. 6. 12	제2차	1. 의사일정협의의견	· 원안가결
제26회 임시회	98. 6. 19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발의: 유승주의원 외6인 · 원안가결

▣ 총무·재무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4회 임시회			1. 위원장선출의견 2. 간사선출의견	· 위원장:김영용 · 간 사:유승주
제5회 임시회				
제6회 임시회	95. 9. 2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 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 5. 총무국.재무국소관 95년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5. 9. 22	제2차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질의답변
	95. 9. 23	제3차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 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안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제7회 임시회	95. 11. 1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민의날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대상조례중개 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5.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8회 정기회	95. 12. 8	제1차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9	제2차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1	제3차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2	제4차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95. 12. 21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12. 22	제6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12. 29	제7차	1. 새마을기의영속적인계양다짐결의안	· 제안설명: 박유관 · 원안가결
제9회 임시회	96. 3. 11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0회 임시회	96. 4. 19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6. 4. 22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1회 임사회	96. 6. 19	제1차	1. 법정동조정및불합리한동경계조정승인신청안 2.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6. 6. 24	제2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2회 임사회	96. 9. 2	제1차	1. 9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96. 9. 3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96. 9. 4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신청사뚝섬유치축구결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13회 임시회	96. 11. 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6. 11. 6	제2차	1.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6. 11. 7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동명칭및구획정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4회 정기회	96. 12. 10	제1차	1. 총무재무위원회소관97회계년도기금 운용계획안 2.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96. 12. 11	제2차	1.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변안동의안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안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변안동의: 이상철의원 한중석의원재청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6. 12. 12	제3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답변
	96. 12. 13	제4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96. 12. 23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토지평가위원 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5회 임시회	97. 1. 15	제1차	1. 간사선출의건	· 간 사: 김선갑의원
제17회 임시회	97. 3. 14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97. 3. 17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조정요구에 관한청원 - 이기희 외71인(허운회의원 소개)	· 본회의 부의
	97. 3. 19	제3차	1. 97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기획실)	· 보고청취
	97. 3. 20	제4차	1. 97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총무국 · 재무국)	· 보고청취
제18회 임사회	97. 5. 10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동명칭및구역획정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7. 5. 12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 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부결
제19회 임사회	97. 7. 1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2.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7. 16	제2차	1.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제20회 임사회	97. 10. 1	제1차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원안가결
	97. 10. 2	제2차	1.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97. 10. 4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 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7. 10. 6	제4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청위치에 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2.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2회 정기회	97. 12. 3	제1차	1. 98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12. 4	제2차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7. 12. 5	제3차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97. 12. 23	제4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12. 24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3회 임시회	98. 3. 11	제1차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98. 3. 12	제2차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총무국·재무국)	· 원안가결
	98. 3. 13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25회 임시회	98. 5. 7	제1차	1. 간사선출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간 사: 전영동의원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3.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제26회 임사회	98. 6. 22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진흥에관한조 례안	· 발의: 한중석의원 · 보류
	98. 6. 23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여비지 급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시민·건설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4회 임시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이석봉의원 · 전영동의원
제5회 임시회				
제6회 임시회	95. 9. 21	제1차	1.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에대 한결의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3.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유승주의원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5. 9. 22	제2차	1.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 질의답변
	95. 9. 23	제3차	1.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8회 정기회	95. 12. 8	제1차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9	제2차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1	제3차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2	제4차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95. 12. 21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일반폐기물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12. 22	제6차	3. 서울특별시광진구독서실시설이용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5. 12. 26	제7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제9회 임사회	96. 3. 12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발의 : 유승주의원 외9인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1회 임사회	96. 6. 18	제1차	1. 한강오염배출에대한실태조사안 2.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	· 발의 : 김기섭의원 외7인 · 원안가결
	96. 6. 21	제2차	1. 한강오수배출에관한실태조사활동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 한강오수배출실태조사소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제12회 임사회	96. 9. 2	제1차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3회 임사회	96. 11. 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 부결
	96. 11. 6	제2차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부결
	96. 11. 7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4회 정기회	96. 12. 10	제1차	1. 97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가결
	96. 2. 11	제2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답변
	96. 12. 12	제3차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 질의답변
	96. 12. 13	제4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96. 12. 23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15회 임사회	97. 1. 16	제1차	1. 간사선출의건	· 간사: 김영환의원
제17회 임사회	97. 3. 15	제1차	1.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승인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97. 3. 17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본부의구 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방단운영조례개 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3. 18	제3차	1. 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시민국·보 건소)	· 보고청취
	97. 3. 19	제4차	1. 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도시정비국 · 건설교통국)	· 보고청취
제18회 임사회	97. 5. 10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2. 군자동374-4호외2필지토지건물취득 승인안	· 부결  · 원안가결
	97. 5. 12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설치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19회 임사회	97. 7. 15	제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무허가건물정비사 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7. 7. 16	제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20회 임사회	97. 10. 1	제1차	1. 96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7. 10. 2	제2차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97. 10. 4	제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10. 6	제4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2회 정기회	97. 12. 3	제1차	1. 98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질의·답변
	97. 12. 4	제2차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답변
	97. 12. 5	제3차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97. 12. 23	제4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7. 12. 24	제5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3회 임시회	98. 3. 11	제1차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시민국·도시정비국)	
	98. 3. 12	제2차	1. 9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보건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98. 3. 13	제3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li> <li>3.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li> <li>4.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li>· 원안가결</li> </ul>
제25회 임사회	98. 5. 7	제1차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6회 임사회	98. 6. 22	제1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li> <li>3. 서울특별시광진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부결</li> <li>· 발의 : 한중석의원</li> <li>· 부결</li> <li>· 원안가결</li> </ul>
	98. 6. 23	제2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li> <li>2.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li> </ol>	

## 제2절 특별위원회

### 1. 제1대 특별위원회

#### 가. 의의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구성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므로 한시성을 띠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의원1인이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나. 제1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분구전

특별위원회	구 성 현 황		회의일수
	정기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7	1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3	4

##### 분구이후

특별위원회	구 성 현 황		회의일수
	정기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3

## 다. 제1대 특별위원장 및 간사 현황

### ▶ 제1대 분구전 (91. 4. 15~95. 2. 28)

특별위원회	회 기	위원장	간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회임시회	임 남 규 의원	김 영 용 의원
	제 7회정기회	표 중 수 의원	이 재 선 의원
	제14회임시회	김 태 식 의원	김 춘 기 의원
	제17회임시회	김 종 산 의원	신 인 용 의원
	제18회임시회	이 일 상 의원	방 효 영 의원
	제24회임시회	허 운 회 의원	문 홍 열 의원
	제28회정기회	강 인 식 의원	전 인 곤 의원
	제33회임시회	정 기 운 의원	신 인 용 의원
	제37회정기회	방 효 영 의원	김 춘 기 의원
	제41회임시회	김 재 인 의원	방 효 영 의원
	제43회임시회	이 일 상 의원	방 효 영 의원
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 6회임시회	오 효 무 의원	김 춘 기 의원
	제 7회정기회	민 병 은 의원	김 동 천 의원
수문관리및수방대책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회임시회	노 승 균 의원	전 이 곤 의원
성동구상징물제정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9회임시회	김 화 목 의원	이 석 봉 의원

### ▶ 제1대 분구이후 (95. 3. 1~95. 6. 30)

특별위원회	회 기	위원장	간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임시회	임 남 규 의원	김 영 용 의원

## 라. 구성 및 안건처리 내용

▶ 제1대 분구전 (91. 4. 15~95. 2. 28)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제3회 임시회	91. 7. 22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3. 9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임남규 의원 · 김영용 의원 · 질의 · 답변
	91. 7. 23	제2차	1. 9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1. 7. 24	제3차	1. 9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7회 정기회	91. 12. 4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 표종수 의원 · 이재선 의원
	91. 12. 9	제2차	1. 90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심사	· 질의 · 답변
	91. 12. 10	제3차	1. 90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안 심사	· 원안가결
	91. 12. 17	제4차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91. 12. 20	제5차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91. 12. 23	제6차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91. 12. 24	제7차	1.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사결과
제14회 임시회	92. 7. 24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3.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김태식의원 · 김춘기의원 · 질의 · 답변
	92. 7. 25	제2차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7회 임시회	92. 10. 29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3.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산의원 · 신인용의원 · 원안가결
제18회 정기회	92. 11. 26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 이일상의원 · 방효영의원
	92. 12. 11	제2차	1. 91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92. 12. 12	제3차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92. 12. 17	제4차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24회 임시회	93. 7. 5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 허운회의원 · 문홍열의원
	93. 7. 12	제2차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8회 정기회	93. 11. 26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 강인식의원 · 전이근의원
	93. 12. 15	제2차	1. 9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질의 · 답변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심 사 안 건	심 사 결 과
			2. 9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93. 12. 16	제3차	1. 9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 원안가결 · 질의 · 답변
제33회 임시회	94. 7. 1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임	· 정기운의원 · 신인용의원
	94. 7. 11	제2차	1.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37회 정기회	94. 11. 25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견 2. 간사선임의견	· 방효영의원 · 김기춘의원
	94. 12. 16	제2차	1. 9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질의 · 답변
	94. 12. 19	제3차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수정안가결

###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회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및 조사결과	위원장 및 간사
구유재산관리관리 계획심사특별위원회	91. 11. 26~11. 29 (제6회임사회)	1. 92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 계획안심사 ▶ 실사결과 : 원안가결	- 위원장 : 오효무의원 - 간 사 : 김춘기의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91. 12. 27~12. 30 (제7회정기회)	1. 92년도성동구구유재산관리 계획안심사 ▶ 실사결과 : 수정가결	- 위원장 : 민병은의원 - 간 사 : 김동천의원
수문관리및수방대책 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2. 6. 24~6. 30 (제12회임사회 폐회중)	1. 성동구의 92년도수방대책 및수문관리상태점검	- 위원장 : 노승균의원 - 간 사 : 전인근의원
성동구상징물제정에 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4. 1. 25~2. 16 (제29회임사회)	1. 성동구상징물제정경위및 성동구기도안의등록상표 모방여부조사 2. 조사결과:성동구기도안제 작자의모방사실확인,특위 출석사과및사과문신문에 게재	- 위원장 : 김화목의원 - 간 사 : 이석봉의원

▶ 제1대 분구이후 (95. 3. 1~95. 6. 30)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1회 임사회	95. 3. 1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 이석봉의원
	95. 3. 3	제2차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 답변

## 2. 제2대 특별위원회

### 가. 제2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회의일수
	정기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7	9
자연녹지지정특별위원회	1	7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	6	8
한강오수배출에대한실태 조사소위원회	-	1	2
새마을부녀회보조금집행에 관한조사특별위원회	-	1	6

### 나. 제2대 특별위원장 및 간사 현황

특별위원회	회기	위원장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회임시회	김태식 의원	설성환 의원
	제 7회임시회	이동철 의원	유승주 의원
	제11회정기회	최근식 의원	김영환 의원
	제12회임시회	김기섭 의원	전영동 의원
	제13회임시회	김영환 의원	박래학 의원

특별위원회	회기	위원장	간사
	제14회정기회	박 유 관 의원	최 금 손 의원
	제20회임시회	이 형 태 의원	박 래 학 의원
	제25회임시회	유 승 주 의원	신 인 용 의원
자연녹지지정특별위원회	제 6회임시회	이 상 철 의원	유 승 주 의원
	제 7회정기회	민 병 은 의원	김 동 천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9회임시회	한 중 석 의원	고 명 곤 의원

####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처리 내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개최일자	차수	안건명	심사결과
제6회 임시회	95. 9. 20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 김태식의원 · 설성환의원
	95. 9. 25	제2차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총무국장
	95. 9. 26	제3차	1.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7회 임시회	95. 11. 13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 이동철의원 · 유승주의원
제8회 정기회	95. 12. 4	제2차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 총무국장
	95. 12. 15	제3차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6	제4차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답변
	95. 12. 18	제5차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답변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 사 결 과
	95. 12. 9	제6차	5.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 · 답변
	95. 12. 20	제7차	6.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1회 임시회	96. 6. 17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 최근식의원 · 김영환의원
	96. 6. 24	제2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6. 25	제3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6. 26	제4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6. 27	제5차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2회 임시회	96. 8. 30	제1차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 김기섭의원 · 전영동의원
	96. 9. 5	제2차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9. 6	제3차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9. 7	제4차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13회 임시회	96. 11. 2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김영환의원 · 박래학의원
	96. 11. 8	제2차	1.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질의 · 답변
	96. 11. 9	제3차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14회 정기회	96. 11. 25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박유관의원 · 최금손의원
	96. 12. 14	제2차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 예산안 2. 97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 원안가결
	96. 12. 16	제3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12. 17	제4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12. 18	제5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12. 19	제6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6. 12. 20	제7차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제20회 임시회	97. 9. 26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이형태의원 · 박래학의원
	97. 10. 7	제2차	1. 9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2. 96회계년도일반 · 특별회계세입 세출승인의건 3. 97년도제1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제안설명 : 기획실장
	97. 10. 8	제3차	1. 97년도제1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질의 · 답변
	97. 10. 9	제4차	1. 97년도제1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제25회 임시회	98. 5. 6	제1차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 유승주의원 · 신인용의원
	98. 5. 8	제2차	1. 98년도제1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 자연녹지지정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1995년 9월 28일부터 해당지역 용도지역 변경시까지
- 조사대상 : 광장동 381번지 주변 일대 (123,282㎡)
- 명칭변경 : 제2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광장동381번지일대 자연녹지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지보존 특별위원회 변경
- 특별위원회 활동 :
  - ① 관계공무원의 보고 및 현황설명 보고청취
  - ② 자료의 제출요구 확인
  - ③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장활동
  - ④ 조사결과서 관계기관에 자연녹지 지정 건의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 특별위원 : 10명(이상철, 유승주, 이효영, 최금손, 최근식, 김영환, 이동철, 김선갑, 고명근, 한중석)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6회 임시회	95. 9. 27	제1차	· 위원장선출 · 간사선출	· 이상철의원 · 유승주의원
	95. 10. 2	제2차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 을위한현황보고의건	· 질의 · 답변
	95. 10. 20	제3차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 을위한자료제출현황보고및현장 활동의건	· 질의 · 답변
제7회 임시회	95. 11. 14	제4차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 을위한자료제출현황보고의건 · 시청 및 시의회방문의건	· 질의 · 답변
제8회 정기회	95. 12. 23	제5차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 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서채택의건	· 질의 · 답변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9회 임시회	96. 3. 9	제6차	· 광장동381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결정추진사항및관련민원현황보고의건	· 질의 · 답변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96. 7. 26	제7차	· 광장동381번지자연녹지지정과관련하여강제손해배상신청소송진행에따른대책협의의건	· 질의 · 답변
제12회 임시회	96. 8. 30	제8차	· 광장동381번지자연녹지지정에따른현안문제협의의건	· 질의 · 답변
제22회 정기회	97. 12. 15	제10차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에대한경과보고의건 ·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명칭변경에대한동의안	· 질의 · 답변 · 원안가결
제23회 임시회	98. 3. 18	제11차	1. 광장동381번지일대소송진행현황 및향후대책에대한보고의건 2. 아차산홍련봉보루성사적지정건의안채택의건	· 질의 · 답변 · 원안가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1997년 9월 18일부터 98년 3월 17일까지
- 정비대상 : 광진구조례 93건, 의회규칙 18건
- 특별위원회 활동 :
  - ①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 또는 폐기
  - ② 조례정비의 실효성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 기본적인 교육 실시
  - ③ 실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안을 사전심사 등
  - ④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기초로 추진
- 특별위원 : 11명
  - ▶ 위원장 : 한중석 의원 ▶ 간사 : 고명곤 의원
  - ▶ 총무재무소위원회 : 이상철위원, 설성환위원, 전영동위원, 김선갑위원
  - ▶ 시민건설소위원회 : 이형태위원, 박유관위원, 김광일위원, 이효영위원, 신인용위원, 고명곤위원
- 조례정비대상 : 조례93건, 의회규칙 18건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19회 임시회	97. 7. 18	1차	1. 위원장선출의건	· 한중석의원
제19회 임시회 폐회중	97. 9. 19	2차	1. 간사선출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 고명곤의원
제20회 임시회	97. 10. 8	3차	1. 조례의견청취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안	·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97. 10. 9	4차	1. 조례의견청취의건	·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제21회 임시회	97. 11. 5	5차	1. 실무팀장선출의건 2. 홍보방법의건	· 자체호선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3. 자치법규집비교검토의건	
	97. 11. 6	6차	1. 자치법규집비교검토의건	· 총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97. 11. 7	7차	1. 자치법규집비교검토의건	· 재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97. 11. 8	8차	1. 자치법규집비교검토의건	· 질의 · 답변
제22회 정기회	97. 12. 20	9차	1. 자치법규검토결과보고의건	· 총무재무위원 회 검토
	97. 12. 22	10차	1. 자치법규검토결과보고의건	· 시민건설위원 회 검토
제22회 정기회 (폐회중)	98. 2. 12	11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진흥관 한조례안	· 발의 : 한중석의원
	98. 2. 13	12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원진흥에 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담배자동판매 기설치제한에 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중개정규칙안	· 발의 : 한중석의원 · 발의 : 한중석의원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98. 2. 26	13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규칙등공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해대책기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제23회 임시회	98. 3. 14	14차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23회 임시회			중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담배자동판매 기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진흥매 관한조례안	-발의: 한중석 · 질의 · 답변 -발의: 한중석 · 질의 · 답변
	98. 3. 17	16차	1.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진흥에 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담배자동판매 기설치제한에관한조례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견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 질의 · 답변

## ▣ 한강오수배출에대한실태조사소위원회

- 발의일자 : 1996년 6월 17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발 의 자 : 김기섭의원의외 7인
- 위 원 장 : 김종환 위원
- 소위원회 구성 : 1996년 6월 18일
- 활동기간 : 1996년 6월 19일 ~ 6월 20일
- 오수배출 현황 :

자양 오수중계펌프장에는 87년 8월 설치당시부터 예비 수배전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수배전반 수명이 10년~1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 때를 대비한 예비시설설치는 당시의 여건상 어려웠을 것이며,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있는 모든 펌프장에는 예비 수배전반 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습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96년 5월 22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생활오수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시간대를 택하여 지난 '87년 8월에 설치된 자양오수 펌프장 내부시설인 특고압 22,900V의 노후된 수배전반 교체작업을 위해 부득이 단전을 실시하여 펌프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자양노선 차집관거의 하수가 내부압력으로 비상안전시설을 통해 잠실수중보 하류의 한강에 방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대책

#### 1. 잠실수중보 및 비상안전시설 폐쇄

차집관거 용량초과 원인중 하나인 구의정수장 배출수를 차단키위해 시비 1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중인 구의정수장 배출수 전용관거 공사가 '96년 6월말 완료되면 이번 오수 배출의 원인이 된 비상안전시설을 폐쇄조치 하여야 합니다.

#### •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예비 수배전반설치

향후 고장수리 교체로 인한 단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오수중계펌프장

의 예비 수배전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담수시설 확장

현재 5천㎡를 담수할 수 있는 자양빗물펌프장의 유수지 바닥을 굴착 확장하여 담수능력을 현재 20분에서 최소한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술 용역을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 특별위원 : 8명

### ▣ 구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 발의일자 : 1996년 4월 9일(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의원 9명
- 조사기간 : '98. 3. 20~25(6일간)
- 조사범위 : 구·동 새마을부녀회 구보조금 집행사항  
(구청소관 부서, 구·동 새마을 부녀회)

회 기	개최일자	차 수	안 건 명	심사결과
제24회 임사회	98. 4. 9	제1차	1. 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집행에 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 발의 : 김기섭의원의 12인 · 보류

# 제4장

## 행정사무감사



- 제1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 제2절 행정사무감사 주요실적

gwangjin



## 제4장 행정사무감사

### 제1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 1. 감사목적

광진구청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시정케 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3. 감사방법 및 절차

##### 가. 감사방법

- (1) 감사의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2) 감사시기 :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
- (3) 감사장소 : 당해 감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 등)
- (4) 감사계획서 내용 :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
- (5) 감사계획서 확정
  - 감사의 목적
  - 감사일정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반 편성
  - 감사장소
  - 주요 감사내용
  -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할 서류
- (6) 감사방법 :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
- (7) 감사진행순서
  - 감사선언
  - 위원장 인사
  - 업무보고 청취
  - 정책질의 및 답변
  - 부서별 감사
  - 위원장 감사종료 인사(강평)
  - 감사종료 선언

## 4.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광진구의회는 제8회 정기회 기간중 7일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105건 등, 제14회 정기회 기간중 6일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151건 등, 제22회 정기회 기간중 7일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110건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였다.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

구 분	감사기간	감사일수	시정요구·건의·기타	수범사례 등 기타
제 8회 정기회	95. 12. 1~12. 7	7	112	6
제14회 정기회	96. 12. 2~12. 7	6	163	8
제22회 정기회	97. 11. 26~97. 12. 2	7	118	7

## 제2절 행정사무감사 주요실적

###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개요

- (1) 감사기간 : 1995. 12. 1 ~ 1995. 12. 7 (7일간)
- (2) 감사위원 : 신인용 위원장, 김선갑 간사 등 16명
- (3) 감사기관 : 광진구청, 보건소, 10개 동사무소
- (4) 감사실시 경과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95. 11. 13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95. 11. 14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95. 11. 16
  -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 95. 11. 25
  - 행정사무감사관계공무원 출석요구: 95. 11. 25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95. 12. 13
- (5)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로서 1995. 3.1 이후에 처리된 사무( '95. 3. 1 이전사무중 관련된 업무)

■ 감사반 편성

반 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총 괄 ( 16명)	특별위원장 간 사	신 인 용 김 선 갑	■ 전문위원 : 전 장 평 ■ 의안담당 : 유 영 철 ■ 직 원 : 백상기, 정창용 이장병, 권희순 이경희, 한미경
1반 (5명)	박 래 학	오 효 무 김 영 용 이 금 장	
2반 (4명)	김 기 섭	허 운 회 이 석 봉 최 민 식 고 명 곤	
3반 (5명)	김 광 일	전 영 동 김 태 식 최 금 손 한 중 석	

■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반 별	감사일정	대상기관(부서)	장 소
1반	95. 12. 1~95. 12. 5	총 무 국 3실(문화공보·감사·시민봉사실) 의회사무국	구청감사장 의회사무국
2반	95. 12. 1~95. 12. 5	재무국, 시민국	구청감사장
3반	95. 12. 1~95. 12. 5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구청감사실
1, 2, 3반	95. 12. 6~95. 12. 7	10개동사무소 (중곡4동, 구의1·2·3동, 광장, 자양1·2·3동, 화양, 군자)	해당동사무소

(※ 동사무소 기간중인 12월 6, 7일에도 구청감사를 할 수 있다.)

##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개요

- (1) 감사기간 : 1996. 12. 2~1996. 12. 7 (6일간)
- (2) 감사위원 : 이금장 위원장, 김광일 간사 등 27명
- (3) 감사기관 : 광진구청, 보건소, 8개 동사무소
- (4) 감사실시 경과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96. 11. 27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96. 11. 27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96. 12. 26
- (5)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로서 1995. 12.1 이후에 처리된 사무

■ 감사반 편성

반 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총 괄 ( 27명)	특별위원장 간 사	이 금 장, 김 광 일	■ 전문위원 : 박정하, 전인길 ■ 의사계장 : 조철호 ■ 의안담당 : 이창근 ■ 직 원 : 백상기, 정창용, 이장병, 박만우, 고영찬, 장상식, 한미경, 이경희, 권희순, 강석환
1반 (5명)	한 중 석	신 인 용, 오 호 무 유 승 주, 김 영 용	
2반 (6명)	이 형 태	설 성 환, 김 영 환 이 동 철, 이 상 칠 고 명 곤	
3반 (5명)	김 기 섭	이 석 봉, 최 근 식 이 창 비, 김 종 환	
4반 (5명)	전 영 동	박 유 관, 최 금 손 김 선 감, 노 승 균	
5반 (4명)	김 태 식	이 효 영, 박 래 학 허 윤 회	

■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반 별	감사일정	대상기관(부서)	장 소
1반	96. 12. 2 ~96. 12. 7	3실(문화공보·감사·민원봉사실) 총무국	구청감사장
2반	96. 12. 2 ~96. 12. 7	재무국, 도시정비국	구청감사장
3반	96. 12. 2 ~96. 12. 7	시민국, 보건소	구청감사실
4반	96. 12. 2 ~96. 12. 7	건설교통국	구청감사장
5반	96. 12. 2 ~96. 12. 7	8개동사무소, 의회사무국	해당동사무소, 의회사무국

※ 8개동사무소 : 중곡 1· 2· 3· 4동, 능동, 광장동, 노유 1· 2동

## 나. 주요질문사항 및 답변

### ○ 질의 : 오효무 의원

시정연설을 통한 1997년도 구정의 기본틀인 청사진은

- 첫째, 안전하고 편안한 인간중심의 광진을 만들겠다,
- 둘째,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건강한 광진을 만들겠다,
- 셋째,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개선으로 편리한 광진을 만들겠다,
- 넷째, 지역자원중심의 복지서비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광진을 만들겠다,
- 다섯째, 구정의 전분야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화시대의 자존능력을 향상시키고 역세권 중심의 지역상권을 개발하여 자족성이 강한 광진을 만들겠다,
- 여섯째, 지역문화의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여유를 찾는 문화광진을 만들겠다,
- 일곱째,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을 주는 실천행정으로 주민만족의 1등광진을 만들겠다는 7가지의 약속이었음

이러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구체화시켜 실천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점으로써, 1,300여 전공무원의 근무의욕 및 복무자세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첫째,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자세에서 진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주체적 친절봉사 자세로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현재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과거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부터 친절, 신속, 공정의 참된 봉사정신으로 채무장 되어야 함. 이에 대한 복무자세 전환에 대한 답변 요구

둘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로의 대전환의 필요성으로써, 그 원인으로 적은 범위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로 인해 생활여건과 적성에 따른 구간이동을 체념함으로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자체내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실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역부서 공무원들

은 승진 및 보직의 혜택 기회가 적어 자기 직무에 대한 불만등에도 그 원인이 있음.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수습행정에서 예방행정으로,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으로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로의 전환 대책 요구

셋째, 각종 행사를 통한 전시행정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새로운 정책과 시행 및 각종 행사 조사결과 총 11개분야 274개 단위사업으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하여 많지만 우리생활 주변환경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여론이 많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조세 부담만 늘었고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도 있음을 참작하여 각종 행사를 정산하고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을 탈피하여 실제 주민의 불편해소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요구

넷째,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전환이 보다 더 진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에 인식전환진전에 대한 답변 요구

## ○답변 : 구청장

### **공무원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료적인, 관편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행정행태와 관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한 반복적인 교육과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서 토론하고 극기 훈련등을 위한 MT교육, 그리고 해외연수 등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과 그 동안 주민이 직접 뽑는 친절공무원 제도,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도, 전화 친절히 받기 등의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과거에 관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함

###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와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하는 문제 보다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인사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와의 부단한 조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

각종 정책이나 제도 이런 문제가 매체로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50% 미만

의 서울시민과 지방에서는 광진구가 분구된 걸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진구에 대한 홍보와 광진구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부단히 광진구를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광진구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는 광진구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됨을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광진구가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나고 참신한 기사화 됨을 인식함.

### **의회와의 협의문제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통한 대화의 과정 또는 예산편성을 통한 의원님들의 승인과정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충분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질의 : 한중석 의원**

첫째,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비리에 대한 감사실의 명실상부한 기능과 역할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구

둘째, 토요일일근무제 실태분석 평가 결과 실제로 보완을 하고 개선할 필요성 검토 요구

셋째,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형성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저전거타기운동 전개용의와 기반조성의 필요성이 구체적인 방안.

넷째,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내용과 분석된 성과, 야기된 문제점 또는 향후의 대책 등 방안에 대한 답변요구

다섯째, 도시계획 등에 의한 도로편입 사유지 재산현황과 보상여부 및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개설도로 미보상액이 있는지 이에 대한 보상시기 및 미개설 도로편입 사유지 파악시기와 현행 도로의 보상대상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답변요구

여섯째, 공공건물의 회의실, 사무실 및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이용 제공 실태와 확대할 방안 및 견해

일곱째, 지방세 상습체납자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한 조치여부

여덟째, 공직자 비리 개연성의 근절대책

○답변 : 감사실에 대한 명실상부한 기능과 역할 제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감사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기존 직무에 대한 합법성을 중시하는 감사활동에서부터 행정에 대한 자율화, 다변화, 전문화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나 전문교육실시로 인해서 감사기법을 향상시키면서 규제, 간섭하는 것이 아닌 막힌업무를 찾아서 대안을 찾아주는 지원감사 역할을 하도록 수행하겠음

첫째,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부조리 척결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장 중심에 대한 감사환경으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및 감사역량을 집중하였고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의 위해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겠음

둘째,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노력과 자율적 업무체계 확립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민주적인 감사자세를 확립하고 권위의식과 선입견에 대한 무례한 감사행태를 지향, 수범사례에 대해 적극 발굴해서 그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한 적극 발굴해서 그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사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확대 실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업무수행성과를 중시하는 도와주는 감사로 생산적인 감사를 추구하고 예방감사방향으로 해 나가겠음

셋째, 감사 부작용을 치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실명제 정착으로 감사에 대한 책임성, 내실성을 확보하고 감사기능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실 전 직원에게 윤리성과 도덕성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확대 실시

넷째,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이 있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의 위주로 해서 그 책임을 문도록 하고 취약인물에 대해서는 암행감찰활동과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취약부서, 취약분야는 집중감사 실시토록 노력하겠음

### 토요일전일근무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기관별로, 부서별로 2개 조로 편성해서 근무조는 평일처럼 8시간 전일 근무하고 비 근무조는 자기개발 내지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써 95.7.8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시범실시 후 96.3.2부터 전부서로 확대 실시하고 이 제도는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 시간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민원서류발급은 물론 모든 행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에게는 단순히 휴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기개발과 힘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교통난 해소 등과 또 사회 경제적 경비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토요일전일 근무제에 대한 성과로는 맞벌이부부 기타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서류가 필요한 주민에게 평일과 같이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도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개발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호응도가 높음

현재 이 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어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국가기관 등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와 타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음

### 공공건물의 민간제공실태 및 이용확대에 대하여,

구청회의실과 강당은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조례시에 또는 각종 회의 등에 주로 사용하고 민간인이 이용할 시는 각 직능단체나 사회단체 대표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음

동사무소의 회의실은 토요서당, 주부교실, 어학 강의실, 꽃꽂이 교실 영어와 일본어 회화교실, 수학교실, 국악교실, 에어로빅 등 체육교실과 회화, 서예교실 등이 있고 탁구대와 같은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제공하고 있음

확대 방안으로는 회의실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청 광장 주차장을 개방해서 알뜰도서관 교환전이라든가 멋자랑 맛자랑 등 주민 또는 직능단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금년 5월에는 구청사 담장을 허물고 각종 농작물 및 화초를 심어 주민과 학생들에게 자연교육 실습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개방

구·동 청사는 물론 추진 중인 구민회관 및 도서관이 건립되면 구민에게 예식장도 대여하고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폭 넓은 서비스 공간이 되도록 확대 노력하겠음

### 공직자 비리개연성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재량이 많은 분야에 대하여 사전 예방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비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를 전환하고 법령·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고 있으며, 구민참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취약분야는 부분감사 및 일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음

비리개연성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세무분야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실태 집중감사 및 전 세목 고지서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감사실 세수관리제도 활동을 강화하여 세무 부조리 근절과 세수증대 방향으로, 건축 및 위생분야는 일상감사 실시로 인·허가 관련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행정을 위하여 모든 인·허가 관련 공문서에 담당자 실명제 확대 실시

아울러 주민이 구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자동응답 민원전화, 신문고, 민원해결방 운영 등으로 각종 민원 및 비리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민 101명으로 구성된 민원청취옴부즈맨을 운영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여론을 신고 또는 건의함으로써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참여행정 구현(총무국장)

### 상습채납자의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우리구의 총 채납액은 22만 2,387건에 217억 8,700만원임.

상습 채납자는 3년이상 채납 100만원 이상 채납자가 143명으로 22억 8,500만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고 두 번째로 사법기관의 고발로써 1회계년도 3회이상 채납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려고 고발예고서를 127건에 대하여 발송함. 다음은 은행예금조회 압류로써, 관내 30개 은행지점에 804건을 조회한 바 있고 다음 직장조회, 봉급압류, 또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채납정리 기동반을 운영 납부독려하고 있음(재무국장)

### 도시계획 등에 의한 도로편입 사유재산 현황과 보상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된 것과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개설도로로써 현황 도로는 토지가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는 현행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중 개설된 것은 이미 보상하였으나 일부 보상이

누락되었거나 과거에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보상 토지가 일부 있지만 자세한 현황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음.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는 사유지가 많은 도로폭과 연장만을 구청에서 조사·파악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유토지 면적과 소유주 등이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도로개설 절차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측량을 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 검토하겠음. 따라서 미개설분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어 있고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가 28개소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 제출하겠음(도로과장)

#### **자전거타기 운동전개와 이에 따른 기반조성이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구 관내 기설된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계획은 96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설치된 동이로의 장평교에서 군자교간 약 3km 구간에 자전거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였고 능동로의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 약 2.4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중이며,

강변역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사이 1.2km 구간에 구의권역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97년도에도 구의로, 광나루길 및 기타 관내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음

#### **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95년도에 건대역등 기존 지하철 2호선역 주변에 252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였고 96년도에는 총 8,500만원의 예산으로 신설된 지하철역 5호선과 7호선역 주변에 약 500대 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였음.(교통행정과장)

#### **○ 질의 : 신인용 의원**

##### **광진구민 게시판 활용에 대하여**

첫째, 항상 비어있는 상단에는 어떤 홍보물을 부착하였는지?

둘째, 광고물 부착자의 선별 및 계약조건?

셋째, 구민게시판의 설치목적, 관내 현황과 관리방법, 세입현황, 설치예산, 집행현황?

넷째, 김인이 안 찍힌 광고물 또한 상단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

○ 답변 : 구민게시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시민게시판으로 관리하다가 94년 8월 30일자 자치구로 관리 이관되어 현재는 구민 게시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광고업체 연세기획에서 자비로 설치하여 관리하며 그 비용은 비어있는 상단부분에 유료광고를 시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는 광고주가 없어 현재 빈칸으로 되어 있음. 당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 95년 4월 11일자 서울시 지시로 관내 42개소가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가 되어 있음

현재 일반 시민들이 구민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는 무료, 수수료 1건당 6,000원으로 92건에 2,458매의 이용 전체 수수료 수입이 53만 4,000원임. 금년에 이용한 것이 공식이용 현재 검인을 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신고건에 대해서 검인 도장을 날인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음(도시정비국장)

○ 질의 : 최금손 의원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 및 정책에 대하여,**

첫째, 주차면적이 서울시 통계와 우리 구의 통계가 다른 이유?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방안?

둘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건수와 구획 수,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효과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서울시에서 주택가내의 공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구 대상지는 어느 지역인지?

넷째, 구의, 자양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육성한다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이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섯째, 민간 대형음식점이나 교회, 예식장, 학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의 야간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 답변 : 1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30,427개소로써 불법용도변경된 주차장 건수가 198건 중 시정완료 109건, 미시정 3건, 시정지시 66건임.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43건 9,150만원 부과하고 시정대책은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조치로 계속해서 적극 독려하여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록 노력하겠음

구의, 자양지구를 행정상으로 도시계획 시행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상세계획 용역이 시행중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리게 되면 용적율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도시기반 시설을 토지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이면도로를 먼저 확충하고 공공주차장과 공원도 확보토록 하겠음(도시정비국장)

## 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이번 감사는 우리 손으로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을 직접 선출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저희 의원들이 지난해에 경험하였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등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감사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가 출범한 초창기보다는 다소 힘든 점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됨으로써 우리 광진구가 발전되고 또한 주민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 27명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광진환경선언문 채택, 타구보다 앞선 전산정보과의 신설, 민원해결방 개설, 민원도우미 신설, 장애인 전용벨 제도개설 등 민선자치시대의 면모에 걸맞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및 수준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 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날로 증대되어 가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점도 몇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구 소재의 주유소를 현지 확인하여 본 결과 소수의 주유소에서 우수분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 및 폐유를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사례와,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된 가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

례, 또한 날로 증가해 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보육 시설이 일부동에 편중되어 있는 점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를 전담할 지역보건담당의사의 신속한 증원요구와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하나인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조사 후 활용방안 문제, 그리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동별 생활체육교실 시범운영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광진구 소식지인 아차산 메아리 제작을 통하여 일반적인 구 추진사업 및 공지사항, 구의회 소식과 구의원 동정, 환경에 대한 고정난을 신설하여 구민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는 점과 구정에 대한 자료가 11월말 현재 총 602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매우높은 보도실적을 나타내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출과 구 소식지 제작을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이 주목됩니다.

구청장님이하 구청산하 전 직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성숙된 근무자세와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점과 좋은 결실을 맺은 점도 많아 앞으로 이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 우수사례

### 1.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보도에 능동적으로 대처(신인용 의원)

- 11월말 현재 총 541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총 602건 보도(1일 평균 219건) 111.27% 보도율로 보도실적의 거양

### 2. 광진구소식지(아차산메아리)를 통한 다양한 구정홍보에 적극 대처(신인용 의원)

- 구의회 소식란과 구의원 동정란을 통한 구의회 활동상 소개로 구민과의 가교 역할 환경란 신설로 환경에 대한 관심고취 소식지 자체 편집으로 월 100-150만원의 비용절감 및 정확한 전달을 위해 1,000부 우편 발송

3. 광진문화 축제시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1,500만원 절감(유승주 의원)
4. 예산, 기획, 정책개발 등 구의 핵심부서로서 직원들의 의욕이 넘치고 왕성하게 활동함(유승주 의원)
5.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은 구청직원의 적극적 참여로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광진 복지 카드 발행으로 구 복지기금 및 복지사업이 타구에 비해 월등함을 나타냄(유승주 의원)
  - 복지관계 업무의 창의력 개발을 높이 평가함.

### 라. 시정요구사항

신인용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생과의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 상황을 검토한 바 직원 5-6명이 새벽 3~4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단속실적도 우수한데 보상책으로 식대 1만원 교통비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그것도 '97년도 예산서는 교비 1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그 대책이 요망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책강구 건의</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게시판 운용 부적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현재 광고물은 검인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꼭 검인 도장을 날인하여 부착하기 바람)</li> </ul>	도 시 계 획 과

이효영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년도 동사무소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미흡</li> </ul> <p>- 노유1동                      - 노유2동</p>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정원 18명</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정원 22명</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전입 15명</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전입 14명</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전출 11명</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전출 12명</td> </tr> </table>	정원 18명	정원 22명	전입 15명	전입 14명	전출 11명	전출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 요망</li> </ul>	총 무 과
정원 18명	정원 22명							
전입 15명	전입 14명							
전출 11명	전출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곡동 복개천 내부의 철근, 시멘트 구조물 부식 방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개천 준공 및 안전진단, 준설 등 대책수립</li> <li>관내 모든 복개천의 안전진단 실시 필요</li> </ul>	하 수 과						

설성환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요민원 처리</li> <li>- 새마을 부녀회원이 1개동에 2명씩 나와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 활동시 편성된 예산을 각 동별로 구체적 서면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요구</li> </ul>	사 회 진 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별 보육시설 현황에 의하면 능동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선정 및 신축을 하루 속히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li> </ul>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1동에서는 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마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선정 및 신축을 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요구 건의</li> </ul>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폐 및 변태 이용업소를 주기적으로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즉시 고발 조치 건의</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에서 흘린 기름을 생활하수구에 무단 방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강구 및 행정조치 요구</li> </ul>	지 역 경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중곡동코뿔소·주노·중원(중곡동)·동보(자양1동) 세차장은 유수분리 시설은 되어있되 실제 사용하지 않으며 하수로에 무단 방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강구 및 행정조치 요구</li> </ul>	지 역 경 제 과 환 경 보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범세차장에 대한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환 경 보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된 가정쓰레기에 대한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청 소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용자금 대출자에 대한 계약서를 관인 계약서가 아닌 문방구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관인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토록 계몽)</li> </ul>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으로 인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구제해줄 방법 검토 - 구의동 231-68, 32-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단수 해제 요청)</li> </ul>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운수 마을버스 적절한 배차간격과 증차계획 필요</li> </ul>	<p>시정요구(배차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주민들이 불편, 민원이 날로 쇠도하고 있는 실정임-차량대수가 부족하면 증차 요함)</p>	교 통 지 도 과

오희무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해결방”의 장소(면적)확대 및 내방객 편익시설 확대조치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의 고충민원(개인)을 직접 듣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의 참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요망</li> <li>① '96.7.10 개설하여 처리실적 및 방문실적을 보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면적확대와 방문객 편익시설 확대대책을 강구할 것</li> <li>② 내방객이 비록 개인민원이지만 차(茶)정도는 대접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할 것</li> <li>③ 내무부 방송(KBS)등 현재 외부기관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앞으로 더욱 홍보 강하하여 광진구에 대한 자치구정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것</li> </ul>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원청취 음브즈맨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익민원과 여론을 건의 또는 시정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는 본 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망</li> <li>① 위원을 정예화하여 위원수를 확대할 것(구의원 추천 고려해 볼 것) 현재 101명→160명 확대요망(정예 위원 10명기준/각동)</li> <li>② 활동상황보고회 확대를 요망 현재2회(상,하반기)→4회(분기별)로 확대 조치할 것</li> <li>③ 현재 자원봉사 성격을 갖추되 다소의 예산(추경등)을 반영하여 업</li> </ul>	감 사 실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서, 전화카드, 위원회 다과접대, 모범우수활동 위원 보상등 위원들의 구정참여 의욕을 보다 더 높이도록 추진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공공무원 표창 건의</li> <li>- 소속 : 감사실</li> <li>- 직급 : 행정8급</li> <li>- 성명 : 최기환</li> <li>-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휴일 환경순찰</li> <li>• 시책사업 점검</li> <li>• 188신고사항 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실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현황을 감사한 결과 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공휴일에 기능부서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도로파손, 침하, 각종 공사장이 안전, 분진, 소음, 도로 과다점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장시간 및 예산이 수반되는 적출사항은 해당부서 정비 의뢰후 조치여부를 현장 확인하였으며 일반순찰시 소홀하기 쉬운 뒷골목은 도로순찰하여 주민생활 환경 불편해소에 기여한 바가 큰 공무원으로 상기자의 표창 건의</li> </ul>	<p>감 사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착오 최소화 대책 강구 요망</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실태를 감사한 결과 '96년도 19건발생중 광진구 관내(12건), 광진구 관외(타구):7건으로 특히 관외 발생율이 전체의 40%에 접한바 이는 광진구 인식을 크게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바 최소화 대책 강구를 요구하며 관외 발생 보상금은 관내(₩10,000/건)보다 배액(₩20,000/건)으로 고려해볼 것</li> <li>② 발생 주무과별, 원인별 분석하여 행정사무착오를 최소화시키도록 대책강구 요망</li> </ol>	<p>감 사 실</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참고]</p> <p>발생주무과-부과 1·2과, 세무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p> <p>총19건-부과2과9, 세무관리과3, 부과1과2, 교통행정3, 교통지도1</p>	
<p>•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후속 조치 대안 강구 건의</p>	<p>•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다기능 선진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기능통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주민관리 및 행정력 간소화에 획기적 기여사업으로 인정되므로 그 추진계획에 차질없도록 함과 동시 발급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 강구를 건의함.</p> <p>① 행정력 간소화에 따른 민원창구 근무인원이 약 100여명 감축효과가 예상되는 바 이 여유인력에 대한 향후대책 강구 건의</p> <p>② 위와 같은 원인에 따르는 여유면적에 대한 향후대책 강구 건의</p>	총 무 과
<p>• 공공건물 부실방지대책 강구요망</p> <p>※ 부실의 원인</p> <p>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추경예산에 의한 공사강행으로 충분한 설계 및 시공기간 부족</p> <p>② 시공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하고 그 결손원</p>	<p>• 공공건물 건축에 있어 시공의 제도적인 부실원인이 내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부실방지 대책수립시행이 시급함.</p> <p>※ 부실방지 대책</p> <p>① 설계 및 시공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확보</p> <p>② 팔하도급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p>	건 축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여 부실을 유발</p> <p>③ 소규모 공공건물 시공참여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설계의 시방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적당주의식 공사 시행</p>	<p>③ 공사감독과 감리업무 철저</p> <p>④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및 행정조치 강화</p> <p>⑤ 공사실명제(설계,시공,감리자) 및 명예 감독관 제도 시행</p>	
<p>• 지역보건 담당의사 1명 신속증원 조치 요구</p> <p>지역보건업무 감사결과 방문진료(주2회) 및 순회진료(주1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보건 담당의사가 없어 결핵실의사가 결핵실업무를 보면서 지역보건 업무에 대체시키고 있는 실정으로</p> <p>① 방문진료의 질을 높일 수 없고</p> <p>② 순회진료 대상인 노인정 22개중 4개소(군자,자양2동,자양3동,중곡4동)만 실시함은 지역형평상 맞지 않고 그것도 주1회 정도 실시하고 있음</p>	<p>• 타구에서는 지역보건 담당의사가 있어 방문진료의 질을 높임은 물론 순회진료 회수를 전 노인정을 대상으로 주3-5회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신속히 지역보건 담당의사 1명을 증원하여 관내 전 노인정(22개소)를 상대로 순회진료 회수를 타구 이상으로 실시토록 신속조치 요구함</p> <p>[참고]</p> <p>① 방문진료 : 의료보호대상(영세)한 자중 거동할 수 없는 환자 22명</p> <p>순회진료 : 노인정(노령자) 대상</p> <p>② 타구 각보건소별 의사 정원 현황 (별첨)</p>	보 건 소
<p>• 교통시설 재점검 필요</p>	<p>• 현재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불편한 교통시설(신호등,횡단보도,유턴,자전거정차대,마을버스,가로시설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횡단보도 필요부분, 교통신호조정, 보도개선, 유턴필요부분, 시설배치 및 신설 등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재점검이 요망됨.</p> <p>예)</p> <p>① 구의역에 설치된 교통정보 안내판은 기둥에 막혀 제대로 보이지 않</p>	교 통 분 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음(재배치 요망)</p> <p>② 장평교와 동이로 네거리(중곡3동과 중랑구 경계)에 유턴 신호가 없어 군자교에서 장평교쪽으로 가다가 유턴시에는 중랑구 동서울수영장까지 가서 회전시키고 있는 실정임(유턴표시 신설 요망)</p>	
<p>•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제 필요</p>	<p>•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야하며 이를 배경으로 보다 향상된 복지지원 체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복지예산 투자에 있어 어려운 구 재정으로 전부 다 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 관내 종교단체, 기업, 재벌기업의 복지재단, 민간후원회 등의 참여 유치 기회를 적극 시도해 볼 것.</p> <p>예)</p> <p>중곡3동 셋별어린이집:총예산 27억 원 투입중 구예산은 부지매입비 10억 원(5년분할) 투입, 나머지 17억원은 삼성복지재단 참여로 건축 및 시설일체를 완공하여 우리구에 기증하였음.</p>	<p>복 지 분 야</p>
<p>• 투자·업무 심사 및 평가활성화 필요</p>	<p>• 지자체가 본격화될수록 기획기능이 더욱 요구되는데 현재 그런 필요성에 비해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p> <p>투자 및 업무에 대한 심사계획을</p>	<p>행 · 재정분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수립하고 심사방법은 계속적으로 세련화시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심사방법은 계속적으로 세련화시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분석 방법의 발굴 작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계획수립기간 연장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계획은 상당히 어렵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요인이 내재된 계획으로 법적으로는 지구 지정후 2년 내로 규정되어 있어 계획이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 여타 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나 건교부에 상세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계획의 부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li> </ul> <p>[참고] -상세지구지정→2년간 건축규제→민원발생→많은시간 요구 -건축최소면적(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60평)→지주와의 통합작업</p>	<p>도시계획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구 관내 예식장이 8개소로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겸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예식장 주변에도 피로연 예약 식당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 대부분의 식당들이 피로연에 온 하객들에게 뷔페식, 한정식 등 많은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실제 먹는양은 차려진 식단의 20~30%, 쓰레기는 70~80% 배출) 따라서 예식장내 음식점 및 주변 예약 음식점들에 대하여 국수류등 간단한 식사판</li> </ul>	<p>청 소 분 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매를 권장토록 총행정력 동원이 필요함(청소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참고]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고려해 볼 것(조례)	

이석봉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토지매입 관계철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음	• 시정(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요망)	가정복지과
• 정화조 청소관련 지도감독 강화 및 부당요금 근절 대책 요구 - 정화조 청소는 법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청소과정에 있어 ① 요금의 정확한 산출근거 확인 불가능 ② 부당징수 요금의 사례 빈발 ③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원 불친절 등 주민 다수의 시정요구 민원이 빈발	① 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 및 청소 직원의 친절교육 강화 ② 요금의 산출근거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③ 정화조 청소요금 징수와 관련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사례 적발에 더욱 노력 경주하고 적발시 엄중 문책 ④ 주민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 홍보를 강화	환경보전과

박유관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예식장 불법영업(어린이회관, 한강아리랑, 파라다이스 등) 실태 확인	• 건의	가정복지과

최금순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년 9월만 현재 과오납 현황은 2,888건에 시세 3,725,883천원 구세 60,141천원 도합 3,786,024천원이 과오납으로 부과</li> <li>- 과오납 부과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이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으로 부터의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오납 부과가 최소화 되어야 함</li> </ul>	부 과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음식점 총 허가업소는 '96. 10. 30 현재 4,068개 업소중 541개의 업소가 폐업 멸실된 상태인데 위생과에서 허가업소 미정리로 인하여 면허세가 부과과로부터 계속 허수로 부과되고 있어 과오납 발생의 문제점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책강구 및 시정 강력 요구</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가 지역의 무질서한 입간판 설치로 주민통행 불편과 주차난이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 건의(특히 야간단속 강력히 촉구)</li> </ul>	건 설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먹자골목 상습 침수지역인 구의1동 246-76일대의 하수암거 개량 추가공사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해예방 차원에서 '97년 우기전에 공사완료 강력 요망</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승합 500번, 신장운수 573번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구의 1,2,3동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난 3월 제기된 바 있음. '96년 11월 15일 상기 민원관리 서울시 회신에 의하면 500번, 573번 이용 주민의 수요파악과 구청과 버스조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도 노선환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00번, 573번 노선환원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강력 건의</li> </ul>	교 통 행 정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요지의 회신이 민원인에게 도달 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관리부서 3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부실</li> <li>- 노외 및 노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등에 의거 설치 관리되어야 하나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과와 해당 동에서 관리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3원화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장법 운영부서(교통지도과)에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요망(25개구청중 5개구청은 기히 교통지도과에 이관되었음)</li> <li>•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체계적인 관리 및 주차장법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 (인력부족 사항은 조직개편하여 교통지도과에 주차장관리계 신설 강력 요구)</li> </ul>	<p>건 축 과 교 통 지 도 과 동 사 무 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차량에 의한 노상영업은 각종 소음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합동 단속 강력 요망</li> </ul>	<p>건 설 관 리 과 교 통 행 정 과 교 통 지 도 과</p>

김영환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생활 체육교실 시범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생활공간이 축소,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의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주민들은 건강가 체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또한 환경산업의 발달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퇴폐, 사치, 향락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의 역기능도 함께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li> <li>• 운영현황 및 실적:현재 4개동의 중심으로 근접동의 문화, 체육 등 약 8천여명의 참관인원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4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동생활 체육교실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함.</li> <li>• 효과와 대책 :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은 물론 지역주민간의 교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앞으로 동별로 1개교실 이상 운영토록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가 요망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p>사 회 진 흥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3동 587-2 안우성 주노 주유소내 세차장이 정수설치를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기계는 작동불량이며 무단 방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행정조치 요함)</li> </ul>	환 경 보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 광진주유소내 오수 처리 지관을 통하여 폐수를 직접 방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행정처리 요망)</li> </ul>	환 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과 90-94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에 보면 총 108건의 미준공 상태이므로 전기, 전화는 사용할 수 있으나 수도는 단수가 되어 옆집에서 끌어쓰고 있는 상태임. 셋방사는 사람들의 애로가 많으므로 수도만은 연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시정요함)</li> </ul>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차산 물탱크 수질, 청결, 문제에는 아주 양호하며 소각로, 화장실도 아주 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직원이 노고에 감사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관리사무실 온방 상태)</li> </ul>	공 원 녹 지 과

유승주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단의 연구실적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위주의 정책개발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개발의 형평성의 문제점 도시계획의 지역에 대한 정책개발의 부진은 광진구 도시계획의 거시적 안목에 문제점으로 지적</li> <li>친절왕 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단의 연구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 및 예산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li>건의</li> </ul>	<p>구 정 연 구 단</p>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제도의 문제점 일선동의 7급 행정직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나 구청이 7급 행정직은 과다 편성되었음 동 7급행정직-27명, 8급행정직-2명, 9급행정직+37명, 구 7급 행정직 +36명, 8급행정직+13명, 9급 행정직+18명등으로 직급 정원대비 현원의 인사조직에 하위직 공무원의 불균형 초래. 또한 각동의 정원대비 현원 직급 편성의 편차가 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사업별 사업목적, 예산의 규모와 사업기간, 예산예결 등을 이해하기 쉽게 사업설명서 등 설명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기 획 예 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물의 과다 발행을 지적 신설 구로써 홍보차원의 발간은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쟁적으로 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기 획 예 산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실·과별 홍보물 발간으로 민선 시대의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목적과는 다른 방향인 예산낭비의 문제점 지적</p> <p>홍보물 예산집행에 포괄예산의 임의집행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적 경비인 연구개발비 용역 사업중 광나루 관광촌 오수중계 펌프장 시설 운영계획의 예산액 20,000천원을 구정연구단의 자체 사업으로 상반기중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이의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사업임. 구정연구단의 적극 활용방안 모색이필요함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기획예산과의 예산목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각 과별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 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기 획 예 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운영비중 구 종합업무추진 예산의 집행에 합리적 방안의 필요성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기 획 예 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경상보조중 기타 사회단체 보조예산의 집행에 있어 수시 사업보다는 계획적인 사업수립과 그에 적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이의 집행에 있어서 지나친 재량권 행사의 문제점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 예) 새마을 이동 도서관 예산지원은 법적근거가 미약함. '96년 사업비 총액 81,842,220원</li> </ul>	<p>기 획 예 산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96년도의 예산집행중 하반기 지원 대상가구가 2가구에 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p>사 회 진 흥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중 안전관리위원회의 과학적 안전검사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양오수중계 펌프장의 시설 안전 진단결과 D급 판정은 건축물 옥탑의 사택 건축으로 인한 원인여부 조사중으로, 옥안의 안전검사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첨단 안전진단 장비의 구입 조치요</li> </ul>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의 납세의식 결여,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토초세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대한 기대심리 작용으로 어려움 호소, 조속한 징수의 필요성 강조</li> </ul>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층이 기능인력 양성으로 자활의기회를 주는 국비사업은 예산투자액에 비해 그 효과가 지극히 저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증 미취득, 취업률 저조로 제도 실시의 효고가 적음</li> <li>직업훈련 과목의 다양화조치 강구 요구</li> </ul>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의3동소재「현풍할매 곶탕집」에서(1996.6.29 경향신문) 피혁용 가죽을 이용해서 조리했다는 보도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사건으로 관내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사식품을 취급하는 대형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직원교육 강화</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가모니터요원 및 조사원의 물가조사에 의한 물가인상 종목에 대한 인하조치 및 세무조사 의뢰 등 물가안정에 절대 필요성 강조 특히 물가관련 담당 직원의 정액여비의 업무추진비 지급의 필요성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예산과 '97년 예산편성에 포함 되도록 시정조치 요구</li> </ul>	지 역 경 제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야간공사 피할 것을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택가 시공시에는 야간 작업을 하지 말 것 강조. 도시가스 시공시 복구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업무협약의 필요</li> </ul>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의2-1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 부진의 문제점 지적.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결여가 가장 큰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업무 담당자는 사업의 마무리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의 담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구내의 큰 사업은 주관부서는 물론 고위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li> </ul>	주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도시기본계획(상세계획구역) 확정으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친 계획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생활복지등)도 동시에 계획될 수 있도록 구 도시기본 계획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발주의 전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 실명제」의 실시를 지적했으나 건설업법 제36조,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축의 문제점으로 전면 실시의 어려운 점 적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공사 예방과 책임행정 구현에 가장 알맞은 제도인 공사실명제를 구청장의 방침으로 적은 규모의 면적과 공사비가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세부규정을 명시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준설 예산집행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준설량 측정후 적정 예산을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요구</li> </ul>	하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통행지역의 개선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전용차도의 광나룻길에 대한</li> </ul>	교통지도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동의초등학교앞 차량운행의 위험과 어린이 보행시 사고위험의 예방차원에서 학교, 교육청, 구청 관계자의 개선안 필요성</p>	<p>개선안 및 일반 버스의 폐지된 노선 부활 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보건과의 업무중 순회진료 전담의사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원 건의</li> </ul>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청사 구조는 보건소로서의 기능저하의 원인으로 이의 신축이 필요하고 고급 의료인력의 충원으로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필요성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의</li> </ul>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엠브런스 차량의 119긴급 소방차 수준의 의료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의 개선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책 강구</li> </ul>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일환으로 새로 구입하는 의료장비의 조기발주로 보다 나은 의료기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책 강구</li> </ul>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민원실의 근무자의 성실한 근무자세 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 요구</li> </ul>	보 건 소

김선갑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루세원 발굴 요망 누락, 탈루 및 신규세원조사(화양동)에서 재산세,돌출간판 부당 이득금, 환경개선부담금, 진입로 부당이득금등 736건에 57,857천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은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구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97년도에는 화양동 이외의 지역에 누락 및 틀라세원 조사를 요망하고 동시에 구 행정 효율 재고차원에서 과오납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li> </ul>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측량 및 도면화 사업으로 광장동 지역이 국·공유재산 153건 7,654㎡를 발굴한 것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구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도에도 광장동이외의 지역에 국·공유재산 점유현황 측량을 요망</li> </ul>	지 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프라임APT 방음벽 설치문제 '97년 1월 입주예정인 구의3동 현대프라임APT내의 강변북로변 옹벽(높이 5m)위에 설치토록 계획된 방음벽은 입주예정자들이 조망권 침해와 옹벽위의 방음벽(높이 6m)설치는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방음벽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방음벽 설치는 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입주세대가 샷시를 페어그라스로 설치하면 소음허용 기준치인 65DB이하가 되므로 입주예정자의 민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강변북로 확장을 인한 소음증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음벽 공사비는 주민에게 반환하기 보다는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li> </ul>	주 택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돌출간판 일제조사 요망 도로점용료(돌출간판) 무허가 간판이 '96년 상반기 기준(허가 : 155, 무허가 : 2,449) 허가간판 보다 약 16배 규모로 난립되어 도시미관상 재정비가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월 감사실에서 조사한 화양 지역 신규세원 발굴결과에 의하면 무허가 돌출간판이 616건 적출된 바, 거리질서 확립과 구재정 확충차원에서 무허가 간판 난립을 계몽지도하고 무허가 간판일제조사 요망</li> </ul>	<p>도 시 계 획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총액 입찰제 도입 제안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예산 840,000천원(도로소과 보수공사 6억, 이면도로 정비공사 240,000천원)을 연간 단가 계약하고 추경1차 1억, 추경 2차 2억을 본 예산에 증액시켜 1,140,00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사업비를 사업별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증액시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사료됨</li> <li>•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예산집행의 객관성을 보완키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에 준해 총액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li> </ul>	<p>도 로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하수도 준설 총액 입찰제 제안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편성된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목적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다누이사업별 입찰을 실시해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 기예산 6억에 소규모 편익사업 2억, 재해예방복구비 1억, 추경3억 도합 6억을 기 예산에 증액시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 기예산 550,000천원에 추경에 편성된 3억을 증액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수비, 하수도 준설 예산집행의 객관성 결여를 보완키 위해서도 전년도 실적을 고려 총액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li> </ul>	<p>하 수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p>켜 도합 850,000천원을 준설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됐다고 하나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에는 배치된다고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버스 노선 변경 중곡운수 1,2,3번(16대) 마을버스 노선이 구청-구의역-강변역 단일 노선으로 구의시장, 구의성당, 대원외고 등을 왕래하는 구의1,2,3동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마을버스 이용 불편해소와 구의역에서 자양사거리간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선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 (1안) 중곡운수 1번(8대) 노선인 용암사-구청-구의역-강변역으로 운행중인 8대중 5대를 용암사-구의시장-전화국-강변역으로 노선을 변경(회차도 동일함) (2안) 1번 8대 모두 용암사-구청-구의역-강변역 노선을 회차만 강변역-전화국-구의시장-용암사로 노선을 변경</li> </ul>	<p>교통 행정 과</p>

이동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노주유소 진입로 4곳의 허가사항 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사항 조사 요구</li> </ul>	건설관리과

고명곤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행정지도 미흡에 따른 행정지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예방 차원</li> <li>- 부실 복지법인에 경각심 고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복지관 승강기설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수요 파악후 재검토</li> <li>- 타구 사례 검토후 재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전에 사전 심의 요</li> </ul>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사청취하여 기본결정</li> <li>- 모토로라조합주택 건축허가 시 급히 처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CO 상록타워 APT와 8단지 APT 주민의 불안을 해소키위해 진행되는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불안해소</li> </ul>	주택과

## 이상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동 240-1주유소 허가건</li> <li>- '95.10 동지번 주유소 허가시 지하철 승차 입구 설치 미개통에 따른 주변상황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통행주민의 불편가중 및 안전사고 예방</li> <li>- 경기(구리) 지역 접경으로 서울시 관문과 강남(천호대교)에서 강북 진입에 따른 교통요충지</li> <li>- 기 운영중인 천호주유소와 접해 도시미관 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후 1년경과 조항 적용으로 취소 유도</li> </ul>	지역경제과

## 이창비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지 구유지 사용 투명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세확충 차원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여 구전체 현황 측량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li> <li>- 세외수입 증대차원</li> </ul>	

김영용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차산성 복원사업 추진 아차산성은 백제초기 한성시대 남북교통이 거점이었던 한강도하 지역을 수비하기 위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의미가 큰 산성으로써 광진구에서 문화재관리국 및 서울시청에서 아차산성 복원 계획을 제출한 결과 '96년 157,142천원을 지원받아 성곽 전체길이 약 1,120M중 '96년에 31.5M를 보수할 예정이며, '97년에 142,857천원을 지원받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차산성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유산으로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li> </ul>	<p>문화공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계약에 대해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구에 업체보다 가능하면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와 계약 요구</li> </ul>	<p>총무과 재산회계과</p>

전영동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진구는 동부서울의 교통요지로서 지역문화가 생동하는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진구를 상징하는 거리가 필요하며 (천호대교-한강시민공원간, 어린이대공원 입구-한강 시민공원간 등) 광진구의 중심적 이미지 확보와 구간의 비교우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의</li> </ul>	<p>교통행정과</p>

김기섭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과에는 운영비가 전무하니 월 20만원 정도는 예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 및 의료비 장비가 우수하고 종합병원을 방불케하는데 구민에 대한 홍보면이 많이 부족하여 이용도가 지극히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주민에게 널리 주지 시킬 것</li> </ul>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은 감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막대하게 지출되었으니 가급적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각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에 따른 예산지출이 또한 많은 것 같으니 대폭 조정 또는 통폐합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각 과

한중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진문화원 설립인가 내용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원 임원 27명중 8명이 광진구 지역이 거주자인바 과연 광진구민과 같은 애향심이 발휘될 것인지 검토 필요</li> <li>• 임원중 이사수는 우수가 아닌 기수 이어야 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 표결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수로 개선 필요</li> <li>• 문화원 사업자체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감독관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li> </ul>	<p>문 화 공 보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기능과 역할제고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위한 감사대상을 실효성이 높은 업무분야로 압축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적발위주 감사가 필요</li> </ul>	<p>감 사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위공무원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발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중징계가 필요</li> </ul>	<p>감 사 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절공무원 주민추천제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을 기하되 주민추천 우선주의 필요</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일근무제 실시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편의 제공에 별도움이 안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로 이용을 제고</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행정관 운영제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활성화등으로 퇴색되고 있어 폐지 검토 필요</li> </ul>	<p>총 무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상담관 운영제도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동직원과 같은 선상에서 복무하도록 조치 필요</li> </ul>	<p>총 무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구민회관 건립 계획	• 공용 및 공공용건물의 절대부족 현상대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	총 무 과
• 문서관리제도 검토	• 문서철 색인목록 미기재로 불신감 초래 편철할때마다 즉시 색인목록 기재요(공통사항)	총 무 과
• 상습체납자 대책 검토	• 지방세 상습체납자 일소 특별대책 강구 필요	부 과 1. 2 과
• 지방세 체납일소 대책에 대해	• 국세관련 지방세징수에 있어 유관 기관과 긴밀협조로 실기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필요	부 과 1. 2 과
• 광진보훈복지회관 건립 계획	• 당초의 건립계획기간이 초과되어 변경건립 계획이 수립 시행중에 있는 바 기간내에 건립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 필요	사 회 복 지 과
•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 구립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나 민간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가 정 복 지 과
• 음식물쓰레기 대란 예방대책	• 음식쓰레기 유발자(업소,가정)의 적극적 의식개혁과 홍보대응 검토 필요 • 음식업 조합 및 부녀회 등의 주도적 참여 유도 절대 필요	청 소 과
• 재건축 시행대책에 대한 검토	• 동일지역내의 재건축을 분산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 강구 필요	주 택 과
• 도시고속도로(강변북로) 방음벽	• 방음벽설치시 주변경관 또는 가로	도 로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설치 계획	수 보존 등을 최대한 유의하여 시행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양육감문 확장공사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 고수부지 이용객 등의 비수기(동계)에 집중적 공사시행 검토 필요</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구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시간외므로 심야시간대에 야기되는 제반사고 예방대책 조치 필요</li> </ul>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대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등록대수: 74,614대</li> <li>- 주차가능 확보대수: 40,839대</li> <li>- 확보비율 : 54.73%</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해소대책 검토 필요</li> </ul>	교통지도과

김태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독후감 경진대회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상 1위에만 해외연수 기회를 실시하지 말고 2,3위에도 대상 기회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위 대상자도 독서의욕 및 사기 진작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자기개발과 전문지식을 발휘하고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혁신 발전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 해외연수인원 30명의 10%에 해당되는 대상자 연수</li> </ul> </li> </ul>	기 획 예 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카드 활용(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병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50% 지출금은 적합한 구 재정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보조(음식 4,000원-본인 2,000원 구정보조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이 업소 방문하여 도움전달</li> </ul> </li> </ul>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감량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홍보활동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업주에 대한 홍보, 간담회, 교양교육이 부족</li> <li>- 말보다 행정실천 부족</li> <li>- 홍보와 계도로서 과중한 부과 고려</li> </ul> </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253-5 77평 350만원 구입가능(평당가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중 곡 1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청사 협소하며 우기에는 비가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건축 건의</li> </ul>	중 곡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륜차 구입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광 장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 중학교앞 지하차도 확장공사 건의</li> </ul>	광 장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신축 및 노인정 협소 인원수용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충 필요</li> </ul>	능 동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청사 지역에 환경정비 꽃묘식재는 4계절에 맞게 환경정리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요청(동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전 동 사무 소

노승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근 탐지기 18,800천원</li> <li>- 철근 부식측정기 16,500천원</li> <li>※ 1996.12.4 콘크리트코아채취기 구입요청건</li> <li>(추가) 실 채취한 자료 시험분석에 대한 시험분석실 시급히 요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래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등 노후건물들이 사고가 많이나는 예들이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은 장비들을 구입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함이 좋음</li> </ul>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역서 검토결과 '95, '96년 2년에 걸쳐 수의계약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훈건설 11건</li> <li>- 무등건설 6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2개업체 수의계약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며 소액공사이고 또한 연락이 잘되고 일을 잘하는 업체로써 수의계약이 타당</li> </ul>	재 산 회 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변로 방음벽 설치현장 야간에 진입차량 위험하니 야간 점화등 재검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아보링채취기 구입요망</li> <li>•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 건의</li> </ul>	도 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동 지하철도 확장공사(2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잘못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옆토지 수용하여 옹벽공사 재시공 필요</li> </ul>	도 로 과

박래학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2동 육갑문에서 신양중학교 까지 녹지 별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음벽 설치 요구</li> <li>• 복구시 원인자 부담 요구</li> </ul>	도 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2동 육갑문앞 횡단보도 미 지정으로 주민에게 피해 속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2동 현대APT앞 횡단보도 위치 재선정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번버스 주차장의 문제점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피해 속출 및 매연과 소음 공해(주·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강구</li> </ul>	교 통 지 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안에 폐가구가 주차영역표시 도구로 사용되어 청소가 원활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 (차량이 부족)</li> </ul>	중 곡 4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자금의 문제점 업무 담당자가 전세자금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 월세인 세대가 월세로 전환한 사례 - 채무가 있는 세대가 채무변제로 용자받은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중 곡 2,3,4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요민원의 문제점 일요민원의 해결방안으로 각동에서 부녀회 기타 단체에서 2인 1조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데 처음 시행시는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오전만 근무하거나 근무치 않는 등 문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전 동 사 무 소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행정의 문제점 각동 동장은 매일 2회씩 순찰을 한다하지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의 관리부실로 인해 주차선안에 페타이어, 폐가구 및 드럼통으로 주차영역 표시를 함으로 인해 다른 주민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가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책강구</li> </ul>	전 동 사무 소

이형태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속칭 뼈끼 골목 정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지속적 단속 확인</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시민공원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서울시로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 (내년에 관리비 청구-약2억)</li> </ul>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죽나무공원 고사목에 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된 나무와 시방서대로 식재 요망</li> </ul>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111-221호 도로개설시 약 5평 대지를 지주가 철차를 몰라 잔여지 보상을 못 받았음. 현장 답사결과 가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관상 불미스러울뿐 아니라 도로 편입 매수하여 가각 정리로 사용 건의</li> </ul>	건 설 관 리 과

허윤희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중곡1동 어린이집 신설 요망	• 건의 중곡1동 253-5호 77 부지매입 2억 4천 소요	중 곡 1 동
• 노인잔치 및 문화행사 구청 지원 금 증액 요망	• 건의	중 곡 1 동
• 통장자녀 장학금을 특정인에 지급된 것으로 사료됨 (예) '95년 지급받은 학생이 '96년에 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 시정요구	중 곡 1 동
• 중곡2동 51-7 무단점거 생활하고 있음. 구청에서 보상하여 동청사로 사용 바람	• 건의	중 곡 2 동
• 통장자녀 장학금 지불시 매년 받은 학생을 피하여 지급 요망	• 시정요구	중 곡 2 동
• 중곡3동 국유지(무단점용 9세대) 점유상태를 구예산으로 보상하여 공원육성 요망	• 건의	중 곡 3 동
• 광장동 굴다리 보수공사를 '92년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 발생	• 시정요구	광 장 동
• 동청사내 재활용품 쓰레기 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요망	• 건의	노 유 1 동
•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 및 무단 투기한 세대주 과태료	• 건의	노 유 2 동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부과후 과태료 징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서울신문(반장에 보급) 보급소에서 서류제출후 동 직원은 확인후 신문대금 지급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li> </ul>	노 유 2 동

허윤희, 이효영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구유지 활용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시·구유지를 점검하여 노인정, 어린이집 또는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타당하며 특히 중곡2동의 경우 시유지 200평 대지에 무단점용 9세대를 구에서 보상 이주시켜 그 대지에 동청사를 신축 건의</li> </ul>	총 무 과

김종환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사기 양양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하격려는 전직원 및 봉사자로 함</li> <li>• 직원 휴양소 운영은 현재 19.6% 이용하고 있는 바 25%로 예산 확충하여 사기 양양 진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액 1,000만원)</li> </ul>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정 보수공사 구의3동 노인정 보수예산 편성(2,700만원)되었으나 안전진단 점검이후 재건축 불가피 추경에 편성된 예산 이월 불가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시 철저 검토 요망</li> </ul>	사 회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 현재 놀이공원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공원청소는 취로인부, 녹지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낭비 및 책임의식 결여 일원화 관리 시급(종합관리 시급)</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시설 설계용역시 철저한 검토후 발주 (예) 구의2동 어린이집 건립시 두차례 설계변경→이는 사전검토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건 축 과

김영환, 설성환, 이형태, 고명곤, 이상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나루 전철역위(5호선) 주유소 허가건</li> <li>- 의원들 직접 방문하여 주변상황 파악(5명)</li> <li>-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선 도로의 혼잡 지역</li> <li>• 전철이용자의 통행불편 초래</li> <li>• 인근 주유소와 감정 대립격화 예상</li> </ul> </li> </ul> <p>[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이행평가 필요</li> <li>• 주민의견 청취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실의 재조사 요구</li> </ul>	<p>지 역 경 제 과</p>

김선갑, 전영동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료 일제 조사 요망</li> </ul> <p>'96.10월말 현재 도로점용료 구 수입이 4,15건에 1,253,546천원이 징수됨. 도로점용료중 20m이하 도로 진입로 현황을 현장확인 결과 진입로 현황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일부 노출되었고 진입로 허가, 무허가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인 도로점용료는 직원이 노력여하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구 재정확충 차원에서 진입로, 지하매설물, 전주, 통신주등과 현장 도로점용등(시 수입분 포함) 신규 도로점용 발굴 조사를 요망</li> </ul>	<p>건 설 관 리 과</p>

전영동, 노승균, 박유관, 최금순, 김선갑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장중학교앞 지하차도 확장공사 분구이전인 '92년이후 계속 사업으로 총예산 22억이 투입된 사업임(분구이후 예산 6억 포함)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공사 발주이후 5년에 걸쳐 설계변경 2회, 도급업체 부도, 지하철 5-41공구 환기구 시설구간과 중복으로 인해 2년간('93.3~'95.3) 공사중단, 천호대로 상·하부에 1,800m/m 대형 하수관이 관통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도로선형변경 추진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해 예산낭비(당초 총 투자사업비 13억) 초래와 공기지연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예산낭비와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li> </ul>	도 로 과

### 3.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개요

- (1) 감사기간 : 1997. 11. 26~1997. 12. 2 (7일간)
- (2) 감사위원 : 이효영 위원장, 유승주 간사 등 27명
- (3) 감사기관 : 광진구청, 보건소, 8개 동사무소
- (4) 감사실시 경과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97. 11. 3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 97. 11. 10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97. 11. 11
  -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 97. 11. 15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97. 11. 15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97. 12. 13
- (5)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로서 1996. 12.1 이후에 처리된 사무

### ■ 감사반 편성

반 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총 괄 ( 27명)	특별위원장 간 사	이 효 영, 유 승 주	
1반 (5명)	허 운 회	이 상 칠, 신 인 용 박 래 학, 김 종 환	<b>■ 전문위원</b> : 전인길, 손영진 <b>■ 의사계장</b> : 조철호 <b>■ 의안담당</b> : 이창근 <b>■ 직 원</b> : 백상기, 고영찬, 이장병, 박만우, 황중섭, 장상식, 이경희, 권희순, 강석환
2반 (5명)	설 성 환	한 중 석, 김 기 섭 전 영 동, 김 선 갑	
3반 (5명)	추 윤 구	이 형 태, 노 승 균 김 영 환, 최 금 손	
4반 (5명)	이 동 철	김 태 식, 박 유 관 김 광 일, 고 명 곤	
5반 (5명)	이 석 봉	이 금 장, 이 창 비 최 근 식, 김 영 용	

### ■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반 별	감사일정	대상기관(부서)	장 소
1반	97. 11. 26~97. 12. 2	3실(문화공보·감사·민원봉사실) 총무국	구청감사장
2반	97. 11. 26~97. 12. 2	재무국, 도시정비국	구청감사장
3반	97. 11. 26~97. 12. 2	시민국, 보건소	구청감사실
4반	97. 11. 26~97. 12. 2	건설교통국	구청감사장
5반	97. 11. 26~97. 12. 2	8개동사무소, 의회사무국	해당동사무소, 의회사무국

※ 8개 동사무소 : 구의1·2·3·4동, 자양1·2·3·4동, 화양동, 군자동

## 나. 감사결과

### (1) 총평

이번 감사는 2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염두에 두고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본의 아니게 세세한 부분까지 파헤친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됨으로써 우리 광진구가 또한 주민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 27명의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분야의 광진환경선언 21,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오랫동안 우리구의 미관을 해쳤던 군자동 도깨비 건물 철거, 또한 보건소에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구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광장동 38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토록 노력하는 등 그 외에도 자세하게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들은 구정발전에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날로 증대되어 가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점도 몇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도로보수공사가 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비등으로 인해 공사때마다 굴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준 점과 실적위주의 위생단속으로 퇴폐업소의 근본적인 근절책이 되지 못한 점 또한 자전거전용 도로의 이용홍보 부족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등 화재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 중랑천 뚝방길 쪽에 가로수 식재, 각 동별로 재활용품 보관장소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모든 법제사무를 체계화·정착화하여 구청 법제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게 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대행무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업무정착, 각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극대화 한 점, 그리고 광진구 소식지를 통한 광고수입과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 (2) 수범사항

### 1.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및 광고수입사업 전개 (박래학 의원)

- 각 언론기관에 8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93%인 779건의 높은 보도실적 성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였고 광진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 30건에 2,400만원의 광고수입으로 구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음

### 2. 주택과에서 위법 건축물의 시정명령 불이행업소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년2회 부과·징수함으로써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음(김선갑 의원)

- 불법무허가 건물중 건물구조상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철거 될 때까지 년2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89건123,832천원부과 56건 76,304천원징수)로 세외수입 증대

### 3. 법제사무의 체계화·정착화 기여(유승주 의원)

- 95년 3월 분구이래 모든법제사무를 체계화·정착화하여 구 법제업무가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모하였으며 현재까지 구조례 102건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을 심사하였고 700여회의 중요법제사무를 실시하고 97년 3월부터 34회에 걸쳐 조례 입안된 조례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케하는 등 법제업무의 운영과 내실화에 기여 하였음

### 4. 주민편의 위주의 부패·비리없는 자동차민원 정착(유승주 의원)

- 자동차등록업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으로 97년 6월 이후 7차례나 있었던 감사에서 단순한 전산착오외에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등록대

행 무료서비스와 자동차번호판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업자 개입없이 구청 공무원이 주민위주의 부패·비리 없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정착시키고 있음

5. 수십년간 존속되어 온 화양동 윤락업소 폐쇄 및 지속적인 단속실적(이동철 의원)
  - 대학가근처의 화양동 윤락업소의 폐쇄는 물론이고 관내 900여개 업소에서 1,700여건의 지도단속 실적높은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임
  
6. 가정도우미 노인방문 및 각종 봉사상태 양호함(김영환 의원)

## 다. 시정요구사항

신인용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 결손처리 금액 최소화 시효소멸 및 불납결손이총 760건에 8천 3백만원으로 과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 결손처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li> </ul>	부 과 1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원누락 현황 재산세, 종토세 95건2천1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원관리대책을 수립 누락을 최대한 줄일 것</li> </ul>	부 과 1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징수문제 징수율40% 미징수액 3천2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징수대책 수립추진</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과오납 발생건수 294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오납방지 향후대책 수립추진</li> </ul>	부 과 2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 과오납 환불조치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환불대책 강구</li> </ul>	부 과 2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징수 부진 부과260만원 징수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하고 조속한 징수대책 강구</li> </ul>	민 방 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비용 과다 지출:징수액 10억원 우편료 1억2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징수방안 수립 추진</li> </ul>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입소대상선정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 바람</li> </ul>	가 정 복 지 과

한중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지방세 상습채납자 조치내용 강제징수실적 : 실기로 징수실적 부진	• 적기 압류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	부 과 1, 2과
• '97년도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 빈도과다로 주민불편 극심	•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조치 요망	하 수 과
• 예산반영 주민위원회 운영실적 전무	• 제도개선으로 주민참여 필요	기 획 예 산 담 당 관
• '98예산 신규사업 부적정 - 인터넷 구축 -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연수 -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위로여행	• 재검토 필요	기 획 예 산 담 당 관
• '97년도 주요사업 대 실적 - 아차산성의 사업계획변경은 타 당하나 - 중량천둔치정비등 부진사업 특 별대책 강구 필요	• 적극 대처 필요	기 획 예 산 담 당 관
• 새마을문고운영현황 검토결과: - 부실문고 적극 지원으로 내실화 조치	• 적극 지원 요망	사 회 진 흥 과
• 각급위원회 난립:통·폐합 필요	• 시정요구	교 통 행 정 과
• 마을버스 운행조정:이용편의 의 견수렴 필요	• 재조정 요구	교 통 행 정 과
• 신홍교통(57,58)차고지 주차단속 태만	• 적극조치 요망	교 통 지 도 과
• 차고 배기가스 극심		환 경 보 전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공사 시행계획 수립 미흡 : 불요불급, 효과기대, 문제점 등 사전검토 전무한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ul>	도 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차산메아리가 구정지이지만 의정활동과 대주민 홍보에도 역점을 둘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ul>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행정효과면보다 주민취향에 접근할 수 있는 편집전환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ul>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계재는 특정한 선전보다 대상물 광고에 충실함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ul>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센터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수거지연 상품가치 상실</li> <li>- 재고물품명세홍보로 관측 강화</li> <li>- 재활용센터 증설로 수요공급 충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li>• 개선</li> <li>• 개선</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증량제 수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명제 도입으로 감량화</li> <li>- 년중무휴 수거방안 채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li> <li>• 개선</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감독 철저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li> </ul>	가 정 복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확인 철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li> </ul>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 소각로 시설 : 주민대홍보 미흡 신형교통 차고 배기가스 극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li> </ul>	환 경 보 전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차선제 단속 : 신축운영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검토</li> </ul>	교통지도과

추윤구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1. 도로포장상태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경계석 시멘트 양생, 면과 질 보도블럭 색상 변색, 아스콘 포장(78호) 자갈이 커서 노출 및 요철이 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로과
2. 부분 굴착공사 마무리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팅 선 잔존, 마무리 시 모래, 자갈, 물 재료배합을 규정지켜 마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공사, 한전 등의 부분굴착 공사 시공부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로과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공사 다지기 부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공사 현장직원이 욕설 및 불친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시정요구</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공사시 대문 문턱, 담장에 기름이 튀도록 공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주의촉구</li> </ul>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도로공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공사 안내판, 차량통제 인원 등을 배치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로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방 감독에 관한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 방 내부 불투명</li> <li>- 비디오방 유리창 가림막 설치</li> <li>- 등록증 사본 계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문 화 공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동 110-7 도로 하수관이 적어 하수배출 문제로 민원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도 로 과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신축시 지하실 시공무제 신축할 때 지하실을 높여 차고 상가 진입로가 측구까지 침범사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감독으로 미연에 방지 요망</li> </ul>	건 축 과

## 이석봉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주민 전세금 대출 상황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가구중 12가구(14%)가 미상환됨. 시정요구</li> </ul>	구 의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 건물의 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의2동 79-30 사유지 공장과 구의 2동 79-15 주택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정식허가 절차 요망 (벌금 관계 서면 시정바람)</li> </ul>	구 의 2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양동 일대 재활용 보관장소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모두 가져가고 쓰레기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별로 재활용품 보관장소를 확보할 것을 건의</li> </ul>	청 소 과

이형태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등가 지역 단속</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식점이나 주점 허가신청 점포 내부시설 철저 감시 요망</li> <li>2. 영업장 내부시설(주방시설 등)을 투명하게</li> <li>3. 취약시간대에 빼끼활동 활발하니 검경 합동단속으로 근절토록 조치 요망</li> <li>4. 빼끼들의 근거지인 소규모 노점상(포장마차등)을 철저 단속 요망</li> </ol>	<p>위 생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공사(도로,하수 공사장)시 동일업체가 시공토록 하거나 다른업체 시공할때는 공사할 때마다 굴착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한 번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바람</li> </ul>	<p>도 로 과 하 수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작전에 동감독, 의원에게 공사내역 및 착수일 통보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착수전에 공사내역, 착공일 등을 구의원에게 사전 연락 요망</li> </ul>	<p>도 로 과 하 수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애국단체 지원금 삭감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수호관련 애국단체(유족회, 미망인회, 상이용사회, 무공수훈자회)의 지원금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한 본인 또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이므로 선심성 예산의 범주에 넣는 것을 재고하여 예산 복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함</li> </ul>	<p>구 청 장 기 획 예 산 과 사 회 복 지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대학가 골목 차 없는 거리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유지발전 요구</li> </ul>	<p>교 통 행 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6m도로 일방통행지정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5~49에서 5~21(6m)도로 일방통행 요청</li> </ul>	<p>교 통 행 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지구 교통개선 사업문제</li> </ul>	<p>빠른 시일내에 설계와 시공 요망</p>	<p>교 통 행 정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로(화양동쪽) 가로수 및 하수관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5~주변 25m 가량이 하수관(1m) 이관 요구 능동로(민중병원)와 대공원사거리 느티나무를 속히 식재 요망</li> <li>• 느티나무길에 걸맞게 버금나무, 가죽나무를 느티나무로 대책 식수 요구</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34-41에서 41-3까지 박스 하수관 청소 불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스 하수관 청소 우기전에 실시 요망</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84-1앞 하수도 미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시설 요구</li> </ul>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지역 가스공급관 연결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양동 17~34에서 132~68사이와 127, 114~5앞 가스공급관을 연결하여 주변 지역에 가스 공급토록 본사에 독촉 요망</li> <li>• 도시가스 시설 시 용자금혜택 있음을 홍보 요망</li> </ul>	지 역 경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청사 건립계획에 관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의 공공청사 건립계획은 건대부지를 선정하여 대치 3,000평:120억 건축비:371억 시설부대비 약 91억 예치하고 있는 바 부족예산 425억임</li> <li>•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정문앞 공원조성된에 바닥면적 4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000평의 관상복합 건물 신축하면 건축비 1평당 350만원이명 70억 정도로 완공시켜 지하층은 주차장, 1,2층은 약 33억 보증금 10억에 년3억5천 상당이 수입과 의회와 구청이 같은 공간에 있게되어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되</li> </ul>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어 이행을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구 거주자의 보건소 이용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구 보건소보다 더 나은 첨단장비 확충과 우수한 진료인력 확보 요망하며 널리 홍보 요망</li> </ul>	보 건 소

노승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소규모인 관계로 경험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현실화와 환경개선 사업 경험있는 업체 선정으로 효율적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li> </ul>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예산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범위한 홍보로 주민이용율을 높이도록 조치바람</li> </ul>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회계과 명칭변경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이 익숙하던 재무과를 “재산회계과”로 기구개편시 변경되었는데 주민들이 혼란이 많으니 “재무과”로 명칭변경을 요망함</li> </ul>	총 무 과

김영환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점검 관련한 감사자료가 부실하며 답변도 불성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 요구</li> </ul>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포장공사 마무리 처리 미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의2동 36번지 용마연립 앞 포장공사 마무리가 미비하니 시정바람</li> </ul>	도 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생과 직원들의 위생업소 야간 단속의 위험성 최소화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단속에 참여해 본 바 직원들이 애로사항과 위험이 따를때도 있으므로 안전한 단속방안 강구를 건의함</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절공무원 주민추천엽서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절공무원 추천엽서와 함께 불친절 공무원 추천도 함께하면 불친절 공무원이 없어질 것이므로 이를 건의함</li> </ul>	총 무 과

박유관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용마초등학교 등·하교실 주거지역 주차구획선 재고	• 램프설치 요망	교통행정과
• 어린이대공원 쓰레기 소각장 이전 계획	• 신속이전 요망 (시기결정후 통보 요망)	환경보전과
• 천호대로 버스중앙차선 차광막 내·외 환경평가(특히 하절기)	• 재고(자료 제출 요망)	환경보전과
•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공사착공 지연	• 공사기간 단축 요망	지역경제과
• 자전거 전용도로 내 주·정차	• 주·정차 차량 철저단속 요망	교통지도과
• 용마초등학교 내 불량 청소년 문제	• 보안등 설치 요망	도로과
• 공정한 예산으로 특정분야 지원 제고	• 균형발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 요구	기획예산과

김태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 소방차 통행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1,2동, 자양3동 재래시장 6m도로에 적치물로 인하여 통행로가 겨우 1.4m 정도밖에 되지 않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니 시장내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바라며 일정거리 소화전을 확보토록 조치요망하며 겨울철 재래시장 화재예방 계획수립 시행요구(사진참조)</li> </ul>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행정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의 준수사항 게시 의무화</li> <li>• 영업시간 명시</li> <li>• 음식점의 시설물 점검</li> <li>• 모범음식점 특성 사기양양 고취(모범업소 지원대책 강구)</li> </ul>	위생과

김광일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 기보일러 가동 중단 (중곡1동, 중곡3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보일러로 교체 요구</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안전진단 실적이 전 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1회 정도 안전진단 점검할 것을 요구</li> </ul>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랑천 뚝방 산책로의 하천변 가로수가 없어 주민휴식에 불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변 가로수 식재 요망</li> </ul>	공 원 녹 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곡1동 새마을문고 장소협소(현재 조립식 9평인데 3평가량 증축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축 요구</li> </ul>	사 회 진 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폐 및 변태 위생업소 단속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 요구</li> </ul>	위 생 과

## 고명곤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토로라 주택조합 건축허가 반려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사유 설명 요청</li> </ul>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조합 요구사항과 구청입장이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심의위원회와 구의원과의 협의요망</li> </ul>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화 소각시설 진행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화 달성 전략 수립 요망</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토로라타워 재활용센터 도시계획공고의 건</li> <li>- 재활용센터 도시계획 입안을 모토로라연합주택건축허가전에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 6월이후로 도시계획 입안 연기 요구</li> <li>1) '98년도 예산 미편성</li> <li>2) 조합주택의 인근주변시설의 무관심</li> <li>3) 구체적 장기계획후로</li> <li>4) 주민의 민원야기 가능성</li> </ul>	청 소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버스(광장운수, 중곡운수) 서비스 개선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업수, 차량청결, 사전안내 방송 기능추가 요구</li> </ul>	교 통 행 정 과

최금순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행정과에서 보도설치를 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조하면서 보도중앙에 자전거도를 설치하여 보행인과 접촉사고가 우려되며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었고 보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편의 위주로 사료되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li> </ul>	<p>교통 행정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6개동의 곳곳에 주차금지 황색선을 설치하였는데 소관부서에서 행정지도 및 단속부진으로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하고 있으며 보도의 구실을 상실한 채 상품적치와 불법 주차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시정 요구</li> <li>• 처리후에 감사실 감사후 관리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li> </ul>	<p>교통 행정 과 교통 지도 과 건설 관리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관리부서 3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부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교통지도과에서 전담 체계적인 관리 요망</li> </ul>	<p>건 축 과 교통 지도 과 동 사 무 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시장방침 제1497('96.11.29)에 의거 주차장관리 일원화 자치구 요청에 따라 방침준비중이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중임. 업무이관과 함께 인력도 보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 요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변역 주변 보도상에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는 바 광진구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도보행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며 음식물도 비위생적이고 노점상이 철수한 새벽녘의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불결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므로 강력한 철거 및 단속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요구</li> </ul>	<p>위 생 과</p>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폐·변태영업 단란주점 단속 부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허가업소 274개중 원칙인 단속 80개소, 경미한 단속 108개소, 단속제외업소 86개소인 바 거의 모든 업소가 심야영업, 접대부 고용등 탈법업소인데 형식적이고 실적위주 단속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강력 시정요구 업주와 유착될 수 있는 소지 없애기 위해 1년이상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을 요구됨(감사실 감사후 시정)</li> </ul>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굴착공사 마무리를 적법한 공법에 따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여 많은 하자가 발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벽한 원상복구 방안강구 시행 (구의1동 전체 '97년도 공사)</li> </ul>	도 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체증 유발하는 불법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들이증가하고 있는 실정 (사전 예방조치도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입간판 업소가 경미한 과태료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태료 대폭적인 인상 요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 요구</li> </ul>	건 설 관 리 과

이석봉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 국유재산, 구유재산의 변상금 부과금액 과다책정으로 서민부담이 많음	• 변상금액 재조정 요망	재 산 회 계 과
• 주민민원 사항을 구의원이 서면 접수하였음에도 회신이 없고 민원처리도 지연됨	• 즉시 시정요구	도 로 과
• 19번 버스 지나는 간선도로변 보도경계석을 낮게 설치하여 차량이 보도에 쉽게 진입하고 적치물과 오토바이 등으로 인하여 보도이용 주민이 불편함	• 강력 단속 요망	도 로 과
• 아차산 주차장과 동의 초등학교 옆 불법 노상주차 단속 부실	• 강력단속 요망	교 통 지 도 과
• 구내식당 이용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함	• 구 예산 대폭 증액 요망	총 무 과
• 동 일요민원처리 문제 부녀회원 등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됨	• 이 제도 폐지 고려 요구	총 무 과
• 각 동 새마을문고 예산 부적정	• 예산증액 요구	사 회 진 흥 과
•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각 동 방역사업 예산 부적정	• 예산증액 요구	사 회 진 흥 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문제	• 모두 혜택받을 수 있게 대출요망	지 역 경 제 과
• 각 동 하수도 준설작업 지연		하 수 과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중개인을 허가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속한 준설 강력 요구</li> <li>명예퇴직 등으로 실업자 해결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할 용의</li> </ul>	지 적 과

김기섭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등 전주 자동급수화분 설치 적극 장려 및 대주민 홍보 철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가로등 전주상에 자동급수 화분을 사업주가 광로료, 점용료 등을 부담하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정확한 실정을 아차산 메아리,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 주민홍보를 충분하게 하기 바람</li> </ul>	도 로 과 도 시 계 획 과

이동철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차장 폐수정화시설 가동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세차장에서 폐수정화시설 가동하지 않고 방류하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한 단속바람</li> </ul>	환경보전과

김선갑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대장 정리 및 공평부과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정리 철저 및 형평성에 입각한 부과 요망</li> </ul>	건축과

최근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건축, 주택분야 담당공무원들이 열의는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원활치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과에서 관내 건축사 사무소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설재 및 가설물 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반건축물에 관한 교육등 전문성을 높일수 있는 별도의 조치 요망</li> </ul>	건축과

최근식 의원

감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시정요구, 건의, 기타)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주차구획선안의 이면도로상 무단적치물 방치(업무소관 불확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가 서로 업무소관이 아니라 회피하니 시정바람</li> </ul>	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계장의 업무파악 미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추경 폐기물처리비 360만원 모름 업무 정확하게 숙지 요망</li> </ul>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노점상 관리소홀(332개소) 노점상 인적사항 파악 미흡(노점상 중 주택보유자도 있고 권리금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방침대로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운영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요망</li> </ul>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유2동 육갑문입구 일방통행 해제의 문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지방경찰청의 재검토 요청으로 우리구 교통행정과와 재협의 차선책 강구 재요청 할 것을 건의</li> </ul>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동 노인정 비품인 TV, 냉장고 등이 작동 불능상태로 방치됨. 독지가의 지원만을 바라는 현재의 관행은 문제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하여 지원 요망</li> </ul>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유2동 7-17 공구 지하철역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가칭 자양역에서 독섬유원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광진구에서는 자양역을 표기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요구</li> </ul>	지하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 입소대상 선정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수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 바람</li> </ul>	가정복지과



# 제5장

## 구청질문



- 제1절 제1대 의원 구청질문
- 제2절 제2대 의원 구청질문

gwangjin



# 제5장 구정질문

## 제1절 제1대 의원 구정질문

### 1. 총괄

구정질문이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쇄신을 촉구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의미있는 발언의 장으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제1대 광진구의회는 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분구로 인하여 분구이전 구정질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3회의 기간중 4일간 3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다.

#### 〈 회기별 질문의원 현황 〉

회기별	질문기간(일간)	질문의원수	질문의원명(질문순)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2. 11. 25 (1일간)	13	박원식, 신인용, 김춘기, 이재선, 권승현, 박영태, 최복수, 이금장, 이종학, 최태순, 허운희, 이성전, 김종환
제28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93. 11. 25~11. 26 (2일간)	10	신인용, 임동식, 이석봉, 김세환, 이재선, 백남식, 김영용, 김태식, 허운희, 김종환
제3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4. 11. 25 (1일간)	13	박원식, 임동식, 이석봉, 김세환, 백남식, 권승현, 박영태, 최복수, 김영용, 이종학, 최태순, 김태식, 이성전

## 2. 질문내용(요약발췌)

### 제1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92. 11. 25)



■ 질문 : 박원식 의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사를 할 때 혹시 내정된 가격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또 토지지가 상승원인과 토지평가위원회 조사지가를 현실에 맞도록 하향조정할 계획은?

▶답변 :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지가의 변동은 동 토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에 있는 구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가능하나 개발토지가격은 동과 구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열람을 득한 뒤에 구청장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사를 한다거나 내정된 가격에 맞춰서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질문 : 신인용 의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이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답변 : 임병순 건설국장

잠깐 주차용 스티커라든지,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특별회계로 바뀌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재원으로써 앞으로 향후 배수지라든지, 지하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 춘 기 의원

■ 질문: 김춘기 의원

이웃주민 민원제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건축한 것을 준공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답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적법한 건축물은 민원을 이유로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원이 발생 할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당하게 관리하는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 질문: 김춘기 의원

영세민의 현황과 책정기준, 영세민 중 임대주택 입주현황은?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우리구 영세민이 92년도 현재 2,981가구에 인원이 6,500명이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는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12월말까지 입주할 가구는 1,260가구가 되며 이것이 중계지구, 가양지구, 수서지구, 월계지구 등으로 모두 입주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영세민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원  
이 재 선 의원

■ 질문: 이재선 의원

5천만원 이상 공사 중 당초 공사기간 연기한 공사내역, 연기기간, 연기사유?

▶답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5천만원 이상 공사중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광장우수배수 배제펌프장이 공사기본설계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 14일까지 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말 까지 됐고 사근집하장 진입로, 콘테이너 하차장 설치문제도 6월 20일로 끝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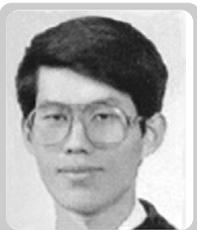
질문의원  
권 승 현 의원

■ 질문 : 권승현 의원

4년 동안 107건의 노인정을 시설하겠다고 해놓고 당해연도에 한건밖에 시설하지 않으면 언제 이 일을 할 것 인가?

▶답변 : 이보규 시민국장

92년도 15개소의 노인정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증·신축 3개소, 임차 3개소해서 6개소가 늘어났는데 노인정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의원  
박 영 태 의원

■ 질문 : 박영태 의원

구의수원지 확장공사에 따른 녹지훼손방지책은?

▶답변 :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이 공사는 아차산 정립회관앞에 서울시 상수도본부에 10만톤 배수지 신설공사로 91년 4월부터 93년 10월에 완공목표로 추진중 이며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도 10월경에는 훼손된 사방지에 대해서 전부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아울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조경사업비로 약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에는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질문의원  
최 복 수 의원

■ 질문 : 최복수 의원

광장동지역 2개 도로에 대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설명?

▶답변 : 임병순 건설국장

중장기계획은 이면도로의 정비를 통한 도로 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도록 순환기능의 강화로 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기본 계획으로 광장동 413번지 일대는 대동화학 부지로 조합주택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광장동 394에서 산 7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연도의 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질문의원  
이 금 장 의원

■ 질문: 이금장 의원

성동교 남단의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지하도의 건설계획은 갖고 있는지?

▶ 답변: 임병순 건설국장

서울시나 구에서도 성동교 남단에 대한 지하도 건설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으나 성동교 남단은 교통체증이 극심하므로 이 문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교통량의 조사 등 자문을 거쳐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해서 교통처리개선대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이금장 의원

성동구의 광고물현황과 허가대상 불법광고물현황, 또 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수입 및 위법광고물 과태료수입, 도로점용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현황과, 광고물과의 신설여부, 불법 첩지류에 대한 근절방안 대책은?

▶ 답변: 임병순 건설국장

광고물 현황으로는 옥상간판 외 10여개의 간판종류로써 총 1만 3,586개의 광고물이 있으며, 벽면간판, 돌출, 지주, 세로형간판 외에 3개 종류의 간판이 있으나 총 8,665개의 불법광고물이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14건에 2,227만원을 구세의 수입으로 거둬 들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첩지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생업소 업주 교육시 협의, 참석하여 불법 첩지류가 난무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중 학 의원

■ 질문: 이종학 의원

91년 11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유소설치 예정지 게시공고의 의미와 목적, 주유소허가 심의위원의 자격과 구성원, 허가제한 완화로 학교로부터 200미터 거리규정 사실여부, 주유소 인근주민의 재개발, 재건축 제약, 91년 11월 이후 주유소 동별허가건수, 동별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중단 현황, 앞으로의 대책은?

▶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서울특별시 고시나 석유사업법에는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됨, 주유소와 학교간의 거리를 200미터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 규정에는 관할 교육청장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의원  
최 태 순 의원

■ 질문 : 최태순 의원

행정정보공개를 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여 위원의 감시기능 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병석 총무국장

우리구에서는 구정현황과 주요공사 등 업무추진사항을 수록한 우리구 살림책자를 금년도에도 1만 5천부 발간해서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고, 성동소식 9만부, 성동화보 3,000부 구민생활안내 책자 2만부를 발간하고 연 2회에 걸쳐 구정, 동정보고회를 실시해서 구민의 의견을 청취,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허 윤 회 의원

■ 질문 : 허은희 의원

화양동 지역 일부와 송정동 화양시장 일대를 현실태를 존중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 답변 :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화양동에 대한 상업지구도 지역현황에 대해서 조사, 분석,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재 2000년대를 향한 중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사무국과 협의 조정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성 전 의원

■ 질문: 이성전 의원

새마을문고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서를 보급해주는 등 지역주민의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대책은?

▶답변: 김병석 총무국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는 보관된 도서수 부족, 주민이용홍보 부족 미흡함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점검해서 문고회원 배가운동, 주민홍보, 양서 바꾸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중 환 의원

■ 질문: 김종환 의원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할 지역현황과 91년도 서울시공고 제103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해제된 지역현황과 동일한 여건을 지닌 지역을 해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91년도 4월에 완료된 서울시 재정비계획에 의거 전문주거기능을 상실한 능동로 및 구의로, 천호대로, 광나룻길, 간선도로변을 해제한 것이며 동일한 여건을 지닌 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유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시에 반영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제1차 · 2차 본회의 (93. 11. 25~26일)



질문의원  
신인용 의원

▶ 질문 : 신인용 의원

공원녹지 상용인부를 증가할 계획은 없는지, 공원녹지의 93년도 예산집행은 얼마인지?

▶ 답변 :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우리구 공원녹지현황은 공원 79개소에 녹지대가 55개소, 35만평방미터, 가로수가 39개 노선에 1만3,000주가 있습니다. 구 재정 형편상 지금 56명이 확보돼서 관리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15억 5,000만원입니다.



질문의원  
임동식 의원

■ 질문 : 임동식 의원

예산편성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 성동구 건전 재정육성을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김태상 재무국장

내년부터는 지방세 부과세 체납 징수 등 모든 것을 완전히 전산화 함으로써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납하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서 자체세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석봉 의원

■ 질문 : 이석봉 의원

우리 성동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타구에 비해서 보급률에 비하여 어떠한가?

▶ 답변 : 이보규 시민국장

우리구는 전국 가구수의 16%이고, 10%미만 구가 5개소이고, 20%미만 구가 6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 세 환 의원

■ 질문: 김세환 의원

우리구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주민만족도가 떨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이종길 총무국장

민원서류 중 관계부서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민원 입장에서는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재 선 의원

■ 질문: 이재선 의원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된 시기와 사유는?

▶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91년도 5월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는데, 91년 12월 12일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600평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던 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단이 되어 이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일반복지관 성격인 청소년, 부녀, 노인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계획 변경, 준공이 이달말 이면 될 것입니다.



질문의원  
백 남 식 의원

■ 질문: 백남식 의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노인정 신축에 대한 계획은?

▶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노인분 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증축 및 신축에 대해서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축 및 증축 기준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 영 용 의원

■ 질문 : 김영용 의원

주차단속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방향은?

▶답변 : 송선국 건설국장

주차단속 원칙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에 대해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지적하신 대로 구획선안에 있는 데까지 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태 식 의원

■ 질문 : 김태식 의원

우리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 갖고 있는가?

▶답변 :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위법된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축물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허 운 회 의원

■ 질문 : 허운회 의원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답변 : 김태상 재무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어서 과거 관행적인 예산을 좀 더 절약을 해라, 예산절감을 많이 해라 해서 비생산적인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문의원  
김 종 환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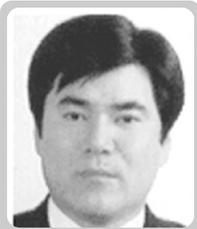
■ 질문: 김종환 의원

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처리내용은?

▶ 답변: 김태상 재무국장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의한 국·공유 무상양도 그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전에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기능을 도시계획시행자가 설치했을 때에 새로이 설치한 비용에 상당하는 종전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공공시설이 대체된 사례가 없고 타 구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7회 정기회 제1차 정기회(94. 11. 25)



질문의원  
박 원 식 의원

▶ 질문: 박원식 의원

정화조처리업체의 현황과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분뇨수거 후 확인이 확실 히 이루어졌는지,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대행업체는 종업원 62명에 분뇨차량 5대, 정화조차량 15대입니다. 수거분뇨는 전부 분뇨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이것은 환경오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분뇨처리장으로 100% 이송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임 동 식 의원

■ 질문: 임동식 의원

도시가스공사업체 현황 및 성동구가 극동가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 답변: 이보규 시민국장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공사업체는 270개소이고 우리 관내에는 2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체에 서울, 대한, 극동, 강남, 한진이라는 5개 도시가스가 있어 우리 성동구 등 7개 구청이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부권에 극동도시가스가 있음



질문의원  
이 석 봉 의원

■ 질문 : 이석봉 의원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를 기존 동사무소에서 구청토목과로 변경한 이유는?

▶답변 : 송선국 건설국장

지난 7, 8월 장미기간동안에 다소 보수의 지연으로 인해서 각 동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여론이 다시 동에 환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현행체제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각 동에 환원해서 각동장 책임하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세 환 의원

■ 질문 : 김세환 의원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민원들이 자주 찾는 건축과 등에 대하여 사무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민원처리에 공정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 : 이종길 총무국장

밝은 구정과 친절한 대민봉사를 구정의 일환으로 민원들이 내방이 많은 세무종합민원센타를 사무실로 개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부서를 개방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질문의원  
백 남 식 의원

■ 질문 : 백남식 의원

쓰레기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름철이면 운동네에 악취가 진동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답변 : 이보규 시민국장

쓰레기 수거는 최소한 3일에 1회이상 수거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늦장수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권 승 현 의원

■ 질문: 권승현 의원

구의2동 51-2와 6-97호 일대를 92년부터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할 예산과 공사를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답변: 임병순 건설국장

구의2동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초에 보상비 4억을 투자해서 145m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95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것이고 나머지는 2000년대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영 태 의원

■ 질문: 박영태 의원

능동 58번지, 77번지 일대의 주거전용지역의 완화여부는?

▶답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구의동 77번지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능동 58번지는 당초에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 10월1일자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의원  
최 복 수 의원

■ 질문: 최복수 의원

새마을금고에 공과금 등을 유치할 의향은?

▶답변: 이보규 재무국장

동사무소나 구청의 모든 자금은 재무회계규칙 제63조1항 및 3항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에는 아직은 새마을 금고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질문의원  
김영용 의원

■ 질문: 김영용 의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 확대방안과 취로사업 노임인상 방안은?

▶ 답변: 신수목 시민국장

새마을 취로사업비가 현재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시비보조도 95년부터 재해발생이라든지 특별 취로시에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되어있어 구 자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다소 어려움이 수반되며 노임인상은 22개 구청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의원  
이종학 의원

■ 질문: 이종학 의원

우리구 도시가스 굴착복구공사를 점검해 본 결과 공사한지 몇달 되지 않아서 다시 굴착하는 공사현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송선국 건설국장

천재지변이나 가스폭발, 상수도 누수시에는 예외규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굴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현장 조사를 하여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태순 의원

■ 질문: 최태순 의원

민선시도지사가 선출되면 도시개발권 등이 지자체로 위임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구상은?

▶ 답변: 김효수 도시정비국장

중곡, 구의, 화양, 군자, 금호, 도선지구 등 6개지구를 중심지구로 개발을 해서 상권을 형성하면서 세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도선지구인 왕십리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단선, 국철이 환승지역으로써 부도심권의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시가지 조성지구로 추진중에 있는 뚝섬지구와 연계토록 해서 성동구의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 태 식 의원

■ 질문: 김태식 의원

우리구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 기금 예산액은?

▶ 답변: 이보규 재무국장

현재 총 기금은 3억 4,600만원이고 기금잔액이 5,300만원입니다.



질문의원  
이 성 준 의원

■ 질문: 이성전 의원

우리관내에 퇴폐이발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퇴폐업소수와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신수목 시민국장

10월말 458개의 이발소가 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 했다던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곳 등 허가 11곳, 영업정지 8곳, 시설개선명령 4곳, 경고 35곳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겠습니다.

## 제2절 제2대 의원 개정질문

### 1. 총괄

제2대 광진구의회는 정기회 2회, 임시회 6회의 기간중 8일간 모두 연 97명의 의원이 개정질문을 하였다. 회기별 질문의원은 다음과 같다

#### 〈 회기별 질문의원 현황 〉

회기별	질문기간(일간)	질문의원수	질문의원명(질문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6. 3. 7	13	김광일, 이효영, 추윤구, 최근식, 김영환, 유승주, 이동철, 고명곤, 이창비, 김기섭, 박래학, 허운희, 김종환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6. 6. 21	12	김광일, 이효영, 추윤구, 박유관, 김선갑, 이동철, 이상철, 이창비, 전영동, 한중석, 박래학, 김종환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6. 6. 22	13	신인용, 설성환, 이석봉, 최근식, 최금손, 유승주, 고명곤, 김영용, 김기섭, 김태식, 노승균, 이형태, 이성전
제14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96. 11. 28	12	김광일, 박유관, 김영환, 유승주, 김선갑, 고명곤, 이창비, 전영동, 한중석, 노승균, 박래학, 이형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7. 9. 29	12	이효영, 설성환, 추윤구, 김선갑, 이동철, 이상철, 전영동, 김기섭, 김태식, 노승균, 박래학, 김종환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97. 9. 10	10	신인용, 최근식, 최금손, 유승주, 김선갑, 이금장, 김영용, 한중석, 이형태, 허운희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97. 12. 8	12	김광일, 이효영, 설성환, 추윤구, 박유관, 최근식, 최금손, 이동철, 고명곤, 이상철, 전영동, 이성전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8. 4. 13	13	설성환, 이석봉, 박유관, 최금손, 유승주, 이상철, 이금장, 이창비, 김기섭, 한중석, 노승균, 이형태, 김종환

## 2. 질문내용 (요약발췌)

### 제8회 제2차 본회의(96. 3. 7)



질문의원  
김 광 일 의원

#### ■ 질문 : 김광일 의원

광진구는 동2로에 의해서 성동구와 구분되어 있으며 자연적 지정학적으로는 종랑천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종랑천의 양편에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제방에 의해서 뚝방이 형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이용되지만 종곡동 주민들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낭마장으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사유지나 공공용지에대한 확실한 경계구분 측량을 실시하여 진입로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 ▶ 답변 : 송선국 건설국장

종랑천제방 상단에 천호대로에서 동부고속화도로 진입로길에 도로가 설치되어 산책로 복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군자교 우측 가스충전소에서 종곡빗물펌프장 사이에 제방도로 하단에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측량하여 주민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효 영 의원

#### ■ 질문 : 이효영 의원

서울시 하수도 조례 제2조2항 공공하수도 관리 범위를 보면 한강변 차집관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취수장이 3개소가 있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을 단서조항에 의거 시장의 관리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광진구에서 관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관리에 대해 시에서 관리토록 할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한강변차집관로는 2개구 이상의 하수가 차집되어 처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시장이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하수는 차집되고 있다고 시장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 및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추 윤 구 의원

■ 질문: 추윤구 의원

재해없는 안전한 광진을 목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의 재해위험과 주변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신고용 시민안내판 설치와 도로점용허가구역 표시제도를 종전과 달리 노란색 유성페인트로 구획선을 표시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노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황인무 건축과장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제정하고 있는 사항 이므로 아직까지는 현장에 표시판과 안내문 부착되는 것이 사실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최 근 식 의원

■ 질문: 최근식 의원

지난 5월 17일날 광진구발전위원회가 공식출범하여 광진구 장기 발전방향의 설정,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21세기 구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심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구의회는 이 기구가 발족한 다음에나 알았습니다.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거수기 의회가 아닙니다. 집행부 정책생산의 과정들과 구의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함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안은?

▶답변: 임광빈 총무국장

발전위원회는 광진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추후 주요결정시에는 사전에 구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영환 의원

■ 질문: 김영환 의원

광장동 산 370번지 일대 4필지 약 3,000여 ha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이 계속이므로 심한 경사와 바닥이 깊게 고랑이 되어 매립하여 잘 다듬어 놓아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약 200대가 주차 가능하며, 그 위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며, 주차장과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공사비의 총당과 장래에 구세확충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 답변: 임광빈 총무국장

광장동 370번지 일대 구릉지를 복개를 하여 메워서 복지관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연구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유승주 의원

■ 질문: 유승주 의원

우리구 관내의 도시가스에 대한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구청 관계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의 안전에 관한 점검은 과연 몇회나 하였으며 문제점 발견시 대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장수암 시민국장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정압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 법령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2년에 1회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일주일에 1회 작동상황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작동상황 점검은 6월 14일 실시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질문의원  
이동철 의원

■ 질문: 이동철 의원

각종 공사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공사장의 안내표시판 게첨과 공사의 명예 감독관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각종공사에 인근 주민대표자나 출신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낭비와 불필요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답변 : 송선국 건설국장

각종 공사장에 명예감동관과 안내판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이 추천하는 명예감독관에 한해서 임명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간판은 각 현장마다 공사착수하기 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의원  
고 명 곤 의원

■ 질문 : 고명곤 의원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입니다. 기획 및 예산업무의 중요성과 부서별 업무 조정 및 통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모두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일반 행정분야의 계획은?

▶답변 : 정영섭 구청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이 주인이므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구민이 힘을 합해서 자족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직에 경제성과 능률성 그리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줄속으로 개편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함을 기하고 전문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창 비 의원

■ 질문 : 이창비 의원

서울시가 관리감독 해야 할 하수시설을 왜 광진구만 유일하게 맡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앞으로 서울시로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한강변 차집관로는 2개구 이상의 하수가 차집되어 처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시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하수는 차집되고 있다고 시장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 및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기 섭 의원

■ 질문: 김기섭 의원

광진구가 쾌적하고 안락한 자치구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광진구의 재정확충 시책과 현황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현년도 세입별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현황 그리고 체납 징수실적 및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 답변: 신수목 재무국장

현재 9,900건에 19억 9,8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년도 것이 8억이고 과년도 것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 교통범칙금, 규격봉투 판매대금, 변상금 등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체납고지서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서를 주고 독려하였으며 그 수입은 이달말까지 하면 다음 12월말이 되면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세입 증대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래 학 의원

■ 질문: 박래학 의원

광진구에는 구립과 사립을 합하여 모두 43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중 구립이 22개소, 사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노유2동은 구립노인정이 1개소, 사립노인정이 3개소밖에 없으며, 또한 탁아시설 현황을 보면 구 전체의 어린이집 등 민간 보육시설이 40개소, 놀이방 등 민간보육시설이 35개소, 구립보육시설은 6개소가 있지만 노유2동은 구립 탁아소는 없고 사립보육시설이 단3개소 밖에 없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인 노유2동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설립계획은?

▶ 답변: 장수암 시민국장

우리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중곡1동, 2동, 능동, 구의1동, 2동, 자양1동, 2동, 군자동 등 9개동에 사실상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시설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의원  
허운회 의원

■ 질문 : 허운회 의원

16개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등 고장민원을 주민이 접수하여도 각 동 담당자는 이를 즉시 수리내지 시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간단가로 계약을 맺은 보안등 수리업체는 보안등 1개 수리에 보수가 2만 1,88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여러개를 접수받았을 때에 일괄수리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보안등 수리는 동장 책임하에 업자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즉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번 수리용역이 2만 1,000원이기 때문에 한두 대일땀 즉시 수리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종환 의원

■ 질문 : 김종환 의원

1.6월 중순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적법한 방법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과도기의 임명제 구청장이 초대 민선구청장 임기개시 직전에 작성하였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지 않아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 답변 : 임광빈 총무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나 기타 우리구의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시기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작성을 해서 시나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11회 제2차 본회의(96. 6. 21)



질문의원  
김 광 일 의원

■ 질문 : 김광일 의원

군자동과 중곡1동을 이어주는 군자지하도는 편도 4차선의 천호대로를 건너는 중요한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지하도의 조명이 어둡고 지하도 출입구의 양쪽의 가로등 역시 밝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송선국 건설국장

현재 지하보도 조도 측정결과 당초에는 15럭스였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감이 있어서 나트륨으로 해서 50w를 100w로 해서 11월25일 개량해서 조도를 50럭스로 향상시켜서 지금은 굉장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이 효 영 의원

■ 질문 : 이효영 의원

한강변 차집관로가 역류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광장동 등에 대단위 아파트등의 건립과 생활여건 수준이 향상되므로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차집관로의 현재 용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향후 계획은?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구의정수사업에서 배출수 전용관로 공사가 6월말경 완료되면 배출수의 차집관로 용량에 문제가 없으며 대단위 아파트 증가 및 생활향상 수준으로 상수도 사용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하여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량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추 윤 구 의원

■ 질문 : 추윤구 의원

광진구에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수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했을 경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외에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 되도록 한 현행 건축물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것은 몇 건이고 추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황인무 건축과장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므로 동 위헌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는 계속 하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통보가 97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95년 3월 1일 이후 우리구가 개청된 이후에 현재까지 적출된 무단 용도변경 적출 건수가 총 217건이며 현재까지 형사고발한 것이 87건이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법 유지관리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유 관 의원

■ 질문 : 박유관 의원

노인복지분야의 사업을 보면 노인봉사 활동시 노령수당지급, 노인정 지원이 거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투자사업이거나 일괄성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인복지를 확보하여 경로호친의 전통적 윤리의식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답변 : 장수암 시민국장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하며,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활동은 주1회 하고 있으며 할머니 봉사활동과 동별 토요서당은 매주 실시하게 되며 한문교육 운영은 2회 노인건강 진단은 연2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선 갑 의원

■ 질문: 김선갑 의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거의 피동적인 사고에서 능동적인 사고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세목이 이양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외수입은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 및 대책은?

▶ 답변: 신수목 재무국장

우리구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락세원을 발굴하며,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며, 전 직원을 활용하여서 체납을 징수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동 철 의원

■ 질문: 이동철 의원

프라임아파트와 테크노마트21 공사장 경계에 폭 15M 길이 40M의 큰도로와 연결되는 길에 일방통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을 지정한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1,600세대 주민의 편의를 담보로하여 어느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테크노마트21세기 건축허가시 서울시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해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97년 7월달에 동부경찰서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없고 해서 재차 촉구할 것이며 이 도로가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상 칠 의원

■ 질문 : 이상철 의원

학교폭력추방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지킴이 125명에 대한 구청장의 임명장을 주 어 학교폭력을 신고와 선도를 통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활동실 적과 중간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단란주점의 불법화에 대한 단속실태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흥기 총무국장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민관 및 학교주변 청소년 관련 업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 관련 업주들이 공감대를 형 성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위하여 청소년 지킴이를 지정하여 학교폭 력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창 비 의원

■ 질문 : 이창비 의원

수배전반 교체시 오·폐수가 한강으로 방류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 으면서 예비수배전반을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현재 수배전반 시설이 87년 8월 당시부터 예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비수배전반이 타 시설에도 하나도 지금까지 시 설한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비수배전 반을 설치를 본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전 영 동 의원

■ 질문 : 전영동 의원

자양동 로얄아파트 재건축 시행으로 현재 통행로 노폭이 6m인 도로 인접에 아 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을 허가해 주신 경위와 4m 소방도로에 로얄 아파트 25층을 허가하므로 양측 일반주택들의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 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을 예측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처리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자양동에 있는 도로들은 대개 6m나 8m 이런 도로가 많은데 강변에 있는 도로는 6m이기는 하지만 강변 바로 앞에 있는 큰 도로하고 보태가지고 전용도로로 보고 있어서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재정리가 되면 도시전체를 관리계획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규제할 수 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의원  
한 중 석 의원

**■ 질문 : 한중석 의원**

지자체의 탄력성 제고와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다단계적인 개선조직을 바꾸고 행정편의상의 동을 법정동, 광역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획기적인 개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김흥기 총무국장**

행정동은 인구나 면적을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구 5만 이하를 1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광역화나 출장소 운영문제는 전국적인 시군구, 읍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정부주관 차원에서 구단위 추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질문의원  
박 래 학 의원

**■ 질문 : 박래학 의원**

노유2동은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에는 200평 내의 면적을 가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여건에 맞는 100평이상 규모로 된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은?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주차난 완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비지원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단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최소면적이 200평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므로 100평 내의 소규모 부지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서 부족한 것으로 사료

되나 옆 부지와 합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좋은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종 환 의원

■ 질문: 김종환 의원

도로굴착복구가 지체되고 복구공사 감독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탁자의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인가? 본 의원은 광진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2조 업자위탁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 답변: 송선국 건설국장

금년에 3월 15일날 시장방침에 의해서 전문기술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6월 15일 날 채용해서 중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총 3명이 현재 도로굴착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법조례 문제는 96년도에 폐기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96. 6. 22)



질문의원  
신 인 용 의원

■ 질문: 신인용 의원

구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의 사전협의 없이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앞으로는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 정영섭 구청장

의회와 집행부는 법에 정한 상호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는 상호 견제 기능과 상호 협력을 통한 보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례에 의한 명문화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므로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답

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가 됩니다.



질문의원  
설 성 환 의원

■ 질문: 설성환 의원

중곡1동과 중곡3동과 접한 중량천은 하천의 양면으로 넓은 하천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특히 골목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중곡1동, 중곡3동 주차문제는 해결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이곳에 대한 조사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향은?

▶ 답변: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 치수과에 건의를 하였는데 본청의 의견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다른곳 보다 면적이 작으며, 진입로를 낼 수 없으며 동부간선도로가 너무 얇게 지나가기 때문에 밑으로 터널을 뚫을 때는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장 대신 주민체육공간을 할 수 있도록 중량천 고수부지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질문의원  
이 석 봉 의원

■ 질문: 이석봉

현업부서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을 건의합니다. 실제 주민과 가까이 접촉하는 활동부서 보다도 활동부서를 뒷받침하는 지원부서가 오히려 인사 등에 유리하므로써 공무원들의 현업부서기피로 인한 사기저하로 행정경쟁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답변: 이유택 부구청장

조직개편안을 해서는 6개월이상 업무진단과 인력진단을 하고 분석해야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여서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근식 의원

■ 질문 : 최근식 의원

실질적인 보육수요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진보적인 점진적인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은?

▶ 답변 : 장수암 시민국장

민간보육시설은 영아보육을 기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교사 인건비 및 보육아동의 간식비 지급 등은 재정적인 밀받침이 안 되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금손 의원

■ 질문 : 최금손 의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생물발효방식, 고속발효방식,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오리사료의 활용 등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건설할 의사는 없는지?

▶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체계를 개선하여 4.5톤 압축차량 두 대로 수거전담반을 운영, 경기도 양주군 소재 한삼농장에 2,000세대에서 배출되는 하루 1톤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유승주 의원

■ 질문 : 유승주 의원

관공사의 문제점으로 공개경쟁입찰 낙찰자의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관행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감독관의 불성실한 자세가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세 번째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함께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이 복합건물은 영선업무 담당과 노인업무 담당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축시 부실공사라는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향후 영선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도급문제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 청내의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고 명 곤 의원

**■ 질문: 고명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급속한 욕구증대는 사회복지 업무의 다양성과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 특히 가정복지 부녀복지 중심에서 아동복지 노인복지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종 지원제도의 선정자를 객관성있게 선정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답변 : 장수암 시민국장**

복지사회로 가기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지원제도의 선정자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영 용 의원

**■ 질문: 김영용 의원**

96년도 예산안은 본격적인 민선체제의 첫 작품으로써 관선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지난 관선시대의 사업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담긴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 행정철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신수목 재무국장**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것과 같이 본격적인 민선체계에 걸맞게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경영개선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김기섭 의원

■ 질문 : 김기섭 의원

광진구민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 현황과 판매대금의 사용내용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장수암 시민국장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판매된 사항은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규격봉투 판매량은 1,189만5,000매를 판매해서 24억 800만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 용도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로 가지 않는 한 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구도 1일 약 300톤 처리하는 규모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태식 의원

■ 질문 : 김태식 의원

건축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인도는 건축자재를 무분별하게 쌓아놓고 있어서 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미관과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 깨끗한 광진을 위해 건축 시 무단점용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없는지?

▶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주로서는 물론 사정이 복잡하겠지만 도시미관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정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타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구에서도 도입을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노 승 균 의원

■ 질문 : 노승균 의원

정부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활용 비율은 어떤지, 동 조례 7조에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했다고 하면 몇건,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장수암시민국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종합대책으로 인근 농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 발효기 설치 및 재활용,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96년도에 575건에 3,7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7년 8월말까지 420건을 적발해서 3112만 5,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질문의원  
이 형 태 의원

■ 질문 : 이형태 의원

노인복지정책으로 현 시설의 관리실태가 엉망으로 흉물스러운 장소화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동 시설물의 화장실 우범화와 불결화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이 본의원이 알기에 5,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예산사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답변 : 장수암 시민국장

화장실 관리비용은 1,866만원으로 화장실 관리용 소모품 340만원, 고정식 화장실 설비용품비 1,490만원, 기타 34만원 등으로 사용되며, 화장실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중변소 현장에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이 성 전 의원

■ 질문 : 이성전 의원

능동사거리에 위치한 역사의 명칭이 군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법정동도 능동이므로 당연히 능동사거리역으로 명명되어야 함을 군지역으로 명명된 이유는?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91년 7월 30일자로 군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92년 12월 26일자로 건의하여 재심의를 하였는데 서울시민이 전체가 군자교라는 인

식이 강하기 때문에 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제14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96. 11. 28)



질문의원  
김 광 일 의원

■ 질문 : 김광일 의원

인력동원시 억지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 인원으로서 행사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이 몇 백명 동원된 인력보다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각종 행사는 억지성, 강제성 동원보다는 주민의 원성이 없이 자진참여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행사방법과 주민참여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홍기 총무국장

지방화시대가 도래해서 출발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 행사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강제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유 관 의원

■ 질문 : 박유관 의원

용마초등학교 앞 천호대로 상의 육교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호대로는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여 교통난 해소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시행되면서 부득이 육교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등하교하는 학생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하철공사로 인해 철거된 육교가 왜 아직까지 설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한 후 원상복구 할 계획이었으나 버스 중앙차선제 실시로 인한 승차대 및 횡단보도 설치로 보도육교 원상복구가 보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하철 건설본부에 보도육교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고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영환 의원

■ 질문: 김영환 의원

점차 파괴되는 환경문제도 이제 상식적으로 느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파괴,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등 이제는 지역에 국한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한 광진구 환경정책과 장기적인 대안은?

▶ 답변: 장수암 시민국장

우리구의 환경대책방향으로 크게 맑은 물 보존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그리고 각종 소음방지와 대시민 홍보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유승주 의원

■ 질문: 유승주 의원

광나루길 버스전용 차선의 불합리한 점과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나루길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은 현재 그 광나루길 중에서도 올림픽 대교에서부터 구의사거리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한 시간에 2개 좌석버스가 겨우 한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의시장앞에 전용차선이 그어져 있어 버스는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원들이 늘 시장앞에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자료로는 출퇴근 가장 러시아워 시간에 측정하였는데 10대가 채 안되는 현실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과 올림픽 대교부터 구의사거리까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광나루길은 현재 편도 3차선으로 그중 1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해서 24시간 운행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지하철 5호선 개통에 즈음해서 통과 노선버스를 폐선하고 단축하므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나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버스전용차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보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선 갑 의원

■ 질문 : 김선갑 의원

재정확충방안으로 광진구청 대지 4천745평의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건축된지 28년된 노후된 본관건물과 녹지대 일부를 활용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상복합건물을 유치하여 일부는 상가 및 사무실로 분양하고 일부는 집행부서와 구의회 의사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 답변 : 신수목 재무국장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구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고 명 곤 의원

■ 질문 : 고명곤 의원

공공사업분야의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와 편리성과 첨단성에서 많은 부분이 미진한 우리 광진구로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강화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날로 복잡해 가는 교통혼잡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복합단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답변 : 정영섭 구청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생활에 보다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직에 경제성과 능률성 그리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조직의 개편 및 행정의 복합단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창 비 의원

■ 질문 : 이창비 의원

구청장님의 역점사업 중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여성단체 지도육성, 보육대상아 동시설 확충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추진방안 및 실적은 얼마인지, 구청, 동, 보건소 근무 여직원 중 택아소 희망자가 몇 명이고 향후 계획은?

▶ 답변 : 정영섭 구청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

리 구에 있는 여성단체연합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여성활동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구청여성 직원 중 3~40명이 탁아소를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며 구청 공간이 협소해서 실무자간에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전 영 동 의원

■ 질문: 전영동 의원

로얄아파트 건축 허가시에 19층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에 25층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해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19층으로 허가낸 적은 없고요 94년 1월초 최초에 23층 3개동으로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일자형으로 계획되었지만 그걸 탑상형으로 고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설계를 28층 4개 동으로 신청을 하여서 25층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질문의원  
한 중 석 의원

■ 질문: 한중석 의원

중곡, 화양, 구의, 건대지구 중심별 상세계획의 추진실적과 전망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도시개발로 활기찬 역세권 중심의 자족도시와 사업계획은 주민전체가 희망하는 사항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가시화가 되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기대에 찬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김정배 도시계획과장

추진사항으로는 중곡·화양·구의지구 3개지구는 96년 7월 용역 발주하여서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용역결과를 97년 10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예정이며, 97년 10월 중에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서울시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98년 상반기 중에는 상세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노 승 균 의원

■ 질문 : 노승균 의원

광진구 관내 대로변에 있는 인도의 보도블럭과 고압벽돌이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보도블럭과 고압블럭을 1~2년이 멀다하고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에 6개 구간에 자전거 도로 구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는 다니지 않고 차량들이 주차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기존 노후 보도블럭 및 요철로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각 동 사무소에서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현장 조사하여 상대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한 곳을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95년 이후 97년까지 6개 노선 총 15.5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당초 목적인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보도상 주차를 불법이므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박 래 학 의원

■ 질문 : 박래학 의원

지하철공사 구간인 건대역에서부터 청담대교까지는 지하철 7-17공구이며 동부 건설에서 790여원의 공사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을 지하로 건설할 것인가 지상으로 건설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지상철은 서울시 계획대로 하고 대신 고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낙후된 지역을 광진의 중심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을 상세계획으로 추진하도록 11월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고 위 도시 개발도 활성화 될 수 있어서 명실공히 가보고 싶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형 태 의원

■ 질문 : 이형태 의원

준공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평성 결여에 따른 민원유발문제는 서민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계속적인 벌과금 징수로 가계부담이 증가하여 예방차원에서 형평과세와 아울러 행정지도를 통해 합법화 내지 양성화 조치가 요구되는 바,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비율은 어떻게 되고 미수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95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부담시키게 되어 있어서 95년도 37건부과에 32건 징수되었고 금년도에 102건을 부과시켰습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서 금년에 다 낼 것입니다. 양성화 조치는 부득이 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2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97. 9. 29)



질문의원  
이 효 영 의원

■ 질문 : 이효영 의원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된 단순 2단 주차기가 노후되어 기계식 주차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한 주차불편, 미관저해,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단 주차기 설치현황 2.기계식 2단 주차기 종류와 제작회사명 3.최초 2단 주차기 제작 설치연도와 당시 제작회사가 현재 존재되고 있는지 여부 4.건물 규모별 주차장 관리부서 5.위법사례와 현재 까지 행정조치 사항 등 문제점 및 대책에 질문코자 합니다.

▶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지적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개동 2단 주차기 설치현황은 587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2단 주차기는 유압식과 리프트식이 있는데 90년대 이후는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제작회사명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시로 형식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축물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000㎡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일괄해서 점검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5.현재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한 주차기를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방치되어 가지고 이걸 철거하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1대의 주차도 어렵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하고 안전한 주차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설 성 환 의원

■ 질문: 설성환 의원

보안등의 밝기 즉 룩스가 낮다는 것입니다. 광진구에 보안등은 50w 등을 사용함으로서 설치후 1~2개월이 지나면 그 밝기가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강남구에는 100w 짜리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도가 낮은 것을 선택한 것인지 혹은 규정대로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광진구에서는 보안등이 7,151등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수리하는 대수도 2,589건입니다. 수리비는 약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보안등 수명이 5,300 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범지역이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0w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질문의원  
추 윤 구 의원

■ 질문: 추윤구 의원

전국의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과 단체들을 위해 작은사랑 나누기운동을 전개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행정을 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광진구에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어떤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작은사랑 나누기운동을 펼치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 답변: 안순영 시민국장

중추절에 광진구에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시설 또한 단체 불우회원, 또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가족, 무훈수공자 가족, 노인회와 환경미화원 등의 어려운 데를 골고루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명절 때 지원해 드렸습니다. 중추절 위문을 실시해서 온 구민이 더불어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정중히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의원  
김 선 갑 의원

■ 질문: 김선갑 의원

세수대책문제로 현재 지방세법이 세목이양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개정될 전망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구수입을 늘리려면 부서별로 세원확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기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신수목 재무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현재 체납액은 17만건을 징수를 해서 62억을 징수했습니다. 우리구는 부구청장님이 체납 총책임자가 되어서 체납독려기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동 철 의원

■ 질문: 이동철 의원

골목길 주차과태료 부과에 대한 주민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차과태료 부과 골목길 내 무질서한 주차를 지양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질서verb로 알고 있으나 지나친 단속은 과태료 부과를 마치 세외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듯 오해를 갖게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민에게 필요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고 명분 없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영섭 구청장

주차단속 행정이 현장책임 행정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속요원이 공익요원과 여직원으로 된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신뢰성 문제는 여러차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감안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상 철 의원

■ 질문: 이상철 의원

현수막 전시행정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하여 효용가치를 잃고 있으며 단순한 구호 하나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사회의 갖가지 문제들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결론이며, 오히려 치밀한 계획을 놓고 설명하고 토론하며 구민의 이해를 얻는 프로그램 행정시대라는 충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김흥기 기획실장

모든 주민에게 불특정 다수인 모든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나 야차산 메아리 등 모든 것을 통반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꼭 그 때에 주민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은 어차피 플래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라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더 걸러서 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전 영 동 의원

■ 질문: 전영동 의원

광진구관내 일반 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해 본결과 일반 상가주택 건축시 적정 차량대수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공된 건물내의 주차장들이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복원시킬 계획은?

▶ 답변: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의 건축허가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난 뒤에도 현재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 점검계획에 따라 해마다 두 번 정도 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전용해 쓰다가 시정지시를 내려가면 원상복구 합니다. 원상복구 해 놓고 또다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다시 사용하고 있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 주차장을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직제도 조정하는 걸 건의하였습니다.



질문의원  
김 기 섭 의원

■ 질문: 김기섭의원

광진구의 쓰레기 배출량 및 쓰레기 처리비용 행정장비 등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 현황과 종량제 홍보에 따른 향후 대책은?

▶ 답변: 장수암 시민국장

우리구는 30만 주민 등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일일 300톤 정도가 됩니다. 미화원들이 88대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태 식 의원

■ 질문: 김태식 의원

광진구 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내용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강변역 주변인 구의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센터의 설계, 착공여부와 추진실적 내용 그리고 개관식 또는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김흥기 기획실장

현재 구민에 대한 광진구 구민종합센터는 178평을 프라임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총 면적이 833평이 되겠으며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시공자를 선정하여 착공을 다음달 15일에 할 예정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98년 12월에는 지체없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노 승 균 의원

■ 질문: 노승균 의원

광진구 직위표를 보면 재무과장이라는 직위는 재산회계과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에서는 재무과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왜 우리구에 만 유달리 명칭을 바꿔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재산회계과로 부르기에 명칭이 조금 생소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줄 압니다. 재무과로 원상회복 시킬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권혁모 총무국장

직제개편 당시 체비지와 국공유지 관리업무가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 부서명칭을 재산관리와 회계관리를 복합한 재산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차후 직제개편 등 사유발생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래 학 의원

■ 질문 : 박래학 의원

우리 광진구는 교통의 요충지로 중요한 도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번,62번 버스종점 위치한 노유2동 70번지 71번지 72번지 73번지 일대는 밤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새벽이면 버스들의 시동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종점에 대한 지도방문과 매연 방출이 심한 버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그 지역에 새벽에 시동소음이나 매연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밤에 항상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벌금도 부과하는 방법도 병행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중 환 의원

■ 질문 : 김종환 의원

보건소사업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모두가 아니라면 보건소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근접이 용이해야 합니다. 각 동 특히 의료 혜택이 적은 동네 보건소 산하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형태 분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질문 : 문인홍 보건소장

보건의료에서 접근성 혹은 접근의 용이성은 양질의 의료공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므로 우리구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중에 예방과 치료와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조정토록하며,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97. 9. 30)



질문의원  
신인용 의원

■ 질문: 신인용 의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와 격변하는 환경에 적시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기구 체계가 업무성격별 기능별로 일관성있게 설계되어 중복으로 인한 예산인력 부서간 갈등 등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는 과감한 통폐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정영섭 구청장

지방자치시대에는 주민이 주인이므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구민이 힘을 합쳐서 자족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직에 경제성과 능률성 그리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줄속으로 개편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함을 기하고 전문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근식 의원

■ 질문: 최근식 의원

토지평가위원회는 구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의 하나인데 위원회에서 과표현실화에 대한 제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서는 과표현실화라는 과제에 역행을 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관련 조례를 바꾸든지 운영자제를 권고하든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조직권자인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답변: 권혁모 재무국장

광진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동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이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 금 손 의원

■ 질문 : 최금손 의원

유효 미생물발효제인 이엠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구도 이 처리체계를 우선 연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EM발효제 사용여부는 97년도 발효기 설치지역 및 위탁처리 시에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유 승 주 의원

■ 질문 : 유승주 의원

민간환경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광진구에 오존주의보가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기오염과 또한 가장 중대한 문제중의 하나인 한강변의 아파트 벨트화가 대기순환의 자연적인 현상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 답변 : 안순영 시민국장

광진구는 지정학적으로 아차산과 용마산이 막혀서 공기가 그리 넘어가지 못해서 스모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구의 정수장에 설치된 대기오염 경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위해 우리 지역의 환경위험 저감을 최대도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선 갑 의원

■ 질문 : 김선갑 의원

점유된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타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흥기 총무국장

97년도에는 국공유지 측량 및 도면화 사업에 예산을 1억 6,700만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한 광장동 지역을 제외한 우리 구 전 지역을 측량하는데는,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의원  
이금장 의원

■ 질문: 이금장 의원

요즈음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단속실적과 이러한 유해 업소들의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배순기 시민국장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등 불법, 불건정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건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에 대해서 퇴폐조장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김영용 의원

■ 질문: 김영용 의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음지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 재정에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청소사업비 자립도를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유희잉여인력 감량내지는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장수암 시민국장

환경미화원 증원은 철저히 억제하고 97년, 96년 퇴직하는 경우 등 자연 감소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역에서 운송체계를 직송체계로 전환해 가지고 쓰레기 물량과 장비, 차량의 감축 추진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한중석 의원

■ 질문: 한중석 의원

우리사회에 노령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자연발생적 치매노인이 점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은? 자양3동 구립어린이집은 305평의 넓은 공간에 건평은 겨우 119평입니다. 용적률 30%에 불과한 시설에 109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운영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의 만족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 안순영 시민국장**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우리구에서는 98년 치매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현황은 현재 구립 9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28개소 등 13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총 지원액이 6억 2,300만원 중 구립이 5억 3,900만원이고 민간보육시설에 97년에 8,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양동 구립어린이집 확장은 그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져서 대안으로 자양동 495번지 5호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 집을 짓고자 합니다.



질문의원  
이 형 태 의원

**■ 질문 : 이형태 의원**

화양동 30-1호 가족나무공원 어린이 놀이터는 낡은 놀이기구 일부교체와 그늘진 곳을 위해 식재를 하여 편안한 쉼터와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95년 5월 3일 착공 하여 96년 2월 10일 준공된 공원입니다. 식재 후 몇 개월 안 되어 가족나무 10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가족나무 한 그루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책임 재식수와 고무블럭을 재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김홍원 공원녹지과장**

일차로 고사목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고 현재도 가족나무 등 17주가 하자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이전에 흙을 바꾸든지 하여서 다시 고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나무 직경 10cm의 조달청 가격은 주당 4만 2,700만원입니다. 고무블럭은 접착방법을 개선, 보수해서 뜨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문의원  
허 운 회 의원

**■ 질문 : 허운회 의원**

각 가정에 정화조는 1년에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화조 청소와 관련 오수분뇨 수거업체에서는 0.75톤당 1만 6,840원씩만 받고 0.1톤 초과시 마다 1,100원씩 초과 수거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업체 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부르는게 값으로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도점검 및 정화조 청소직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울러 정화조 청소요금 징수와 관련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창구인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97. 12. 8)



질문의원  
김 광 일 의원

#### ■ 질문 : 김광일 의원

구청의 공공 공사시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 소규모 사업이라해서 하수관 공사, 뒷골목 포장 등 소규모 사업을 각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주의 토지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여 공사 시행이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 답변 : 정영섭 구청장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재정형편상으로 이것이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한 절차상의 문제도 일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효 영 의원

#### ■ 질문 : 이효영 의원

광진구 주차장 관리업무를 보니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도시정비국 산하 건축과에서 규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얻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중 20개 구청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광진구를 포함한 5개 구청만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행정적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관리가 소홀해 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지적하신대로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교통지도과에서 모든 주차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차장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전문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히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교통지도과로 일원화되어 가지고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과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업무가 체계를 가지고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설 성 환 의원

**■ 질문 : 설성환 의원**

우리 관내 일부 카센터에서는 1~2급 정비공장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차량 판도금 행위를 불법임을 알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판도금 작업으로 공기오염 수질오염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판도금 업소를 적발한 경우 적발하려고 노력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 무허가 차량판·도금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 조합측과 6회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8개업소에 8건을 적출해서 사업주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차량 판금·도금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추 윤 구 의원

**■ 질문 : 추윤구 의원**

광진구에서는 산을 중심으로 한 휴식공간은 아차산, 긴고랑, 용마산, 중곡동 등 산을 중심으로 한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아차산권역은 이미 구청에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권역 긴고랑권역, 용암사권역, 용마산권역 등산로를 정비하고 보안등 설치,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주차장을 확보 등 근교에 있는 산들이 이용하여 건강하고 명랑하게 아름답게 살아가 수 있도록 4개 권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답변 : 정영섭 구청장**

광진구는 분구가 되어서 광진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광진구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높여서 구민들이 자긍심과 애郷심을 갖고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박 유 관 의원

**■ 질문 : 박유관 의원**

능동 12동 일대는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린이대공원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있는데 인근주민들은 공해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주택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비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린이대공원에 행정적인 조치 및 이에 대한 계획은?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공원내 종이류 이외의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당해 공원측도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내 적지로 이전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전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단기대책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하여 이전시까지 매연발생이 없도록 소각로를 정상기능 유지 및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최 근 식 의원

**■ 질문 : 최근식 의원**

구의1동 240번지 3호 일대에 여러가지 이유로 입지가 부적당한 곳에 조합주택 설립을 허가하여 준 이유 및 조합주택설립 허가 시 입지심의회는 현장답사를 하고 심의하였는지? 주민이나 주민대표인 구의원에게 아파트를 건립하므로 동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무시한 이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의를 무시하고 행정을 먼저 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정영섭 구청장**

유림통상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하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 거기에 19층 아파트를 신청한 바 있으나 주위환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행정의 묘를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최 금 손 의원

■ 질문: 최금손 의원

관내 음식점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계값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91%나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이나 환경관련 특별기금을 지원받아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기저리로 신용 융자해 주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배순기 시민국장

음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또는 특별기금지원 문제는 서울시 및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지원금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동 철 의원

■ 질문: 이동철 의원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진입하는 대형버스의 진입로를 올림픽대교에서 강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대2단지 아파트 사잇길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은 물론 차량소음으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청관계 관과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몇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 답변: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동서울터미널 강변북로를 이용토록 공문도 발송하고 구두로 권장도 했습니다만 강변북로의 교통량의 폭주로 인해서 지체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운영편의로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전반적인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해서 버스를 강변북로쪽으로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고 명 곤 의원

■ 질문 : 고명곤 의원

정보화분야의 질문입니다. 문명의 기계화로 불리는 컴퓨터는 산업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 행정의 정보화를 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저변에까지 정보화 문명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체계의 변혁을 수반하는 것이고 정보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보사회의 정보문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구청의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구청과 동 조직에 경영진단을 실시하실 계획은?

▶ 답변:정영섭 구청장

조직을 너무 성급하게 줄속으로 개편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함을 기하고 전문기관과 여러 구민들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상 칠 의원

■ 질문 : 이상철 의원

지하철 7호선이 건대역에서 강남쪽으로 연장되면 거기에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공무원이었다고 그러면 설계도 변경을 종용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발로 인해 6개월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정배 도시계획과장

지하철 7호선은 아파트 준공된 다음에 계약 및 공사 착공했으나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이 지상층 시공을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능동로변 토지에 대해서는 96년 12월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역비를 배정받아 상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에게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지하철을 지상 시공토록 주민을 설득코자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원  
전 영 동 의원

■ 질문 : 전영동 의원

동서울 종합터미널은 허가당시 규모보다 지금은 한정된 장소에 시외버스, 고속 버스 등의 기차장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매연 등의 심각한 공해를 주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노상, 골목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동서울종합터미널은 28개 운수회사 있으며 4만명을 수용하는 종합터미널입니다.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기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운수업체에 차고지 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이 성 전 의원

■ 질문 : 이성전 의원

도시계획의 부적성,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여러곳에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수 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답변 :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간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쳐지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 한꺼번에 못하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제2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98. 4. 13)



질문의원  
설 성 환 의원

■ 질문: 설성환 의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퇴직자들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의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도 부활을 위해선 뒷따라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관계당국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실업자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업소 허가제도 부활을 위해서 구청이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구청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배순기 재무국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의 허가를 부활시킬 경우 모처럼 정착단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서적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허가부활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의원  
이 석 봉 의원

■ 질문: 이석봉 의원

주민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16개 동사무소에서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독서공간, 보육시설을 확대시켜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주민에게 과감히 개방하실 계획은?

▶ 답변: 정종원 시민국장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여유있는 공간이 있는 동사무소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박 유 관 의원

■ 질문 : 박유관 의원

능동지역과 자양3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능동지역은 순수한 주거지역으로서 낮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 주차구역내 낮에 손님이 세워둔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답변 :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시행구역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주차법 제8조2항 및 도로교통법 제30조, 제31조를 적용해서 견인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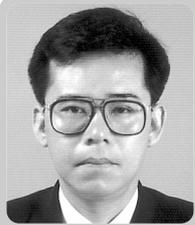
질문의원  
최 금 손 의원

■ 질문 : 최금손 의원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내놓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음식물의 물기를 하수도를 통해 무작정 방류할 경우 심각한 한강오염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까지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준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배순기 시민국장

하수도관계법규에 따라서 위법조치되는 사항으로 오수방류로 인한 악취 발생이나 민원문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힘쓰겠습니다.



질문의원  
유 승 주 의원

■ 질문: 유승주 의원

광진구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0%였으나 결산을 해보니 10월말 현재 10.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목적과 실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이러한 허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구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을 올하는 동결하는게 어떤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배순기 재무국장

체납급 징수의 보상금은 실적의 5%를 지급하므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액에 대한 세출 예산 반영에 불과하므로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체납지방세 징수가 실현되는 세수액과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적정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상 철 의원

■ 질문: 이상철 의원

묘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비해 화장비율이 20%에서 22%로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광진구의 화장비율은 얼마이며, 화장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구정 차원에서 민원서비스센터 운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정종원 시민국장

서울시에서도 그간 시립화장장에서 화장료를 받던 것을 지난 8월 12일부터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화장할 때 화장요금을 무료로 해서 매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적극 시행토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관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의원  
이금장 의원

■ 질문: 이금장 의원

현재 우리구의 차량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적 및 대수,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와 주차할 수 없는 주차대수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터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계획은?

▶ 답변: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9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은 7만 3,600대이고 주차공간은 총 5만 976대이며, 민간주차장이 2만 986개소에 4만 6,85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2,600대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입대상 부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해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창비 의원

■ 질문: 이창비 의원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하루 13만명의 교통인구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은?

또 테크노마트 건물 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공사 감리감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테크노마트 지하 1층과 2층 가격파괴점 영업을 허가 취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 답변: 정영섭 구청장

테크노마트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의원에 대한 동서울터미널 교통에 대한 기본 흐름이나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을 그곳에 하도록 해서 그동안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TIP 사업이 관철이 되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이 와서 그동안 경찰과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의원  
김 기 섭 의원

■ 질문: 김기섭 의원

자양동 474번지 4호 동일빌라 건물이 옆에 아파트 공사와 자양동 227번지 220호 건국대학 총동문회관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균열과 또 소음으로 진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고압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변: 이유택 부구청장

우리 내부에서도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감사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통해가지고 자세수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대민친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한 중 석 의원

■ 질문: 한중석 의원

구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의 수용능력 및 이용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우리 지역사회도 예외없이 IMF체제 이전과 이후의 생활양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위탁 아동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그나마도 현상유지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관?민 시설의 수용능력과 이용현황을 비교하여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종원 시민국장

우리구 보육시설은 직장, 민간, 구립을 합해서 총 144개가 있고 수용능력은 4,272명으로써 전체 보육율은 대상수의 47.5%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민선 이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까 합니다.



질문의원  
노 승 균 의원

■ 질문 : 노승균 의원

광진구 화양동 관내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텍사스촌이 42개소 준비하게 늘어져 있어 우리 구의 망신은 물론 대학가에 학생들에게 탈선을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의 합동단속으로 이제는 말끔히 정리된 거리를 보게 되는데 일부 가게에서는 무분별하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화양리의 그 골목을 재개발하여 저렴하고 깨끗한 음식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저렴하고 깨끗한 음식물 문화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안순영 시민국장

이 지역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곳에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문화도 싸게, 저렴하고 깨끗하게 하는 음식문화가 되게끔 행정개선하고 업소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 거리가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싼 음식문화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이 형 태 의원

■ 질문 : 이형태 의원

화양동쪽 5번지 블록 인도에는 느티나무를 심기 위해 자리를 정하여 뚫으나 심지 못하고 밀봉한 곳이 20군데나 됩니다. 식수자리에 2m 이상의 하수관이 있어 심지 못하고 밀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옮겨서라도 그자에 심어야 배치가 맞고 미관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김홍원 공원녹지과장

이 구간 중 일부구간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 이설이 가능한지 또 예산문제 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식재여부를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질문의원  
김 중 환 의원

■ 질문: 김중환 의원

시정목표에서 1구 1도서관 설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립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여 이번 추경에도 설계공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관날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김흥기 총무국장

우리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전무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생활문화정보 제타로서의 역할과 도서관을 탈피하고 영화나 음악, 전시실 등 지역문화와 연계해서 지난3월 도서관 건립계획을 시청에 건의해서 시예산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7월중에 건설기술통역 사업 기술심사를 의뢰하고 8~9월중에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10월초에 실시 설계후에 금년도 안으로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6장

### 기타 주요 의정활동



- 제1절 결산검사
- 제2절 건의·결의안

gwangjin



## 제6장 기타 주요 의정활동

### 제1절 결산검사

#### 1. 개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지방재정 활동에 수반된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우리구 건전재정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매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금고의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 결산검사 현황 〉

회계년도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직업
1995년도	1996. 6. 28~7. 27(30일간)	대표위원 : 김선갑 위원 : 김순태 위원 : 김춘길	의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1996년도	1997. 6. 12~7. 11(30일간)	대표위원 : 유승주 위원 : 안재욱 위원 : 조두현	의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회계년도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직업
1997년도	1996. 6. 8~6. 30(23일간)	대표위원: 전영동 위원: 박영국 위원: 김종업 위원: 최재길	의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 2. 회계연도별 결산검사 결과

### (1)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 (가) 결산검사개요

##### 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광진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 2. 검사기간: 1996. 6. 28~7. 27(30일간)

##### 3. 검사대상: '95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 4. 검사위원

대표위원 김 선 갑 : 총괄

검사위원 김 춘 길 : 건설교통국, 시민국, 보건소, 감사실, 구의회사무국

검사위원 김 순 태 : 총무국, 재무국, 도시정비국,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 5. 검사사항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여부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 예산집행의 효율성

**(나)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미수납액 (나)-(마)	미수납액 처리		비율	
			수납총액 (다)	과오납 반환액(라)	실제수납액 (마)=(다-라)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예산액대 (마)/(가)	결정액대 (마)/(나)
합계	66,228,634	76,441,950	70,812,535	349,945	70,462,590	5,979,360	162,839	5,816,521	106.4%	92.2%
계	62,130,023	70,985,191	66,543,770	315,483	66,228,287	4,756,904	138,353	4,618,551	106.6%	93.3%
지방세	17,106,155	20,783,504	18,781,620	163,703	18,617,917	2,165,586	115,362	2,050,224	108.8%	89.6%
보통세	15,662,951	17,578,144	17,046,910	161,252	16,885,658	692,485		692,485	107.8%	96.1%
목적세	1,201,600	1,411,512	1,404,864	99	1,404,765	6,747		6,747	116.9%	99.5%
과년도수입	241,604	1,793,848	329,846	2,352	327,494	1,466,354	115,362	1,350,992	135.5%	18.3%
세외수입	9,112,224	12,851,205	10,431,683	151,780	10,279,903	2,571,302	22,991	2,548,311	112.8%	80.0%
경상직세외수입	7,976,321	9,078,554	8,764,157	1,250	8,762,907	315,648		315,648	109.9%	96.5%
임시직세외수입	1,135,903	3,772,651	1,667,526	150,530	1,516,996	2,255,654	22,991	2,232,663	133.5%	40.2%
지방교부세	2									
조정교부금	34,046,000	36,004,233	36,004,233		36,004,233				105.8%	100.0%
보조금	1,347,724	1,137,201	1,137,201		1,137,201					
국고보조금	791,820	680,706	680,706		680,706				86.0%	100.0%
시비보조금	555,904	456,495	456,495		456,495				82.1%	100.0%
지방재원	517,918	209,048	189,033		189,033	20,016		20,016	36.5%	90.4%
계	4,098,611	5,456,759	4,288,765	34,462	4,234,303	1,222,456	24,486	1,197,970	103.3%	77.6%
의료보험기금	432,712	352,646	220,482		220,482	132,164	24,486	107,678	51.0%	62.5%
새마을소득지원	326,027	438,350	355,135		355,135	83,215		83,215	108.9%	81.0%
주차장	3,339,872	4,665,763	3,683,148	34,462	3,658,686	1,007,077		1,007,077	109.5%	78.4%

##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나)	예산현액 (다)	지출원인 행위액(라)	지출액 (마)	다음년도이월 액(라)-(마)	불용액 (마)-(라)
합계	66,228,634	0	66,228,634	53,963,663	52,785,489	1,178,174	12,264,971
계	62,130,023		62,130,023	53,074,265	51,896,091	1,178,174	9,055,758
의회비	964,528		964,528	721,686	721,686		242,842
일반행정비	30,541,797	302,539	30,844,336	27,592,643	27,501,475	91,168	3,251,693
사회복지비	16,438,737	63,320	16,502,057	14,027,964	13,774,037	253,927	2,474,093
산업경제비	531,014		531,014	518,630	518,630		12,384
지역개발비	12,482,836		12,482,836	9,872,257	9,039,178	833,079	2,610,579
민방위비	100,185		100,185	91,085	91,085		9,100
지원및기타경비	1,070,926	▲365,859	705,067	250,000	250,000		455,067
계	4,098,611		4,098,611	889,398	889,398		3,209,213
의료보호기금	432,712		432,712	213,317	213,317		219,395
세마을소득지원	326,027		326,027	110,300	110,300		215,727
주차장	3,339,872		3,339,872	565,781	565,781		2,744,091
인 반 회 계							
특별회 계							

## 다. '95회계년도의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 1. 세입·세출 결산 총평

광진구는 1995년 3월 1일부터 성동구로부터 분구된 신설구로써, '95회계년도 기간은 1995년 3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한 결과,

- 세입부문에서는 -

- 세입예산액 66,228,634천원중 실제수납액은 70,462,590천원(106.4%)임.
- 실제수납액(70,462,590천원)의 징수결정액(76,441,950천원)에 대한 비율은 92.2%로 양호함.
- 수납총액은 70,812,535천원으로서 이중 과오납 반환액은 349,945천원으로 과오납 반환율은 수납총액 대비 0.5%임. 동 과오납 반환액은 초과납부, 이중납부, 감액 처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며, 과오납은 가능한한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구행정효율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미수납액 5,979,360천원은 징수결정액 76,441,950천원 대비 7.8%로써 주요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구분 회계별	세 목 별	미수납액	구 성 비	비 고
일반회계	지방세과년도수입	1,466,354	24.5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2,255,654	37.7	
특별회계	주 차 장	1,007,077	16.9	
	소 계	4,729,085	79.1	
	기 타	1,250,275	20.9	
	총 계	5,979,360	100.0	

○ 위에서 열거한 미수납액(기타는 제외)은 채납자가 다수이거나 장기적인 악성채권으로 회수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과과에서는 매월 각 실과의 채납명세를 집계·통보하여 계속적으로 회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62,839천원(미수납액대비 2.7%)으로써, '95년분 시세의 결손처리에 대한 평가순위는 서울시 소재 25개 구청중에서 4위로 우수하지만 결손처분액의 최소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추후 결손에 대한 연도별·세목별 계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출부문에서는 -

○ 세출예산현액 66,228,634천원(전년도 이월금은 없음)중 지출액은 52,785,489천원(79.7%)임.

○ 예산현액 66,228,634천원 중 불용액은 12,264,971천원으로 예산액대비불용율은 18.5%임.

○ 예산현액 66,228,634천원중 사고이월액은 1,178,174천원으로 예산액대비 사고이월율은 1.8%임.

(단위 : 천원, %)

회계별 \ 구분	예산액	불용액	불용율	비고
일반회계	62,130,023	9,055,757	14.6	
특별회계	4,098,611	3,209,213	78.3	
계	66,228,634	12,264,970	18.5	

○ 특별회계의 불용율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그 원인은 이하 “3. 특별회계 나. 세출” 부문에 대한 검사결과 참조

- 순세계잉여금부문에서는 -

○ 실제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7,677,101천원(총수납액 대비25.1%)으로써, 사고이월비 1,178,174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2,924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66,001천원(총수납액 대비 23.9%)임.

## 2. 일반회계

### 가. 세 입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불납결손액
전년도		0	0	0	0	0
1995년도		62,130,023	70,985,191	66,228,287	4,618,551	138,353

- 수납액 66,228,287천원은 예산액의 106.6%로서 4,098,264천원이 초과수납되었음.
- 상기수납액은 수납총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유는 과오납 반환액에 기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 과오납 반환액 315,483천원
  - 수납액(실제) 66,228,287천원
  - 수납총액 66,543,770천원임
- ※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는 “1. 세입·세출결산 총평” 참조
- 세입결산검사의 결과 세입예산의 계상, 세입과목의 적용,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 결정 및 수납, 불납결손처분등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세입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세입은 예산을 초과하고 있으나 구의 재정자립도가 46.5%(예산기준 자립도 42.2%)정도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징수결정액 70,985,191천원 대 수납액 66,228,287천원의 비율(징수율)은 93.3%로써 양호하나 지방세 과년도 수입분의 징수결정액 1,793,847천원 대 실제수납액 327,494천원의 비율은 약 18.3%에 불과하며, 동 수납액이 총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과년도분 지방세의 회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세입·세출결산 총평 참조)
- 미수납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6.5%인 4,618,551천원이며, 사유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세분별	이 월 액 사 유 별					합 계
	채 무 자 거소불명	채 무 자 재력부족	납세자태만	재산압류	기 타	
지 방 세 과년도수입	332,436	233,693	165,089	458,503	161,271	1,350,992
임시적세외 수입과년도수입	182,489	730,994	72,367	347,702	284,879	1,618,431
기 타	177,074	283,964	371,149	183,280	633,661	1,649,128
합 계	691,999	1,248,651	608,605	989,485	1,079,811	4,618,551
구 성 비	15.0%	27.0%	13.2%	21.4%	23.4%	100.0%

※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관리에 대하여는 “1. 세입·세출결산 총평 참조”

- 상기의 사유별 명세에서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자 재력부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의 비율이 42%로서 이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채권확보행위를 하기 어려운 악성 채권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기년도에 이월, 세입에 계속 반영될 것인 바, 차후에도 계속 확대되거나 결손처리될 것이 예상되므로 납세독촉등과 더불어 악성 채권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임.
- 불납결손액 138,353천원은 과년도 구세수입 115,362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2,991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는데 미수납액 관리 시 시효완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통하여 시효완성전에 회수가 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출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 용 액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증감액				
전년도	0	0	0	0	0	0	0
당해 년도	62,130,023	△365,859	△18,535 365,859	62,130,023 18,535	51,896,091	1,178,174	9,055,758

- 세출예산액은 62,130,023천원이며 예산현액의 증감은 없음.
- 예비비 사용액은 365,859천원으로 방법원 초과근무수당등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음.
- 예비비예산액은 820,92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62,130,023천원 대비 1.3%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지출액 중 경상비 성격의 방법원 초과근무수당 63,748천원과 공공요금 및 체세 12,876천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는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재해 발생시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의 추가적 사용이 없었을 것임. 따라서 추경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소요예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18,535천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방법원관리 보상금의 부족분 15,235천원을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과 노인유아복지시설설계비 3,300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 62,130,023천원의 83.5%에 해당하는 51,896,091천원임.
- 지출액은 재무국의 지출부와 대사하였으며, 각 과의 지출품의서 등을 검토한 결과 예외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기표되었음.
- 서울특별시광진구재무회계규칙 제149조에 의하면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인 중복될 때에는 누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지출부는 월계, 누계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추산부는 월계·누계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며, 각 실과소 직원의 기장·결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철저를 기하면 개선되리라 사료됨.

○ 지출액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예산현액(가)	결산액(나)	대비율(나/가)	비 고
인 건 비	21,855,741	20,918,159	95.7	
물 건 비	15,207,376	13,004,721	85.5	
경상이전	6,464,230	5,019,602	77.6	
자본지출	17,897,609	12,703,609	70.9	
내부거래	250,000	250,000	100.0	
예비비등	455,067	0	0	
합 계	62,130,023	51,896,091	83.5	

○ 성질별로 예산현액 대 결산액의 비율을 보면 비교적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부분인 자본지출등은 예산집행율 70%로써 비교적 낮음.

이러한 성질의 예산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에 있어서의 강력한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1,178,174천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과목		금액(천원)			대비율(%)	
		예산총액 (가)	해당예산액 (나)	사고이월액 (다)	(다)/(가)	(다)/(나)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312,927	22,760	19,530	6.2	85.8
	연구개발비	5,000	5,000	3,972	79.4	79.4
	보상금	137,605	19,965	11,478	8.3	57.5
회계및재산관리	자산취득비	1,080,963	59,500	56,188	5.2	94.4
노인유아 복지	시설비	611,750	581,750	229,475	37.5	39.4
	시설부대비	3,798	3,797	1,101	29.0	29.0
공원관리	시설비	469,000	34,400	23,351	5.0	67.9
지역교통 관리	연구개발비	84,673	84,673	73,606	86.9	86.9
	시설비	254,963	67,012	53,825	21.1	80.3
건축지도	시설비	200,000	34,000	15,197	7.6	44.7
도로건설	시설비	3,887,711	935,000	536,601	13.8	57.4
하수관리	시설비	3,328,500	300,000	153,850	4.6	51.3
계		10,376,890	2,147,857	1,178,174	11.4	54.8

※ 예산총액 대비율의 평가

위의 표에서 사고이월액이 연간예산 총액에 대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이월되어 지출하는 사업이나 행위가 적은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업무에 1/5이상이 당해연도에 완결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판단할 때 과연 시행시기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고이월의 연간 예산총액 대비율과 해당예산 대비율이 동시에 높은 것은 사업등을 연말에 일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써(예 : 동절기공사)사업의 적시성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차후 사업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적절한 시기에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14.6%인 9,055,757천원으로 그 원인은
-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760,570천원 (8.4%)
  - 지급사유 미발생 2,214,137천원 (24.5%)
  - 예산절감 3,958,025천원 (43.5%)
  - 집행잔액 2,123,025천원 (23.4%)입

### 3.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

####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불납결손액
전년도	0	0	0	0	0
1995년도	4,098,611	5,456,759	4,234,303	1,197,970	24,486

- 예산액(4,098,611천원) 대 수납액(4,234,303천원)의 비율은 103.3%이고 징수결정액(5,456,759천원) 대 수납액(4,234,303천원)의 비율은 77.6%임.
- 미수납 이월액 1,197,970천원은 징수결정액 5,456,759천원의 220%이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 1,007,077천원은 주차과태료 미수납분으로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으로써, 이는 수납비율이 78.4%로 매우 저조한 바 세입징수증대를 위한 대책의 강구가 요망됨.
- 불납결손액 24,486천원은 의료보호기금 용자금 대불자등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음.

##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0	0	0	0	0
1995년도	4,098,611	4,098,611	889,398	0	3,209,213

○ 예산액은 4,098,611천원이며 지출액은 889,398천원(21.7%)이고 이월비는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성질별	예산액	지출액	비율(%)	비고
인건비	159,586	90,546	56.7	
물건비	823,857	467,888	56.8	
경상이전	247,142	140,790	56.9	
자본지출	2,498,954	79,994	3.2	
용자및출자	324,027	110,000	33.9	
예비비등	45,045	180	40.0	
계	4,098,611	889,398	21.7	

○ 불용액은 예산액의 78.3%인 3,209,213천원으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지출분야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주차장 사업예산의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주차장사업의 재검토를 통하여(현재와 미래의 자금증식상황 및 주차장사업이 필요한 시점 등을 포함) 적극적인 주차장사업의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임.

#### 4. 기금결산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아래와 같이 4종으로써 수납액은 1,199,809천원, 지출액은 328,02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871,78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 년 도 현재액(가)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가+나)
		계 (나) = (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합 계		871,787	1,199,809	328,022	871,787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797	36,427	33,630	2,797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6,228	127,420	31,192	96,228
중소기업 육성기금		174,420	334,420	160,000	174,420
도시가스 사업기금		598,342	701,542	103,200	598,342

-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보통예금)만 제외하고 3개기금이 기업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연도말에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연도말 수입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용율이 47.8%에 불과한데 이는 중소기업진흥의 목적하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기금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며 (운용율 14.7%)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고 홍보부족 및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소극적 집행 등에 기인

함. (참조 : '95년도말 도시가스 보급율 49%)

###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0 원에서
- 당해연도에                        253,863 천원이 발생하고
- 당해연도에                        111,520 천원이 감소하여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2,343 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계별]

(단위 : 천원)

회계별 \ 구분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합 계	253,863	111,520	142,343
일 반 회 계	253,863	111,520	142,343
특 별 회 계			

#### [종류별]

(단위 : 천원)

회계별 \ 구분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년말 현재액
합 계	253,863	111,520	142,343
매 각 수 입	130,544	105,524	25,020
구 유 재 산	130,544	105,524	25,020
변 상 금	123,319	5,996	117,323
국 유 재 산	66,028	2,716	63,312
구 유 재 산	57,291	3,280	54,011

-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 공유재산 현재액은 228,195,076천원으로 그 종류는 토지 222,610,626천원, 건물 5,584,450천원임.
- 물품 현재액은 1,531개 품목에 5,471,099천원으로 '95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 539품목이 1,156,967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98개 품목 666,555천원이 감소하였음.

### [공유재산결산]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738,752㎡ 222,610,626천원
- 건물 24,270㎡ 5,584,450천원으로써

총 228,195,076천원 상당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94년도말 현재액	'95년도 증감액		당해년말 현재액	비고
			증	감		
합	계	0	228,285,799	90,723	228,195,076	
행정 재산	계	0	219,751,350	0	219,751,350	
	공공용재산	0	186,107,534	0	186,107,534	
	공용재산	0	33,643,816	0	33,643,816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0	8,534,449	90,723	8,443,726	
기타						

### [물품관리결산]

1995년도말 물품현황은 1,531개 품목에 5,471,099천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39개 품목 1,156,967천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298개 품목 666,55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 천원)

구분 품종별	전년도현재액(가)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나)		증 (다)		비교증감(나)-(다)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90	4,980,687	539	1,156,967	298	666,555	241	490,412	1,531	5,471,099
구매(혹은 매각및폐기)	0	0	293	864,096	52	373,684	241	490,412	0	0
관리전환	0	0	246	292,871	246	292,871	0	0	0	0

-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준칙에 의거하여 물품의 취득 유지와 처분 등을 물품대장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재물조사는 '95년 3월 1일과 '95년 5월 16일에 실시된 바 있음. 전반적인 물품관리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7.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현황

-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은
  - 보증금 15,706 천원,
  - 보관금 69,962 천원,
  - 잡종금 927,357 천원으로써,
  - 합 계 1,013,025 천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94년도말 현재액(가)	당 해 년 도 증 감 액			95년도말 현재액 (가) + (나)	비 고
		차감액(나) =(다)-(라)	증가액(다)	지출액(라)		
합 계	0	1,013,025	2,404,617	1,391,592	1,013,025	
보 증 금	0	15,706	25,514	9,808	15,706	
보 관 금	0	69,962	777,676	707,714	69,962	
잡 증 금	0	927,357	1,601,427	674,070	927,357	

## 8. 수 범 사 례

□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 부과1에서는 각 실과별로 매월말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그 실적을 집계·통보하고, 부진한 과목에 대하여 별도 대책수립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본 검사시행시('96.7월)에는 평균징수율이 '95년도의 평균징수율보다 약 5%가 높아졌음.

'95년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46.5%(예산기준 자립도 42.2%)에 불과하다고 볼 때, 상기의 세수확보 노력은 매우 가치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추후에도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구의 재정안정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람.

9.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운영 보 상 금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수당예산 93,600천원중 의원의 회의불참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1,400천원 미 집행.</li> <li>- 의원출석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회의수당과지급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5.7.1.부터 의원개인별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써 25,544천원이 미집행됨.</li> <li>- 국내·외비교시찰예산 20,800천원 중 국내비교시찰 6,547천원을 집행하고 14,253천원을 미 집행함.</li> <li>- 의정활동보고회 20,800천원은 '95.7월 2기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됨.</li> </ul>
	사무국운영 업무추진비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25,000천원 중 15,906 천원이 불용처리됨</li> </ul>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생활 안내책자 예산 5,000천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수록내용변경으로 책자발간이 지연됨으로써 구정화보제작비 5,000천원, 구정홍보VTR 5,000천원을 포함 13,660천원을 배정 받아 전액 사고이월시켰음.</li> <li>- 예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화보제작비 5,000천원 및 구정홍보 VTR제작비 5,000천원을 예산집행심의회 사업계획 변경없이 구민생활안내책자 예산에 포함시켜 사고이월 시킨 사실이 있음.</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보상금 등	예산집행 부 적 정	<p>- 아차산축제예산 109,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예산 75,000천원</li> <li>· 추 경 14,600천원</li> <li>· 예비비 20,000천원</li> </ul> <p>이 편성되었으나 아차산축제에 소요된 금액은 139,000천원이 집행되었음.</p> <p>부족분 29,400천원은</p> <p>(목)일반운영비 9,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50주년필름임차료 2,000천원</li> <li>· 광진문예지발간 5,000천원</li> <li>· 광진문학의밤개최 2,500천원</li> </ul> <p>(목) 업무추진비 13,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50주년사업문화 예술공연유치 8,800천원</li> <li>· 광진문학의 밤 5,000천원</li> </ul> <p>(목) 보상금 5,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가요·가곡경연 2,500천원</li> <li>· 서예대전 3,300천원</li> </ul> <p>등의</p> <p>3개세목의 사업비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였음</p> <p>-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축제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행사계획의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p> <p>- 행사부족분 예산을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치 않고 각목의 사업예산을 절차도 밟지 않고 아차산 축제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p>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보상금등	예산집행 부적정	※ 광진구 개청 축하행사 예산에 편성치 않은 개청행사에 20,500천원 - 보상금 - 아차산축제길놀이예산 중12,000천원 - 주부가요·가곡공연 2,600천원 - 일반운영비 - 아차산축제홍보물 4,700천원 - 업무추진비 - 행사부대경비 1,200천원 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예산이 부족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편성목적 외로 활용시는 목간의 전용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민원봉사실	민원실관리, 보상금	예산불용 부적정	- 민원행정제도개선사례발표회시상 900천원 및 문서정리평가시상 1,500천원의 행사가 취소되므로 전액 불용처리됨 -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될 행사임에도 사업이 취소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민원실관리, 업무추진비	예산불용	- 각동별개선사례발표회(1,600천원) 및 민원상담 관간담회(360천원)가 취소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됨.
총 무 과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 선거인명부대조작업 동직원매식비 7,200천원을(세세향)선거관리, (목)일반운영비, 급량비 예산 42,495천원에서 지출하여야함에도 기관공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추경편성 부적정	- 본 예산에 188,99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31,981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부족분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견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기관공동운영 출 연 금	예산불용 부 적 정	12,876천원을 지출함. - 경상비로 분류되는 공공요금은 소요예산예측이 가능한데도 추경을 편성하고 또다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국고대여장학금 130,172천원 중 공단측의 납부통보착오로 30,080천원만 납부하여 100,092천원이 불용처리됨. - 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설정경비 25,000천원은 신설구는 납부치 않아도 된다는 재단측의 통보로 전액 불용처리됨.
	기관공동운영 민간이전	예산편성 부 적 정	-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민간이전, 노인회지회운영지원금에서 6,980천원이 집행되고, 추가집행사유 발생으로 민간이전 예산 2억원 중에서 노인지회 활동비 3,600천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었음. -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구체적용도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한 포괄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포괄예산을 편성하므로써 113,439천원(불용율 56.7%)이 불용처리됨.
급여관리, 수 당	추경편성 부 적 정	-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부족분 96,185천원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정액수당 추경예산 93,130천원중 70,000천원이 불용처리됨. 이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수당이 70,000천원(불용율 73%)이나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편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급여관리, 복리후생비	예 비 비 지 출	- 호도휴가비 직원1인당 50천원씩 34,600원이 예산편성되었으나 행정13310-1317( '95.9.2)호에 의거 중추절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부족예산을 연가보상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전용	- 일반운영비에서 15,235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세항)방법원관리, 보상금에서 방법원연금 및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부족분이 발생되어 15,235천원을 본항목의 차량선박비에서 전용한 것임.
	서무관리, 민간이전	예산불용	- 예산액 17,385천원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가 발생치 않아 전액 불용처리됨.
	방법원관리, 수 당	추경편성 부 적 정	- 초과근무수당 160,894천원 중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예비비에서 63,748천원을 사용함. - 추경예산편성시 방법원관리에서 554,926천원을 감액편성하면서 본항목에서도 48,500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추경예산편성시 수요예측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됨.
	방법원관리, 보 상 금	추경편성 부 적 정	- 방법원연금 및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부족분이 발생되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235천원을 전용하였음. - 추경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2,400천원을 감액함으로써 부족분이 발생되어 세세항간 전용을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동행정지도	추경편성 부 적 정	· 일반운영비(불용액 96,267천원) 42,392천원 · 여 비(불용액 12,871천원) 1,600천원 · 업무추진비(불용액 40,984천원) 4,800천원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목)별 불용액이 추경예산을 초과하고 있 음은 추경예산 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동행정지도 시 설 비	예산편성 부 적 정	- (목)시설비 429,022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중 낙찰차액 56,482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으로써 예산편성의 부 적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동행정지도, 보 상 금	예산편성 부 적 정	- '95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명료 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일반경상경비 비목 의 포괄비계상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목)보 상금, 대민행정업무추진비 20,000천원이 편성 된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선 거 관 리	예산집행 부 적 정	-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선관위에 609,149천원을 지원하고 집행액 464,271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미비 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선관위의 집행내역서가 요망됨.
사회진흥과	국민운동관리	예산불용 부 적 정	- (목)일반운영비, (목)업무추진비등에서 30% 이상의 예산절감이 있었으나 독서왕선발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써 불용된 업무추진비나 보상금(3,000천원)은 주민의 정서 함양등 바르게 살기위한 운동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보다는 사업추진면에서 제고하여야 함.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사회복지과	사 회 복 지 민 간 이 전	예산불용	- 예산 10,455천원 중 10,359천원 불용. 광장복지관 옥상 어린이놀이터 설치예산 10,000천원은 건물하중으로 인한 구조물 안전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업취소됨.
	사 회 복 지, 토지매입비	자금운용 관리미흡	- 광장·자양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시(매입가 1,503,558천원) 5년 연부상환으로 연이율 12.5%(상업은행 가계대출금리 적용)에 서울시와 '93. 2월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1개월(연이율3%), 3개월(연이율5%), 1년(연이율9%) 정기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바, 광장·자양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잔액을 일시상환하게 되면 자금운용관리측면(이자율 차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가정복지과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	예산불용	- 예산 76,673천원중 노인정임차료 50,000천원과 임차료인상분예산 9,627천원중 실시설계비 전용 3,300천원을 제외한 6,327천원이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 -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미흡으로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였음.
	노인유아복지 시 설 비	사고이월	- 사업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조기발주로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2동 어린이집신축 지출원인행위액 307,368천원과 모진동 노인정신축 지출원인행위액 123,270천원을 동절기 공사중 지로229,475천원을 사고이월시켰음.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환경보전과	환 경 관 리 일반운영비	예산불용 부 적 정	-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매년측정 비디오카메라 테이프인화 및 검사비 7,300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비디오카메라 미구입으로 7,095천원이 불용됨.
사회복지과	쓰레기처리관 리, 민간이전	예 산 미 집 행	- 재해보상급여,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금액의 86.1%인 244,310천원이 불용됨.
	자산취득비	예산불용	- 재활용집하장이 협소하므로 운용장비 규모의 구매축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약43,555천원이 발생함.
	민간자본이전	예산불용	-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 반입처리비 290,821천원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
주 택 과	주 택 행 정	예산불용	- (목)시설비 6,000천원과 (목)민간자본 2,500천원이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
도시계획과	도 시 정 비	예산편성 부 적 정	- (목)연구개발비와 (목)시설비 전액 207,000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중 연구개발비 200,000천원은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며, 시설비 7,000천원은 천호대로 지하철 5호선 개통 연기등의 사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함. 연구개발비의 경우 추진경위로 볼 때 '95년도 12월중에 서울시에서 상세 계획구역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사업이 '95년도에 시행될 수 없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건 축 과	주택사업, 시 설 비	예산집행 부 적 정	- 본 예산의 집행액 중에는 다음과 같이 본래 해당과의 목적사업인 영조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계없는 예산지출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집하장포장공사 30,634천원:도로과</li> <li>어린이회관공중화장실 44,944천원:청소과</li> <li>재활용센터 설치공사 29,980천원:청소과</li> <li>자양1동재활용선별장공사 12,650천원:청소과</li> <li>중곡1동노인정도시가스시설공사 4,853천원:사회복지과</li> </ul>
도 로 과	도로건설, 시 설 비	예산불용	· 불 용 액 : 581,760천원 · 사고이월액(6건) : 536,601천원 - 사고이월 6건중 광장중학교앞 지하차도 확장공사예산 200,000천원, 능동242주변 도로개설공사예산 200,000천원은 추경에 계상된 후에 동절기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되고, 능동242도로 개설공사는 선급금(88,311천원)지출 등 자금의 유출만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사료됨. -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검토 및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산계상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 수 과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예산미집행	-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예산 17,500천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됨. - 안전진단은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사유의 미발생 여부는 구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것임.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하 수 과	하수관리, 시설비	예산미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복구비예산 100,000천원</li> <li>· 도로굴착복구비예산 100,000천원</li> <li>· 하수도유지보수비예산 100,000천원 등</li> </ul> <p>총 300,000천원이 사유미발생으로 전액불용처리됨.</p> <p>-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 명료의 원칙”에 의해 포괄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였음.</p>

## (2)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 (가) 결산검사개요

#### 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광진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2. 검사기간 : 1998. 6. 8~6. 30(23일간)

3. 검사대상 : '97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 4. 검사위원

대표위원 전영동 : 총괄

검사위원 박영국 : 재무국, 구의회사무국, 세입부문 및 기타

검사위원 김중업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검사위원 최재길 : 기획실, 총무국, 시민국, 기금

#### 5. 검사사항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여부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 예산집행의 효율성

### (나)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수납총액(다)	
합 계	118,203,101,000	122,146,633,000	131,998,235,260	121,541,553,621	
일 반 회 계	계	107,243,130,000	111,186,662,000	116,000,584,953	110,579,974,897
	지 방 세	21,589,370	21,589,662,000	22,987,488,620	20,881,972,890
	보 통 세	19,102,370,000	19,102,370,000	19,181,599,740	18,718,794,750
	목 적 세	1,815,000,000	1,815,000,000	1,793,289,250	1,773,964,450
	과 년 도 수 입	672,000,000	672,000,000	2,012,599,630	389,213,690
	세 외 수 입	26,292,018,000	30,235,550,000	33,635,272,833	30,320,178,507
	경상적세외수입	11,496,133,000	11,496,133,000	12,384,079,333	12,051,890,973
	임시적세외수입	14,795,885,000	18,739,417,000	21,251,193,500	18,268,287,534
	지 방 교 부 세				
	조 정 교 부 금	46,991,200,000	46,991,200,000	46,991,200,000	46,991,200,000
	보 조 금	12,370,542,000	12,370,542,000	12,386,623,500	12,386,623,500
	국 고 보 조 금	464,260,000	464,260,000	480,313,000	480,313,000
	시 비 보 조 금	1,906,282,000	11,906,282,000	11,906,310,500	11,906,310,500
	지 방 채				
특 별 회 계	계	10,959,971,000	10,959,971,000	10,961,578,724	10,961,578,724
	의료보호기금	1,542,405,000	1,542,405,000	1,537,085,196	1,537,085,196
	국민소득지원	449,045,000	449,045,000	482,688,388	482,688,388
	주 차 장	8,968,521,000	8,968,521,000	8,941,805,140	8,941,805,14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액(나)	예산현액 (다)	지출원인 행위액(라)	지출액 (마)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다)-(마)-(바)
합계	118,203,101,000	3,943,532,000	122,146,633,000	103,111,452,905	94,100,588,235	9,637,959,000	18,408,085,765
계	107,243,130,000	3,943,532,000	111,186,662,000	100,131,517,485	91,141,229,815	9,617,382,000	10,428,050,185
일반행정비	52,113,983,000	2,699,809,000	54,813,792,000	51,064,161,470	45,227,427,460	5,597,911,000	3,628,578,540
사회개발비	43,819,562,000	1,190,591,000	45,010,153,000	39,528,064,825	37,415,305,715	2,597,911,000	4,996,936,285
경제개발비	9,557,820,000	801,209,000	10,359,029,000	9,221,853,480	8,181,058,930		1,116,285,070
계	321,559,000		321,559,000	217,437,710	217,437,710		104,121,290
지원및기타경비	1,430,206,000	-748,077,000	682,129,000	100,000,000	100,000,000		582,129,000
계	10,959,971,000		10,959,971,000	2,959,358,420	2,959,358,420	20,577,000	7,980,035,580
의료보호기금	1,542,405,000	1,542,405,000	1,536,867,290	1,536,867,290		5,537,710	
주민소득지원	449,045,000		449,045,000	300,000,000	300,900,000		148,145,000
주차장	8,968,521,000		8,968,521,000	1,121,591,130	1,121,591,130	20,577,000	7,826,352,870
특별회계							

## 다. '97회계년도의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 1. 세입·세출 결산 총평

1997년도의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한 결과,

- 세입부문에서는 -

- 세입예산액 118,203,101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121,241,297천원의 비율은 102.5% 목표를 상회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이월액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122,146,633천원에 대한 비율은 99.3%로 목표에 미달하는 세입실적을 나타냄.
- 예산대비 세입실적으로 저조의 원인은 지방세 수입실적이 예산대비 95.6%로 목표에 4.4%나 미달한데 기인함. 특히 과년도 수입비율은 57.6%로 목표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 실적비율은 170.0%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바, 과년도 수입의 징수에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 징수결정액 131,998,235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121,241,297천원의 비율도 91.8%로서 전년도의 93.4%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과년도수입과 주차장수입의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각각 19.2%, 64.6%로 전년도의 21.8%, 73.8%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수납총액 121,541,553천원에서 과오납반환액은 300,255천원으로 그 비율이 0.25%로 전년도의 0.07%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는바, 부과과정에서 부터의 적법한 부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미수납이월액 10,434,050천원은 전년도이월액 7,258,633천원보다 44%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8.2%로 전년도의 6.4%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주차장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409,335천원보다 100%이상 증가한 4,885,146천원에 이르고 미수납이월액의 주요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 [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회계별	구분	세 목 별	미수납액	구 성 비	비 고
일반회계		지방세과년도수입	1,403,244	13.5	
		세외수입과년도수입	2,195,618	21.0	
		세외수입과태료수입	621,063	6.0	
		세외수입도로사용료	304,120	2.9	
특별회계		주차장과태료수입	2,834,651	27.2	
		주차장과년도수입	2,050,496	19.6	
		기 타	1,024,858	9.8	
		총 계	10,434,050	100.0	

- 위 미수납이월액중 징수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고질적체납 및 기타의 비중이 45%인 4,693,250천원에 이르고 있는바, 향후 징수를 위한 원인파악 및 징수제도 정비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세입부문

- 예산현액 122,146,633천원(전년도 이월액 3,943,532천원 포함) 중 지출액은 94,100,588천원으로 집행율은 77%로 전년도 83.5%보다 다소 낮으며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이 저조함(12.5%)
- 예산현액 122,146,633천원중 사고이월액은 9,215,553천원으로 사고이월율이 7.5%(전년도2.2%)이며, 명시이월액은 422,406천원으로 명시이월율이 0.3%(전년도 1.6%)임.
- 예산현액 122,146,633천원 중 불용액은 18,408,085천원이며 불용율은 15%로 전년도 12.5%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년도 대비 불용율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대비 불용율 현]

(단위 : 천원, %)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1997년도)	전년도
일반회계		111,186,662	10,428,050	9.3	9.7
특별회계		10,959,971	7,980,035	72.8	65.0
계		122,145,622	18,408,085	15	12.5

## ■ 순세계잉여금부문

- 실제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27,140,709천원(총수납액 대비22.3%)으로서, 명시이월비 422,406천원과 사고이월비 9,215,55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12,91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6,789,833천원(총수납액 대비 13.8%)임.

## 2. 일반회계

## 가. 세입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세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전년도		94,423,580,000	1,781,174,000	95,601,754,000	101,892,858,539	97,068,581,614	151,423,070	4,672,853,855
1997년도		107,243,130,000	3,943,532,000	111,186,662,000	116,000,584,953	110,292,553,327	306,939,940	5,401,091,686

## ○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 11,292,553천원은 예산액 111,186,662천원의 99.2%로서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초과수납(102.8%)에 대비되고 있음.
- 징수결정액 116,000,584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 비율이 95.1%로서 전년도의 95.3%와 비슷한 실적을 보임. 다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과 세외임시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9.2%, 85.8%로 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됨  
 - 불납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5.4%인 306,940천원으로 전년도의 3.1%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시효완성이 전체의 76%, 무재산이 24%로 시효완성이전에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함.

- 구 재정자립도는 45.8%로 전년도의 51.2%에 비해 5.4%가 낮아짐.

이는 공공도서관 건축등으로 보조금이 전년보다 2배가 넘는 12,370,542천원에 이른데 기인함.

○ 과오납반환 적정여부

- 수납총액 110,579,974천원 대비 과오납반환액 287,421천원의 비율은 0.25%로서 전년도 71,449천원의 0.07%에 비해 3배정도가 증가 하였는바 부과단계에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부과가 요구됨.

○ 미수납 이월액 내용

- 미수납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4.7%인 5,401,091천원으로 전년도 4.6%에 비해 이월율이 약간 상승하였으며 사유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세분별	현 황		합 계
	고질적체납·기타	거소불명·부재산·압류중	
지방세과년도수입	316,600(22.6)	1,086,644(77.4)	1,403,244
세외수입과년도수입	1,511,786(68.9)	683,832(31.1)	2,195,618
세외수입과태료수입	555,294(89.4)	65,769(106)	621,063
세외수입도로사용료	166,874(54.9)	137,246(45.1)	304,120
기 타	576,657(65.8)	300,389(34.2)	877,046
합 계	3,127,211(57.9)	2,273,880(42.1)	5,401,091

( )안은 구성비

- 상기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재산압류 등 구체적인 징수활동이 진행된 사유가 42.1%이고, 고질적 체납 및 기타등으로 징수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 비율이 57.9%로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출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증감액	사 고 이월액				
전년도	94,423,580,000	26,300,000 -26,300,000	132,146,000 -132,146,000	1,178,174,000	95,601,754,000	82,321,215,960	3,943,532,000 92,238,368,000)	9,337,006,040
1997 년도	107,243,130,000	748,077,000 -748,077,000	115,588,000 -115,588,000	3,943,532,000	111,186,662,000	91,141,229,815	9,617,382,000 (204,6887,000)	10,428,050,185

### ○ 세출예산 개요

- 예산액은 107,243,130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인하여 3,943,532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11,186,662천원이고, 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1%인 115,588천원이며, 전용의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비 110,000천원외 1건이고,
- 예비비 예산액은 1,330,206천원으로 사용액은 토지형질변경 불허에 따른 전부금 지급으로 440,000천원외 4건으로 748,077천원임.
-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4.9%에 해당하는 91,141,22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17,382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능동어린이집 신축사업에 422,406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공공도서관 건축사업비 4,312,165천원외 23건으로 9,194,976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3%에 해당되는 10,428,050천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취소에 기인함.

### ○ 예산편성과 예산집행부서의 불일치

-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개발계 연구개발비가 타부서에서 집행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최소한 3개월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더욱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3. 특별회계

####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이월액
전년도	5,128,095,000		5,128,095,000	10,582,078,105	7,984,676,210	11,622,270	2,585,779,625
1997년도	10,959,971,000		10,959,971,000	15,997,650,307	10,948,744,584	15,947,166	5,032,958,557

#### ○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 10,948,744천원은 예산현액의 99.8%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68.4%로서 전년도 75.4%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불경기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임.

#### ○ 미수납이월액 적정여부

- 미수납이월액 5,032,958천원은 징수결정액의 31.4%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7%가 높아졌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수입이 4,885,147천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고질적 체납 31.0%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8.6%로 되어 있음.

#### ○ 불납결손 처분 적정여부

- 불납결손처분액 15,947천원은 의료보호기금 용자금 수혜자등의 무재산 및 거소 불명사유로 결손처분 되었음.

##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 출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사 고 이월액				
전년도	5,128,095,000				5,128,095,000	1,794,936,530		3,333,158,470
1995 년도	10,959,971,000				10,959,971,000	2,959,358,420	20,577,000	7,890,035,580

## ○ 세출결산 개요

- 세출예산액은 10,959,971천원이었으며 예산성립후 증감요인인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등이 없어 예산현액 또한 세출예산액과 같은 10,959,971 천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2,959,358천원 집행하였고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 20,577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8%에 해당하는 7,980,03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지출 분야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주차장건설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된 것이며, 주차장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후 적극적으로 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건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기금결산

## 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 전년도말 현재액은 10,786,793,840 원에서
- 수납액은 4,344,331,510 원이며
- 지출액은 1,638,354,300 원이며
- 차인잔액은 13,492,771,050 원으로서 그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현재액(가)	1997년도 증 감 액			1997년도말 현재액 (가+나)
		계 (나) = (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합 계	10,786,793,840	2,705,977,210	4,344,331,510	1,638,354,300	13,492,771,050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9,500,493,150	3,085,515,060	3,085,515,060	-	12,586,008,210
노인복지기금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7,113,369	64,149,307	514,149,307	450,000,000	151,262,676
도시가스사업기금	1,009,815,576	-632,127,640	342,373,360	974,501,000	377,687,93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4,747,604	60,108,970	173,011,260	112,902,290	104,856,57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44,624,141	48,274,664	149,225,674	100,951,010	192,989,805
재해대책기금	-	50,056,849	50,056,849	-	50,056,849

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이괄적으로 1년(장기)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출을 예상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면 중도해지시 이자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운용 실적이 부진하며 이는 도시가스시설 보급률이 높아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346,901,900 원에서
- 당해연도에                            15,154,630 원이 발생하고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2,056,530 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재액	불용액	불용율 (1997년도)	전년도
합	계	346,901,900	471,167,110	456,012,480	362,056,530
일	반 회 계	346,901,900	471,167,110	456,012,480	362,056,530
특	별 회 계				

나.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의 종류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유재산 매각대금 :    48,087,300원
- 구유재산 매각대금 :    89,640,000원
- 국유재산 변 상 금 :    111,184,460원
- 구유재산 변 상 금 :    111,850,350원
- 시유재산 변 상 금 :    1,294,420원

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1977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 6. 공유재산 및 현재의 보고서

가.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44,494건에 46,034,260,000원
- 건물 22,763건에 5,383,343,000원
- 기타 699,398건에 182,254,821,000원으로서
- 총 766,655건에 233,673,424,000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용도별 현황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96년도말 현재액	'97년도 증감액		'97년도말 현재	비고
			증(취득)	감(매각)		
합	계	230,108,600,000	3,632,294,000	67,470,000	233,673,424,000	
행정 재산	계	222,498,101,000	3,632,294,000	67,470,000	226,062,925,000	
	공공용재산	187,614,884,000			187,614,884,000	
	공용재산	34,883,217,000	3,632,294,000	64,470,000	38,448,041,000	
	기업용재산					
잡종재산		7,610,499,000			7,610,499,000	
보존재산						
기타						

## 7. 물품관리 결산

1997년도말 물품현황은 64종 4,868,933천원으로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624,96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610,41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개, 천원)

구분 품종별	96년도말 현재액(가)		당해년도 물품증감 실적						당해년도말 보유현황	
	수 량	금 액	증 (나)		증 (다)		비교증감(나)-(다)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15	5,358,448	112	624,966	94	1,114,481	18	-489,515	833	4,868,933
구매(혹은 매각및폐기)	815	5,358,448	1112	624,966	62	1,033,364	50	-408,398		
관리전환	0	0	246	292,871	246	292,871	0	0	0	0
가격개정및 감가상각										
기 타					32	81,117	-32	-81,117		

가.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준칙에 의거하여 물품의 취득사유와 처분등을 물품대장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물품관리카드 등록부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가 불일치 한 경우가 있음.

나. 물품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8.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

■ 세입분야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재사회계과	재산수입	징수결정 오 류	- 연불조건으로 매각한 공유재산 최문규, 이정 숙씨관련 징수결정액이 '97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인 21,733천원만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98 년 이후 지급예정금액인 72,911천원이 추가 징수결정 되어 있어 시정이 요구됨.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청 소 과	도로사용료 자동차등록과 태료규격봉투 수수료	징수보고서 와현계표의 자료불일치	- 주관부서 징수보고서상의 월별금액과 누계금 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주관부서 누계 금액과 부과1과의 현계표상의 금액에도 차이 발생함 월별세입징수실적표(현계표)는 월별세입상 황과악과 함께 세입결산서에 이기되어 최종 결산을 확정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서 원인규명과 함께 징수결의 및 계수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개선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불일치사례 별첨
세입관련 전 부 서	전 과 목	징수활동 노력미흡	- 미수납이월세액의 원인별 분류를 보면 거소불 명, 무재산, 재산압류등 미납사유가 분명한 금 액 비중이 55%이며 징수활동여부가 불분명한 고질적체납 및 기타사유가 전체의 45%에 달하 고 있는바, 전년도의 24.8%에 비해 크게 높아 짐. 이는 체납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이 미흡한 결과로 파악되었고 특히 과태료 수입 미납세액중 불분명한 사유 비중은 89.4% 로 과태료 미납세액의 원인규명이 요구됨.

■ 세출분야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견
	예산항목	내 용	
기획예산 담당관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예산불용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등으로 870,875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68,694천원이 불용됨(불용율30.85%)</li> <li>- 예산편성시 정책개발부서로 책정을 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타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편성하여 배정시 주관부서로 배정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li> </ul>
기획예산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청 소 과 도 로 과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연도폐쇄 직전착공 (계약)후 사고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회계년도 폐쇄직전 착공(계약)후 사고이월된 사항은 광장동 운동장부지 설계용역 4건 565,144천원임</li> <li>- 이는 착공(계약)당해년도 추진가능 여부 및 절대공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li> </ul>
청 소 과	재활용판매 대금관리기금	일일결산부와 현금출납부의 중복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징수결의서상에 기재내역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매일 작성되는 일일결산부와 현금출납부의 내용이 중복작성 되고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li> </ul>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소요예산 예측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상예산액 49,361천원 대비 예산 불용액 23,758천원이 발생되어 41.3% 불용처리되어 소요예산 편성시 예측미흡으로 판단됨</li> </ul>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소요예산 예측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액 33,303천원 대비 예산불용액 14,938천원(불용율44.8%)은 표지판 규격변경이 원인이나, 소요예산 편성시 예측미흡으로 판단됨</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불용 과다발생	- 방치폐차이동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하여 과다 불용액 16,540천원(불용율 86.8%)이 발생됨
교통지도과	교통회계 교통사업 시설비등	부적절한 예산과목	-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세항)시설비등(목)으로 예산편성된 주차장시설용 자금은 예산 7,476,177천원중 7,316,62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이는 주차장건설사업기금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적인 주차장건설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교통지도과	시,도비보조 사업시설장비 유지비	예산불용 과다발생	-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장비유지비에 대한 수요예측이 미흡하여 과다불용액 10,478천원(불용율 71.8%)이 발생됨

## 9. 수 범 사 례

### 가. 예비비의 합리적인 전용- 도시계획과

- 광장동 381번지외 14필지에 대한 법원의 전부금 지급결정(1997. 07. 22)으로 인해 토지소유주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예비비 전용 후 집행함.(440,000천원)

### 나. 구 숙원사업해결 - 건축과

- 군자동 374번지 위험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개시됨.
- 건물소유주의 쟁송 및 이해상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20년 지속된 문제 많은 부분을 '97년도에 해결함.

### 다. 세수확대 노력 - 건설관리과

- 지하매설물 직경착오로 인한 세입누락분을 발견 추정하여 '98년 정기분 세입이 42% 증가함.
- 하천사용료도 사용면적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를 징수함으로써 세수가 34%가 증가하는 등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특히 직경 착오사항은 광진구에서 처음 발견하여 서울시 전체에 적용을 확대중에 있는 등, 건설관리과의 세수 확대 노력이 인정됨.

10.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운영 보 상 금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수당예산 93,600천원중 의원의 회의불참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1,400천원 미 집행.</li> <li>- 의원출석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회의수당과지급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95.7.1.부터 의원개인별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써 25,544천원이 미 집행됨.</li> <li>- 국내·외비교시찰예산 20,800천원 중 국내비교시찰 6,547천원을 집행하고 14,253천원을 미 집행함.</li> <li>- 의정활동보고회 20,800천원은 '95.7월 2기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됨.</li> </ul>
	사무국운영 업무추진비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25,000천원 중 15,906천원이 불용처리됨</li> </ul>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생활 안내책자 예산 5,000천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수록내용변경으로 책자발간이 지연됨으로써 구정화보제작비 5,000천원, 구정홍보VTR 5,000천원을 포함 13,660천원을 배정 받아 전액 사고이월시켰음.</li> <li>- 예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화보제작비 5,000천원 및 구정홍보 VTR제작비 5,000천원을 예산집행심의회 사업계획 변경없이 구민생활안내책자 예산에 포함시켜 사고이월시킨 사실이 있음.</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보상금등	예산집행 부 적 정	<p>- 아차산축제예산 109,6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예산 75,000천원</li> <li>· 추 경 14,600천원</li> <li>· 예비비 20,000천원</li> </ul> <p>이 편성되었으나</p> <p>아차산축제에 소요된 금액은 139,000천원이 집행되었음.</p> <p>부족분 29,400천원은</p> <p>(목)일반운영비 9,5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50주년필름임차료 2,000천원</li> <li>· 광진문예지발간 5,000천원</li> <li>· 광진문학의밤개최 2,500천원</li> </ul> <p>과</p> <p>(목) 업무추진비 13,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50주년사업문화 예술공연유치 8,800천원</li> <li>· 광진문학의 밤 5,000천원</li> </ul> <p>과</p> <p>(목) 보상금 5,80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가요·가곡경연 2,500천원</li> <li>· 서예대전 3,300천원</li> </ul> <p>등의</p> <p>3개세목의 사업비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였음</p> <p>-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축제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행사계획의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p> <p>- 행사부족분 예산을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치 않고 각목의 사업예산을 절차도 밟지 않고 아차산 축제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p> <p>※ 광진구 개청 축하행사 예산에 편성치 않은 개청행사에 20,500천원</p>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문화공보실	문화공보, 보상금등	예산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아차산축제길놀이 예산중 1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가요·가곡공연 2,600천원</li> </ul> </li> <li>- 일반운영비 - 아차산축제홍보물 4,700천원</li> <li>- 업무추진비 - 행사부대경비 1,200천원</li> </ul> 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예산이 부족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편성목적 외로 활용시는 목간의 전용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산집행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민원봉사실	민원실관리, 보상금	예산불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행정제도개선사례발표회시상 900천원 및 문서정리평가시상 1,500천원의 행사가 취소되므로서 전액 불용처리됨</li> <li>-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될 행사임에도 사업이 취소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li> </ul>
	민원실관리, 업무추진비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별개선사례발표회(1,600천원) 및 민원상담 관간담회(360천원)가 취소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됨.</li> </ul>
총 무 과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인명부대조작업 동직원매식비 7,200천원을(세세항)선거관리, (목)일반운영비, 급량비 예산 42,495천원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기관공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li> </ul>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추경편성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예산에 188,99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31,981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부족분 12,876천원을 지출함.</li> <li>- 경상비로 분류되는 공공요금은 소요예산예측</li> </ul>

관련부서	구분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이 가능한데도 추경을 편성하고 또다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기관공통운영 출 연 금	예산불용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대여장학금 130,172천원 중 공단측의 납부통보착오로 30,080천원만 납부하여 100,092천원이 불용처리됨.</li> <li>- 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설정경비 25,000천원은 신설구는 납부치 않아도 된다는 재단측의 통보로 전액 불용처리됨.</li> </ul>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	예산편성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민간이전, 노인회지회운영지원금에서 6,980천원이 집행되고, 추가집행사유 발생으로 민간이전 예산 2억원 중에서 노인지회 활동비 3,600천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었음.</li> <li>-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구체적용도 및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한 포괄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포괄예산을 편성하므로써 113,439천원(불용율 56.7%)이 불용처리됨.</li> </ul>	
	급여관리, 수 당	추경편성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부족분 96,185천원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정액수당 추경예산 93,130천원중 70,000천원이 불용처리됨.</li> <li>이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수당이 70,000천원(불용율 73%)이나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편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li> </ul>	
	급여관리, 복리후생비	예 비 비 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도휴가비 직원1인당 50천원씩 34,600원이 예산편성되었으나 행정13310-1317( '95.9.2)호에 의거 중추절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부족예산을 연가보상금에서 우선 지급</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하고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전용	- 일반운영비에서 15,235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세항)방법원관리, 보상금에서 방법원연금 및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부족분이 발생되어 15,235천원을 본항목의 차량선택비에서 전용한 것임.
	서무관리, 민간이전	예산불용	- 예산액 17,385천원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가 발생치 않아 전액 불용처리됨.
	방법원관리, 수 당	추경편성 부 적 정	- 초과근무수당 160,894천원 중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예비비에서 63,748천원을 사용함. - 추경예산편성시 방법원관리에서 554,926천원을 감액편성하면서 본항목에서도 48,500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추경예산편성시 수요예측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됨.
	방법원관리, 보 상 금	추경편성 부 적 정	- 방법원연금 및 퇴직수당의 국가부담금부족분이 발생되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235천원을 전용하였음. - 추경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32,400천원을 감액함으로써 부족분이 발생되어 세세항간 전용을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동행정지도	추경편성 부 적 정	· 일반운영비(불용액 96,267천원) 42,392천원 · 여 비(불용액 12,871천원) 1,600천원 · 업무추진비(불용액 40,984천원) 4,800천원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총 무 과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목)별 불용액이 추경예산을 초과하고 있음은 추경예산 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동행정지도 시 설 비	예산편성 부 적 정	- (목)시설비 429,022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중 낙찰차액 56,482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으로써 예산편성의 부적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동행정지도, 보 상 금	예산편성 부 적 정	- '95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명료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일반경상경비 비목의 포괄비계상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목)보상금, 대민행정업무추진비 20,000천원이 편성된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선 거 관 리	예산집행 부 적 정	-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관위에 609,149천원을 지원하고 집행액 464,271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미비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선관위의 집행내역서가 요망됨.
사회진흥과	국민운동관리	예산불용 부 적 정	- (목)일반운영비, (목)업무추진비등에서 30% 이상의 예산절감이 있었으나 독서왕선발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용된 업무추진비나 보상금(3,000천원)은 주민의 정서 함양등 바르게 살기위한 운동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보다는 사업추진면에서 제고하여야 함.
사회복지과	사 회 복 지 민 간 이 전	예산불용	- 예산 10,455천원 중 10,359천원 불용. 광장복지관 옥상 어린이놀이터 설치예산 10,000천원은 건물하중으로 인한 구조물 안전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업취소됨.
사회복지과	사 회 복 지, 토지매입비	자금운용 관리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자양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시(매입가 1,503,558천원) 5년 연부상환으로 연이율 12.5%(상업은행 가계대출금리 적용)에 서울시와 '93. 2월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li> <li>-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1개월(연이율3%), 3개월(연이율5%), 1년(연이율9%) 정기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바, 광장·자양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잔액을 일시상환하게 되면 자금운용관리측면(이자율 차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됨.</li> </ul>
가정복지과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76,673천원중 노인정임차료 50,000천원과 임차료인상분예산 9,627천원중 실시설계비 전용 3,300천원을 제외한 6,327천원이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li> <li>-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미흡으로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였음.</li> </ul>
가정복지과	노인유아복지 시 설 비	사고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조기발주로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2동 어린이집신축 지출원인행위액 307,368천원과 모진동 노인정신축 지출원인행위액 123,270천원을 동절기 공사중 지로229,475천원을 사고이월시켰음.</li> </ul>
환경보전과	환 경 관 리 일반운영비	예산불용 부 적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테이프인화 및 검사비 7,300천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비디오카메라 미구입으로 7,095천원이 불용됨.</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사회복지과	쓰레기처리 관리, 민간이전	예 산 미 집 행	- 재해보상급여, 장애보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금액의 86.1%인 244,310천원이 불용됨.
	자산취득비	예산불용	- 재활용집하장이 협소하므로 운용장비 규모의 구매축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약43,555천원이 발생함.
	민간자본이전	예산불용	-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쓰레기 반입처리비 290,821천원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불용액 발생
주 택 과	주 택 행 정	예산불용	- (목)시설비 6,000천원과 (목)민간자본 2,500천원이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됨.
도시계획과	도 시 정 비	예산편성 부 적 정	- (목)연구개발비와 (목)시설비 전액 207,000천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중 연구개발비 200,000천원은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며, 시설비 7,000천원은 천호대로 지하철 5호선 개통 연기등의 사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함. 연구개발비의 경우 추진경위로 볼 때 '95년도 12월중에 서울시에서 상세 계획구역결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사업이 '95년도에 시행될 수 없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건 축 과	주택사업, 시 설 비	예산집행 부 적 정	- 본 예산의 집행액 중에는 다음과 같이 본래 해당과의 목적사업인 영조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계없는 예산지출이 있었음. ┌ 재활용집하장포장공사 30,634천원 - 도로과 └ 어린이회관공중화장실 44,944천원 - 청소과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건
	예산항목	내 용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센터 설치공사 29,980천원 - 청소과</li> <li>- 자양1동재활용선별장공사 12,650천원 - 청소과</li> <li>- 중곡1동노인정도시가스시설공사 4,853천원 - 사회복지과</li> </ul>
도 로 과	도로건설, 시 설 비	예산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 용 액 : 581,760천원</li> <li>· 사고이월액(6건) : 536,601천원</li> <li>- 사고이월 6건중 광장중학교앞 지하차도 확장 공사예산 200,000천원, 능동242주변 도로개설  공사예산 200,000천원은 추경에 계상된 후에 동 절기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되고, 능동242도로 개설공사는 선급금(88,311천원)지출 등 자금의 유출만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사 업계획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사료됨.</li> <li>-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검토 및 소요판단을 정 확히 하여 예산계상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 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하 수 과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예산미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예산 17,500천원은 사 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됨.</li> <li>- 안전진단은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사유의 미발생여부는 구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 전에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것임.</li> </ul>
	하수관리, 시설비	예산미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복구비예산 100,000천원</li> <li>· 도로굴착복구비예산 100,000천원</li> <li>· 하수도유지보수비예산 100,000천원 등 총 300,000천원이 사유미발생으로 전액불용 처리됨.</li> </ul>

구분 관련부서	검 사 사 항		결 산 검 사 의 견
	예산항목	내 용	
하 수 과			-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예산 명료의 원칙”에 의해 포괄비 예산편성을 지양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였음.

## 제2절 건의·결의안

### 1. 건의안

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내용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송 받는 기관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 2. 결의안

결의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내부운영, 즉 자체소관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이다. 결의안의 내용이 의회내부적인 사항이라면 의회자체 내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 3. 제1대·제2대 건의안 및 결의안 현황

본회의 의결 : 제2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93. 12. 20)

## 국립서울정신병원이전에 관한 건의안

- 제안년월일 : 1993. 10. 29
- 제안자 : 박원식의원 외 19인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행정동 4개동)지역은 1968. 1. 1 동대문구에서 성동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면적은 4km<sup>2</sup>, 인구는 10만여명으로 1972년 구획정리시 순수한 주택 지역으로 현재 7개 교육기관(용곡초등학교, 중마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대원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등과 주택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서,
- ◎ 국립서울정신병원 설립내역을 보면 1961년 8월 14일 각령 제98호에 의거 직제공포 후 1962년 1월1일자로 성동구 중곡동 30-1호에 정신병원을 개원한 후 현재는 대지 45,897㎡(13,911평)에 건물 24,032㎡(18개동 7,242평) 900개 병상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진료, 정신과 의료요원교육훈련, 정신의료 영역의 조사연구 등 360여명의 직제정원을 갖추고 중곡4개동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 ◎ 정신병원은 도심 외곽지역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주변경관 및 환경이 좋으며, 물맑고 공기 좋은 곳에 설립하는 것이 선진국 및 국내사정으로
- ◎ 지난 1961년 설립당시만 하더라도 이 곳은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정신병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70년대 이후 급격한 서울의 인구 팽창과 주거지역 역시 도심외곽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은 완전히 주택가 중앙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 또한 국립서울정신병원 입원 대기기를 위해 인근에 소규모 정신과 의원들이 난립하여 정신장애자를 수용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창문마다 쇠창살을 설치하여 마치 교도소같은 인상을 줌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고, 지역주민에게도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 ◎ 특히 장기적 요양과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맑고 깨끗하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데도 오히려 혼탁한 소음 공기 등은 정신질환자들의 건강회복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되며,
- ◎ 이제 설립 당시에 비하여 모든 여건과 조건이 달라진 상화에서 국립서울정신병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환경이 쾌적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당연히 이전이 요구되므로,
- ◎ 이전 후 병원부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 서울시민과 성동구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고 해당지역 발전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을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3. 12.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

---

본회의 의결 :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93. 11. 29)

## 워커힐 개발관련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의안

- 제안년월일 : 1993. 11. 29
- 제안자 : 최순철 의원의외 4인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산21번지 소재 워커힐 관광단지는 약 30년전인 1960년부터 관광(호텔)단지로서 운영되어 오던 시설지구로서 지형상 주변의 공공주거 및 교육시설 등과는 현저히 분리되어 일단의 상업관광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이며,
- ◎ 1963년 국가에서 워커힐을 개발한 취지는 관광진흥의 기치아래 세계적인 관광호텔을 설립,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외화의 획득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하에 워커힐은 개관 이래 30년간 한국 관광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내외국인에게 국제적 관광명소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국가적 차원의 귀중한 산업자원이고,
- ◎ 한편, 최초에는 관광공사에 의해 운영되던 워커힐은 부지의 잠재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워커힐 전체부지의 균형있는 재개발을 조건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따라서, 워커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개 사기업의 전유물로서가 아니라 구 및 시차원의 소중한 광광자원으로 균형있게 개발 육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단위 도시계획상의 모순점으로 인하여 1963년 최초 개발 당시보다 다 열악한 법규환경하에 있어 신규관광자원의 개발은커녕, 기 영업이 허가된 업종에 있어서도 허가의 경신 등이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 워커힐은 주변이 산과, 강,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상업지구로 지정되어도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등이 여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 ◎ 부지개발이나 영업 업종의 제한으로 인해 워커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관광진흥법만을 적용받던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던 것이었으나, 현재에 와서 각종 토지 및 건축관계법(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적법 등)이 관광진흥법에 우선하도록 되어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워커힐 개발 목적 및 현행법규에 부합되도록 워커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특혜의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 ◎ 워커힐 관광단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실시, 종합관광 휴양시설로 개발하여 국가관광사업의 육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 워커힐 부지의 도시계획변경관련 검토 사항
  - 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유원지지구
  - 주차장, 운동장지구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지

1993. 12. 2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

---

본회의 의결 :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5. 9. 27)

## 광장동 381번지일대 자연녹지 지정에 대한 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5. 9. 6
- 제안자 : 유승주의원외 7인

### 1. 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일대 123,282㎡는 용마산 자연공원에 속하는 아차산 기슭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치가 수려한 지역이며 도심과 접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연훼손도 반대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존하여 줄 것을 결의함

### 2. 제안이유

- ◎ 광장동 381번지일대는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 임야로 용마산 자연공원과 인접해 있어 매일 산책 및 등산객은 물론 약수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휴식처이며,
- ◎ 특히 인접 아차산성은 고구려 영양왕때 평강왕의 사위로 유명한 온달장군이 죽령이북의 실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곳으로, 1973년 5월 25일 사적 23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 ◎ 도심과 인접한 자연공원으로 40만 광진구민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휴식처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후세에까지 물려줄 책무가 있는 우리로서,
- ◎ 전체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절대 반대하고 현재 상태로 보존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결의함

### 3. 참고사항

- 도시계획법 제11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본회의 의결 :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95. 11. 16)

『5.18관련자 처벌을위한 특별법』제정촉구 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5. 11. 16
- 제안자 : 설성환 의원의 7인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우리 민족은 한 세기에 걸친 현대사의 숨가쁜 험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한일합방을 합리화하고 한·미 행정협정을 온존하려는 일본과 미국이 보이는 패권주의적 형태는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내적인 민주역량, 사회의 합리적 통합력이 현실을 목도하게 한다.

근래 5.18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애국 민주시민의 저항과 특별법제정 촉구 운동은 이러한 민족적 내부 통합력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계기점이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바라던 애국 시민의 피어린 항쟁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로서 관련 책임자는 오히려 광주 민주화운동을 국가전복사태로 규정 그에 대한 정당한 비상통치 행위로 강변하는 실정이다.

소위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학살에 대하여 법이 무기력하다면 역사는 무엇이며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8.18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심판은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전국민적이며 역사적인 과제이다.

광복이후 반민특위의 좌절로부터 반민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를 이루지 못한 결과 이땅은 부정과 부패, 가치관의 전도,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또 다시 5.18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정부과 검찰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고통과 부패의 늪에서 결코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에 따라 엄정히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혐의 사실에 따라 기소하여야 하며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제법에도 집단살해는 공소시효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로 단정하고 있다.

검찰의 7.18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많은 애국시민들이 서명과 시위를 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진구민의 애국적 발로에 바탕하여 5.18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 - 우리의 요구 -

1. 5.18 관련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요구 한다
2.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 특별검사제 도입
  - 헌법파괴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1995년 11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

본회의 의결 : 제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95. 11. 18)

『새마을기의 영속적인』게양다짐 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5. 11. 18
- 제안자 : 박유관 의원외 28인
- 본회의의결 : 1995. 12. 27  
(제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의 증진, 지역개발사업의 확충,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창조등 지방시대의 과제는 지방경영의 합리화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정부는 행정력만으로 주민들의 온갖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보다 원만하고 조화 있게 상호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욕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원하며, 民과 官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봉사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고 하는 국민적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한땀 한 가난을 몰아내고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민의식 개혁을 통한 선진시민 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은 개개인 또는 일정지역의 단편적인 봉사활동의 흐름을 국가적 국민운동으로 종합화하여 승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일들의 상당부분을 감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행정비용을 절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새마을운동이 있지 않

았다면 이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0년 공보처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국이후 가장 자랑스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1위 서울올림픽, 2위 경제성장, 3위 새마을운동으로 응답된 바 있으며, 지난해 애륙연구소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해방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중 새마을운동이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도 새마을운동이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폭넓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지방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지방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간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마을운동 조직은 성숙한 지방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분담하는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25년간 새마을운동이 축적한 값진 경험과 잠재역량을 바탕으로 2천년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 잘살기 운동으로 한차원 높이 승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정권적 차원을 초월, 역속적인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최근 새마을기와 관련한 서울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요, 우리 민족의 정신적 표상인 새마을기를 우리 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영속적으로 당당히 계양 것임을 굳게 결의합니다.

1995년 11월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본회의 의결 :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5. 6. 17)

## 한강오수 배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6. 6. 1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1. 발의이유

한강오수 배출과 관련하여 광진구청장이 환경부로부터 고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서를 대변하여 한강 오수배출의 적절한 관리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2. 구성목적

광진구 자양오수 펌프장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로의 관리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 3. 활동내용

자양오수 펌프장의 오수배출관련에 대한조사

### 4. 구성인원 : 5명 이내

### 5. 기타근거 : 서울시 하수도 기본계획

---

본회의 의결 : 제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6. 6. 28)

한강오수배출 실태조사 활동보고 및 건의문

- 제안년월일 : 1996. 6. 20
- 제안자 : 시민·건설 위원회

- ◎ 한강변을 비롯한 중랑천·안양천·탄천변 등의 차집관거월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한강변 하수유입 및 수질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한다.
- ◎ 생활하수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책화하여 한강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정부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건의한다.
- ◎ '96년 5월 29일~5월30일 한강하수방류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항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87.8월에 설치된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의 내부시설인 특고압 22,900v의 노후된 수배전반(수명:약10년) 교체작업('96.5.22. 2:00~02:00)을 위한 불가피한 단전으로 인하여 자양노선 차집관로의 하수가 방류된 것으로써 환경부의 고발을 취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996년 6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 일동

본회의 의결 : 제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96. 6. 28)

### 자양오수중계펌프장 관리에 관한건의문

- 제안년월일 : 1996. 6.
- 제안자 : 시민·건설 위원회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자양노선 차집관거와 자양오수 중계펌프장의 관리기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잠실대교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관내에 취수장 3개소가 위치한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써 타지역 한강변 차집관거보다 우선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것을 건의한다.
  - 차집관거 및 자양오수 중계펌프장은 하수 정화처리를 위한 중간시설물로서 차집관거 유지관리와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및 축적된 기술이 많이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것을 건의한다.
  - 차집관거 준설업무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유지관리는 광진구청장이 관리함에 따라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을 건의한다.
  - 차집관거의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업무와 오수중계펌프장의 소유권 또한 서울특별시장이므로 모든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의 비용 부담상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
2. 오수중계펌프장의 수배전반 고장수리 및 교체로 인한 단전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의 예비 수배전반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 현재 5,000㎡를 담수할 수 있는 자양빗물펌프장의 담수능력을 현재 30분에서 최소한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술용역을 거쳐 우수지 바닥을 굴착 확장하여야 한다.

1996. 6.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 일동

본회의 의결 :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6. 9. 9)

## 서울특별시 신청사 뚝섬유치 촉구』 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6. 9. 2
- 제안자 : 허운회 의원의외 21인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장소 선정(뚝섬지역, 동대문운동장, 보라매공원)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으며, '96년 11월중에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98년 중 설계를 마쳐, '99년 착공 2003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후보지인 뚝섬지역은 조선조 개국당시 태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기 앞서 이곳에서 지형을 살피던 곳이며 또한 무학대사가 명당터로 지정하였던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인류문화의 발전은 반드시 강을 끼고 이루어졌다는 문화인류학적인 고찰에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더 할 수 있는 근거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입지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지역이다.

첫째, 한민족 문화의 젖줄인 한강을 남쪽으로 남산의 동쪽과 우리구의 상징인 아차산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과거 조선시대의 육로와 수로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원산 신의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국철이 통과하고 있어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국의 파리 시청과 로마 시청이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있는 것처럼 한강변의 수려한 주변공간을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둘째,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성수대교, 국철, 지하철 2,5,7,12호선 및 수상교통시설을 활용하므로써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친근성이 있으며 뚝섬유원지의 옛 서명으로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다.

셋째, 뚝섬지역은 35만평의 토지중 현재 8만 9천평만 활용되고 있는 평범한 지형으

로 장애물이 없이 4만 7천여평의 부지 확보가 매우 용이하고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고, 시청사·시의회·시민광장이 한곳에 위치할 수 있는 “시민 자치의 전당”으로서 최적의 위치이다.

넷째,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토지 보상비 부담이 적으며,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성동구에서 유치중인 시가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1년이면 한강변의 자연생태공원, 호텔과 컨벤션센터, 다목적 돔구장, 빙상경기장과 그밖에 사업지원시설, 도·소매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주변지역의 부가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져야 될 수도 서울의 새로운 청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고,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뚝섬지역에 건립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서울특별시 청사가 뚝섬지역에 건립되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뒤떨어진 서울 동북부 주변지역의 활기찬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도심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21세기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특별시 신청사 뚝섬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청사가 반드시 뚝섬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를 결의하는 바이다.

199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

본회의 의결 :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6. 9. 9)

광장동381번지일대자연녹지변경결정에따른건』 결의(안)

- 제안년월일 : 1996. 8. 31
- 제안자 : 광장동381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아차산 기슭이 용마산 자연공원과 접하며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가 수려한 지역으로써, 도심과 접한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자연환경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 광장동 38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지역(자연 녹지) 123,282㎡ 중 위커힐 진입도로 위측 개간허가지 17,172㎡ 및 수도용지주변 18,700㎡ 등 38,872㎡는 녹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위커힐 진입도록 아래쪽 부분 잔여지 87,410㎡는 당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우리 광진구민의 뜻을 모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연훼손도 반대하며, 이에 건의합니다.

199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 일동

본회의 의결 :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6. 11. 11)

## 북한의 무력도발과 보복협박에 대한 결의문

- 제안년월일 : 1996. 11. 2.
- 제안자 : 이효영 의원 외25인

우리 광진구의회는 지난 '96년 9월 15일과 17일 동해안 강릉지역에 잠수함을 이용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도발행위를 저지르고도 온갖 거짓과 핑계로 기만하며 오히려 대남 보복을 자행하겠다고 협박하는 북한의 파렴치한 침략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몰락과 쇠퇴로 인한 북한 내부의 심각한 동요와 불만을 해소시켜 보려고 북한정권은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발상에 의한 이번 도발은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에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40만 구민과 더불어 북한정권의 각성과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정권은 무모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 북한정권은 금번 동해안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획적인 대남 도발행위였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후안무치한 보복협박과 기만책동을 즉각 철회하라.
3. 북한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성실하게 대응하라

1996. 11. 1

광진구의회의원 일동

본회의 의결 :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8. 3. 19)

## 아차산 흥련봉보루성 사적지정 건의문

- 제안년월일 : 1998. 3. .
- 제안자 : 유승주의원회 25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산10-1번지(임야)일대에 위치한 흥련봉 보루성은 인근 보루성을 발굴조사한 '97.11월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요새로써 학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역사교육의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적이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지도 못한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기관에 아래와 같은 훼손방지대책과 함께 흥련봉보루성 사적지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사유재산권 보호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훼손될 우려가 많은 흥련봉보루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시전한 후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나아가 아차산일대에 확인된 보루성들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발굴조사한다.세째 유적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능선 아래쪽으로 우회등산로를 개설한다.

넷째 흥련봉 봉우리 바로 아래까지(해발 80m정도)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광장동 381번지 일대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1998. 3

광진구의회의원 일동



# 제7장 부록

## 부록 제1·2대 의원현황



gwangjin





## 제 1 대 \_ 의원현황

연번	해당동	성 명	연번	해당동	성 명
1	중곡1동	박 원 식	14	자양1동	이 금 장
2	중곡2동	신 인 용	15	자양1동	문 홍 열
3	중곡2동	김 춘 기	16	자양2동	김 세 호
4	중곡3동	오 효 무	17	자양2동	김 영 용
5	중곡3동	임 동 식	18	자양3동	이 종 학
6	중곡4동	이 석 봉	19	자양3동	최 태 순
7	중곡4동	김 세 환	20	노유1동	김 태 식
8	능 동	이 재 선	21	노유2동	노 승 균
9	구의1,3동	백 남 식	22	화 양 동	강 인 식
10	구의2동	권 승 현	23	화 양 동	허 운 회
11	구의2동	박 영 태	24	군 자 동	이 성 전
12	광장동	최 순 칠	25	군 자 동	김 종 환
13	광장동	최 복 수			



## 제2대 \_ 의원현황

연번	해당동	성명	연번	해당동	성명
1	중곡1동	김광일	16	광장동	이상철
2	중곡2동	신인용	17	자양1동	이금장
3	중곡2동	이효영	18	자양1동	이창비
4	중곡3동	오호무	19	자양2동	김영용
5	중곡3동	설성환	20	자양2동	전영동
6	중곡4동	이석봉	21	자양3동	김기섭
7	중곡4동	추윤구	22	자양3동	한중석
8	능동	박유관	23	노유1동	김태식
9	구의1동	최근식	24	노유2동	노승균
10	구의1동	최금손	25	노유2동	박래학
11	구의2동	김영환	26	화양동	이형태
12	구의2동	유승주	27	화양동	허운희
13	구의3동	김선갑	28	화양동	김종환
14	구의3동	이동철	29	군자동	이성전
15	광장동	고명곤			

## 편집후기

- 백서(白書, white paper)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일종의 보고서로, 영국 정부가 백색 표지로 제본한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 본 책자의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더욱 알찬 백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편집인 일동 -

제1·2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 議 政 白 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장 이 창 비

발 행 일 : 2007년 2월

편 집 : 의회사무국장 김 동 환

홍보담당주사 정 수 웅

담 당 윤 미 정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27번지 344호

TEL : (02) 450-1445~7

FAX : (02) 454-0438

홈 페이지 : <http://council.gwangjin.go.kr>

인 쇄 : 그린애드(☎ 2279-7761~2)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